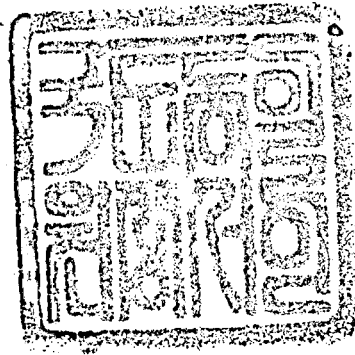


統一 問答

1990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차 례

I. 통일정책

1. 「7·7 특별선언」에 담긴 남북간 교류·협력의 추진원칙과 기준 및 그 성과는 무엇인가?..... 13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골격(기본구도)과 주요특징은 무엇인가? 18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남북연합」은 국가연합, 연방제와 어떻게 다른가?..... 26
4. 民族共同體憲章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채택하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30
5. 理念과 制度가 다른 남북한 사이에 어떻게 「남북연합」을 할 수 있는가? 36
6.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측과 공산권의 반응은 어떠하며, 그 실현가능성은? 39
7. 우리의 자주·평화·민주원칙과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43
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과연 사회각계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47
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49
10. 우리가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대남혁명노선의

포기를 주장하는 배경과 이유는?	53
11. 南北分斷의 경위와 分斷長期化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55
12. 남북한이 서로 「民族史的 正統性」을 내세우는데 그 구체적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가?	59
13. 남북한이 지향하는 理念과 體制가 다른 상황에서 과연 평화 통일은 가능한 것이며, 역사적 先例가 있는가?	63
14. 사회일각에서는 이른바 「收斂理論」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혼합·절충체제를 거론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66
15.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정책과 「반공안보」정책과는 상충 되지 않는가?	70
16. 한반도 「中立化統一論」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72
17. 이른바 「民衆統一論」이란 어떤 것인가?	76
18. 바람직한 統一論議와 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國家保安法 등의 改廢 및 特別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79
19. 과거 통일문제를 국내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비판적 見解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82
20. 6·25同族相殘이 통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戰爭責任문제에서 「南侵·北侵論」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84
21. 남북한관계가 어느 단계에 가야 우리 사회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許容할 수 있는가?	88
22. 분단 장기화에 따른 民族 異質化 현황과 그 해소책은 무엇인가?	91
23. 서독이 제시한 「獨逸統一 10個項」이란 무엇인가?	94
24. 한국과 독일 통일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97
25. 獨逸과 中國의 통일접근 방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101

II. 남북대화

26. 남북 대화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107
27.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 '민주', '평화'는 우리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111
28. 「연석회의」와 「회담」은 개념상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북한이 연석 회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4
29.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우선 군축회담부터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118
30. 統一論議를 개방하고 民間交流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對北窓口를 一元化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은가? 120
31. 북한이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올 시기를 언제로 전망 하는가? 123
32.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南北關係改善의 장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立場은? 127

III. 주변정세

33. 공산권은 왜 개혁과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동구 공산권의 개혁추세가 북한에 미칠 영향은? 133
34.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이들 국가간의 사전합의나 양해없이 自主的인 統一이 가능한가? 136
35.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주변 4강의 교차승인이 분단고착화를 뜻한 다는 일부주장에 대한 견해는? 139
36. 「駐韓美軍撤收」 주장에 대한 對應論理는 무엇인가? 142
37. 최근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잠재역량은 어느정도 이며 북한의 「한반도 非核 地帶化」 주장의 저의는 무엇인가? 147

38. 북한이 미국과의 「平和協定」 체결을 내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150
39. 우리가 추진하는 「北方政策」과 서독의 「東方政策」은 어떻게 다른가?	153
40. 미국·일본등 서방국가의 대북한 접근이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개방 및 남북한 긴장완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157
41.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그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160
42. 중국·소련의 僑胞 實態와 이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162
43. 미·소 양국의 軍事戰略과 이른바 「신데탕트시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166
44. 6·4 天安門사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向方은 어떠한가?	169

IV. 북한실태

(정 치)

45. 북한주민의 基本權은 헌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75
46. 북한주민들은 言論을 통해서 알 권리를 어느정도 향유하고 있는가?	178
47. 북한주민들은 어느정도의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가?	181
48. 이른바 「주체사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실제로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184
49. 지난 40여년간 북한에서의 김일성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권력세습 정도는?	187
50.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191
51.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 실태는?	194

52. 「3대혁명소조」란 어떤 조직인가?	198
53. 오늘의 북한체제는 다른 共產體制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02
54. 북한에서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05
55. 북한의 대외정책 노선과 남북한 수교 현황은?	207

(경 제)

56. 북한주민의 私有財産 한계는?	210
57. 북한에서의 賃金基準과 계층별 소득수준은?	212
58. 북한의 물가와 북한화폐의 換率은?	215
59. 최근 북한의 산업구조와 연간 경제성장율 및 대표적인 생산시설은?	218
60. 북한의 경제규모 평가에 있어 우리 정부기관과 외국기관간에 차 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220
61. 「습營法」실시 이후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223
62. 최근 북한의 外債現況과 무역실태는?	226
63. 현재 추진중인 『3차 7개년계획』의 내용과 전망은?	229
64. 『협동농장 決算分配 방법』이란 어떤것인가?	232
65. 穀種別 食糧作物 생산현황과 수급사정은?	235
66. 원자력발전소 건설현황과 관련기술 수준은?	237
67. 소련과 중국의 對北韓 경제원조 실태는?	239
68. 북한의 인구정책과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41

(사회 · 문화)

69. 이른바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란 무엇인가?	243
70. 북한의 대학생 선발방법과 교원양성제도 및 고등교육현황과 김일 성종합대학의 실태는?	245

71. 북한의 문화정책방향은 어떠하며, 소위 ‘思想革命’, ‘文化革命’이란 무엇인가?.....	248
72. 북한주민의 신앙·종교생활 실태와 종교단체 활동현황은 어떠한가?.....	251
73. 북한의 보건의료정책과 그 실태는 어떠한가?	255
74. 평양의 시가지 건설이 잘되어 있고, 살기좋은 곳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데, 어느 정도인가?.....	259
75. '89년도 평양축전 개최가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과 이해득실은 무엇인가?.....	262

(군 사)

76. 북한의 軍事組織體系와 군사전략은 어떠한가?.....	263
77. 북한은 이미 인민군 10만명을 감축했다고 주장하고, 군사비도 줄여 편성했다고 하는데 군사력 실태는 어떠한가?.....	266
78. 북한의 최근 對中·蘇 군사협력 동향은 어떠한가?.....	269

V. 이념문제

79.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革命’의 개념은 무엇인가?.....	273
80.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276
81. 자유개방사회의 속성이기도 한 빈부격차와 이념의 다양성 문제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80
82. 최근 공산권의 변화상은 전통적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變質을 의미하는 것인가?.....	284
83. 「좌익」, 「급진좌경」, 「용공」, 「좌경」등은 개념상 어떻게 구별	

되는가?.....	287
84. 민중혁명론자들이 말하는 민중의 뜻과 民衆史觀의 본질은 무엇인가?.....	289
85.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르며,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뿌리박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94
86.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발달된 사회주의 사회」는 개념상 어떤 차이가 있는가?.....	297
87. 최근 좌경운동권의 투쟁목표는 무엇이며 좌경세력의各界 침투 실태는 어떠한가?.....	302

〈참고자료〉

1. 북한의 통치체제도.....	311
2. 북한의 행정구역도.....	312
3.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313

I

통 일 정 책

1. 「7·7 특별선언」에 담긴 남북간 교류·협력의 추진원칙 및 기준과 그 성과는 무엇인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하 「7·7 특별선언」)에서 밝힌 민족의 화합과 공존공영을 위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의 추진은 어디까지나 南北韓 당국간에 협의하여 그 기틀을 마련한 토대 위에서 개인 또는 민간단체들의 접촉이나 교류·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국민 개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승인도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왕래하고 접촉·교류·협력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같은 행위는 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統一을 지향하며, 自由民主的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통일정책 추진의 구체적 責務와 權限을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統一論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통일정책의 추진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수임기관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경제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이고, 구체적으로는 家計와 企業과 財政主體인 政府가 되겠지만, 경제정책의 추진주체는 국민의 수임기관인 政府일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정책의 추진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역시 정부당국의 주선과 허용 및 그 보장 아래 상호주의 원칙이 존중되는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근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회의원·종교인·대학생 등 특정인의 密入北사건은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든지, 또한 그들의

주장이나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법질서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정치공작에 말려들어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는 反통일적 행위로 규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7·7 특별선언」에 따른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1988년 7월 16일 및 7월 19일, 외무부장관의 「대북외교정책 선언」을 통해, ① 국제무대에서의 남북대표간의 대화 및 접촉 허용, ②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허가된 한국여권소지자의 북한방문 허용 및 북한여권을 소지한 해외동포의 모국방문 보장조치를 취하는 한편 남북한을 방문하는 해외동포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당국간의 협의를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으며, 1988년 10월 7일에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의 「대북한 경제개방조치」발표를 통하여 ① 민간상사의 북한 물자 교역·중계 허용 ② 북한원산지표시와 그 상표부착 허용 ③ 남북경제인 접촉 및 상호 방문 허용 ④ 직·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 면제 ⑤ 북한선적 사용 선박의 입항 허용 등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1989년 6월 12일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시행중에 있다. 이 基本指針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 시행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시행하는 규정으로서, 이 「기본지침」에 의하면 인적왕래나 협력사업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남북한간의 인적왕래는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심의를 거쳐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7·7 특별선언」의 정신에 따라 상호 접촉·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 민족동질성 회복,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에 있어서는,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북한주

민(대리인 포함)과 접촉하고자 할 때, 인적 왕래의 경우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고 협력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으며, 물자교역일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에 상공부장관(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둘째, 人的往來에 있어서는,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초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물자교역 또는 협력사업인 경우는 해당 주무부처를 경유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셋째, 물자교역에 있어서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입은 상공부장관에게 결정한 기준에 따라 수출입 승인기관장의 승인을 받되, 내국간 물품이동으로 간주한다.

넷째, 협력산업에 있어서는, 남북한간 문화·체육·학술·경제분야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은 해당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으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측과의 협의도 해당 주무부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 근래 있었던 密入北사건은 정부가 절차와 기준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익환 목사가 북한에 가서 “나는 지금까지 법을 깨면서 살아왔다”고 호언한 것에서 잘 드러났듯이, 이들이 관계법과 정부 방침을 무시하려는 반체제적 발상과 행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정부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같은 불법행위는 그것이 언필칭 민족적 양심이니 조국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엄정한 실정법에 따라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규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7·7 특별선언」을 구현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地平을 여는 통일의 과업 역시 어디까지나 민주적 헌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다음, 「7·7 특별선언」의 成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7 특별선언」은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한 관계에 일대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대공산권정책의 기본방향을 내외에 밝힌 것으로서 이것이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은 오늘의 시점에서 눈에 띄는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선언이 대외관계면에서 중·소 및 동구권 국가들의 경쟁적인 대한민국 접근의 명분을 제공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방외교의 전개와 통일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기할 수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선언은 88서울올림픽이 중·소 등 공산권의 여러 나라를 포함하여 동·서의 양 진영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참가한 가운데 명실상부한 인류 전체의 큰 잔치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관계면에서 본다면 이 선언의 성과는 아직도 우리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안타까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북한측은 이 선언의 진정한 뜻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저들의 대남 정치공작과 선전선동에 역이용하려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내에서는 일부 인사가 북한을 불법으로 방문하는 등 무분별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례가 없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대북인식과 통일논의에 있어 적지않은 혼선과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7·7 특별선언」이후 남북간에 여러 분야의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그동안의 대화과정에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남북대화에 응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정상적인 대화의 통로보다는 통일전선 차원의 이른바 “민간급 접촉과 대화”에만 열중하는 등 남북대화를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종래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이같이 반응해 오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정상적인 교류·협력에 호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좀더 긴 눈으로 보면 그들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개방에 대한 내외의 압력과 당면한 현실적 요구를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7·7 특별선언」이 우리사회 내부의 민주화 추진노력과 결부되어 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통일정책 추진의 영역에까지 확산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에는 통일논의는 폭넓게 개방하되 統一政策의 추진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政府가 主導해 나가야 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사회 일각에서의 무분별한 주장이나 행동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는 데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남북한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식 속에 형성된 가장 바람직한 성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일부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형성발전시켜 나가겠다는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토대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골격(기본구도)과 주요특징은 무엇인가?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정기국회가 열리던 날 특별 연설을 통해 제6공화국의 통일방안으로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국내 외에 천명하였는데, “南北이 자주·평화·민주의 3原則을 바탕으로 「南北聯合」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려는 새 통일방안의 기본골격과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을 그 構圖(별표 참조)와 주요 골자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명칭 : 한민족공동체(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 KNC)
통일방안

② 통일의 3原則

자주—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주—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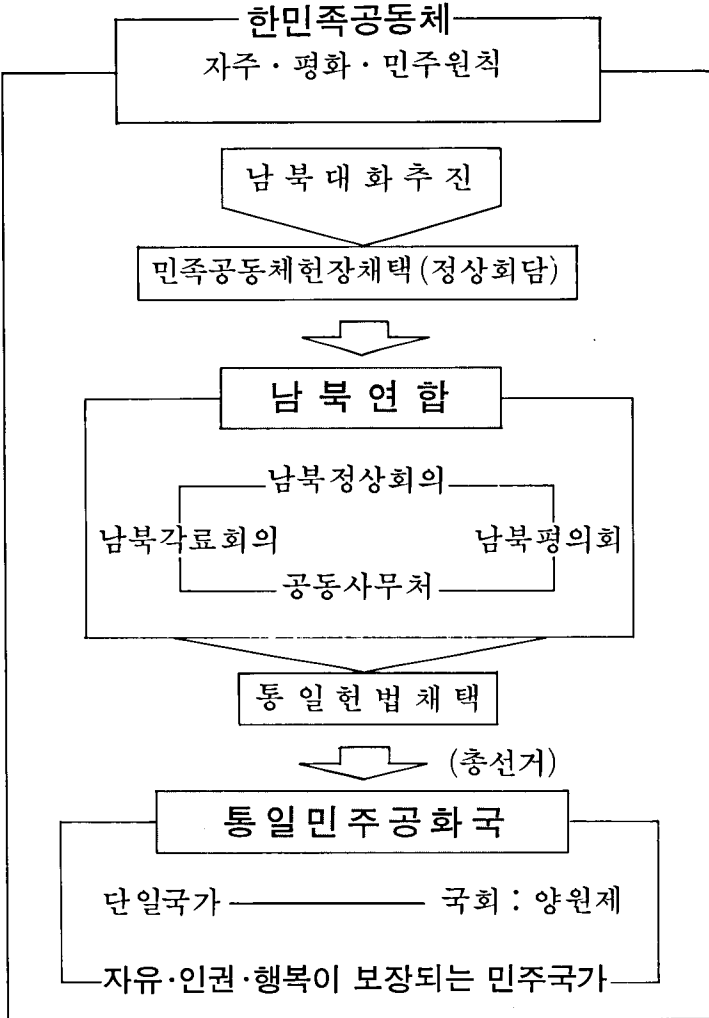
③ 통일의 過程

共存共榮의 토대 위에서 南과 北이 聯合(南北聯合)하여 單一民族社會 指向→單一民族國家(통일민주공화국) 건설

④ 過渡的 統一體制

- 명칭 : 南北聯合(The Korean Commonwealth)
- 성격 : 통일국가 실현의 중간과정
- 역할 : 민족의 共存共榮, 民族社會의 同質化, 民族共同生活圈 형성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 실현
- 憲章 : 民族共同體 憲章
 - 南北頂上會談에서 채택, 公布
 - 平和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相互不可侵에 관한 사항, 「南北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



「聯合」機構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규정

○ 「南北聯合」의 機構

- 南北頂上會議－최고결정기구
- 南北閣僚會議－협의조정 및 실행보장기구

- 共同議長(南北의 總理)과 南北 각기 10명내외의 각료급으로 구성
- 남북간의 현안문제·민족문제에 대한 협의·조정 및 그 실행 보장
- 5개 常任委員會(人道, 政治·外交, 經濟, 軍事, 社會·文化 분야) 설치
 - 이산가족 재결합 문제
 - 정치적 대결상황 완화문제
 -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역량 낭비방지 및 해외동포의 권익신장 문제
 - 남북 사회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 추진문제
 - 민족문화의 창달 문제
 - 공동번영의 經濟圈 형성 문제
 -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
 - 현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代替문제 등
- 南北評議會—통일籌備機構
 - 100명 내외의 쌍방을 대표하는 同數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
 - 「남북각료회의」에 대한 諮問, 統一憲法 起草 및 통일실행방법·절차 마련
- 共同事務處—실무지원기구
 -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지원,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관장
 - 常駐連絡代表를 서울·평양에 파견
- 平和區域 設定
 - 非武裝地帶內에 설정, 「남북연합」의 기구 및 시설 등 설치
 - 「統一平和市」(Unification-Peace City)로 발전

⑤ 統一國家 樹立節次

-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안을 민주적 방법과 절차로 확정, 공포
-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 구성→통일국가 완성

⑥ 통일국가의 未來像—민족성원 모두가 主人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自由·人權·幸福이 보장되는 民主國家

— 國家形態：單一國家

— 國會構成：兩院制 上院—地域代表性, 下院—國民代表性

— 政策基調

- 民主共和體制(민족성원 전체의 參與와 機會均等 보장, 자유로운 主義·主張 표현)
-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세계평화 기여
- 모든 나라와 善隣友好關係 유지

※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모든 영역에서의 民族共同體 완성 다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主要特徵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統一 3原則을 再確認하였다.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은 국민적 합의일 뿐 아니라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89.8.15)에서 밝힌 통일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둘째, 「민족통일」을 통한 「국가통일」실현의 합리적·현실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가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려면 분단현실의 認定에서부터 출발하는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남북간의 불신과 갈등을 고려할 때,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일국가를

一舉에 완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북은 우선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共存共榮을 도모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한민족공동체」는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當爲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89.9.11, 대통령 「특별연설」중에서)이라는 데서 통일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새 통일방안은 통일을 원상복귀적인 공간적 개념의 통일이 아니고,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이라는 未來指向의인 時間的 개념의 통일로 보고, 목표지향의 통일과도체제를 설정하고 있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북이 이 과도체제에서 통일국가를 지향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같은 단일민족사회가 형성되어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 궁극적으로는 단일민족국가의 건설, 즉 「국가통일」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過渡的 統一體制인 「南北聯合」을 제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통일방안에서 제의한 「남북연합」은 남북이 상호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증진시켜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남북은 이 과도체제안에서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밑에서 연합·연계됨으로써 안으로는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협의·조정하며, 밖으로는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 같은 교과서적 개념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한 過渡的이고 특수한 결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안에서 남북은 각기 外交·軍事權 등을 보유한 주권국가로

남게 되지만, 수천년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 온 민족 전통으로 보아 「남북연합」은 「1民族 2國家」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한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결합체제, 즉 과도적 통일체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통일국가의 未來像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조국이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한민족 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하고 단일국가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정집단이나 계급의 專橫이나 專制가 없는 民主共和體制가 우리 민족의 당위적인 선택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새 통일방안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체제의 공존을 영구 화할 위험이 있는 미완성형 統一인 연방제를 배제하고 민족의 이상인 단일민족국가의 완성을 통일의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통일조국의 政策基調로서 ① 민족성원 전체의 參與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主義·主張의 표현이 보장되는 민주공화체제, ② 민족성원 모두의 福祉 증진, ③ 민족의 恒久的 安全保障과 세계평화에의 기여, ④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 유지를 제시한 것은, 이들이 비단 우리 통일조국의 미래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오늘날 人類가 염원하고 추구하는 普遍的 價値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섯째, 북한측의 입장과 주장을 고려하고 수용한다는 포용성과 공명성을 들 수 있다.

새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주장만을 내세워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과 상호주의 정신으로 민족의 현안문제와 통일문제를 더불어 풀고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북한측의 입장과 주장까지도 고려하고 수용한 공명정대성과 포용성이 있는 「평화」통일방안이다.

새 통일방안에서는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 「남북연합」의

기구구성에 있어 남북에서 같은 수의 대표가 참가하도록 하였고,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單一案에 합의한 뒤 민족의 총의로써 확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북연합」의 태두리안에서 교류·협력문제와 함께 「정치·군사문제」도 함께 협의·해결하자고 한 것은 북한측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바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平和區域」 및 「統一平和市」構想을 밝혔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남북연합」의 발족을 계기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의지를 과시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 통일방안에서는 비무장지대내 적당한 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평화구역」에는 「공동사무처」 등 「남북연합」기구의 건물과 각종회의장소 등 시설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의場을 마련하고 쌍방이 공동으로 이용할 시설들을 건설해 나감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지향한 示範地域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화구역」은 남북의 합의와 공동노력에 따라 점차 「統一平和市」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제2, 제3의 「통일평화시」를 건설하여 비무장지대 전체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감돌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화합의 지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既存 통일방안과의 一貫性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통일정책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統一觀과 통일접근방법을 달리해 왔지만,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정책기조를 지켜왔다.

통일의 최종목표인 국가체제적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하고 그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통일방안의 일관된 정책기조였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민족에 의한, 민족

을 위한, 민족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국가의 형태를 결정하고 통일정부와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민족성원 모두의 參與와 자유의사의 반영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통일정책의 기초는 남북한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완화와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사회개방·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실현시킨 바탕 위에서 국가적 통일까지 완성한다는 점진적 접근방법을 택해 왔다는 점이다.

새 통일방안도 이 같은 점진적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남북연합」을 통한 「민족통합」의 바탕 위에 「국가통일」까지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일괄타결방식을 배제하고, 같은 정책기조 위에 발전시킨 통일방안임을 알 수 있다. 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편으로는 기존 통일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당성과 실현성에 역점을 두고 인식 및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정세변화의 주체적 수용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남북연합」은 국가연합, 연방제와 어떻게 다른가?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은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과정의 過渡的 통일기구라 할 수 있다.

「남북연합」의 특징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의 기구를 두어 통일실현때까지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며 통일국가의 수립방안을 구체화한다고 명시함으로써 「統一實現時」까지라는 한시적인 과도적 기구의 성격을 뚜렷이 가진다.

둘째, 중간과정에 있어서 분단쌍방의 관계는 同等權의 원칙 즉 상호주권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이는 국제법상의 국가승인이나 異民族국가간의 외교관계로 인정할 수 없는 이른바 「民族内部的 特殊關係」로 설정된다.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란 분단쌍방이 민족의 재결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호 국제법상 주권국가간의 승인이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사실상의 국가적 政治體」사이의 특수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분단쌍방의 제3국관계는 명실상부한 국제법상 국가승인이 성립되지만, 분단쌍방인 남·북한의 상호관계는 분단국의 두 구성체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분단국특수법논리를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서독의 경우, 이미 부분질서이론(Teilordnungstheorie) 또는 지붕이론(Dachtheorie)을 창안, 동·서독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서 국제법상 국가 아닌 「하나의 민족내부의 두개의 국가」(Zwei Staaten in einer Nationen)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독은 이러한 서독의 논리를 부정하고 국제법상의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다.)

셋째, 남북연합은 기존 국제법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수형태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연합도 아니고 연방국가도 아닌 제3의

형태이다.

대외적 측면에서만 보면, 상호주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국가연합적인 성격을 띠지만 교과서적 개념의 국가연합은 아니다. 독특한 분단체제 간의 과도적 통일결합체가 남북연합이다.

요컨대, 過渡的 기구로서의 성격, 민족내부의 特殊關係의 설정, 그리고 국가연합도 연방제 국가도 아닌, 과도적 분단체제의 재결합 특수유형이 곧 남북연합이다. 이와같은 3대특징을 감안할 때, 남북연합은 구체적으로 「국가연합」, 「연방제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남북연합과 국가연합과의 차이점〉

국가연합(Confederation of States=Staatenbund=Confédération)은 주권국가간에 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합으로서 일종의 동맹이다. 국가연합은 그 구성국과 같이 그 자체의 국제법 主體性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국제법 주체성은 연합을 성립시킨 조약과 운명을 같이하나, 구성국은 일반국제법규에 의하여서만 제한되며, 연합이 해소되면, 다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질 수 있다. 국가연합이 존속하는 한, 구성국 상호간의 관계는 조약의 규율에 따르며 그이외의 사항은 일반국제법에 따르며, 구성국과 제3국과의 관계는 국제법의 규칙에 따른다.

「南北聯合」은 주권 국가간의 국제적 관계가 아니라 민족내부관계로서 분단국 내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남북연합 자체는 국제법상 主體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내부문제 의 협의·조정과 대외관계의 공동보조 지향을 하는데 국한된다.

그러나 한편, 상호주권존중의 원칙과 내정불간섭, 외교·국방자주권의 인정이라든지 조약의 한시성등은 유사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민족 공동체 헌장」에 남북연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과연 「헌장」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물론 앞으로 보다 구체적 理論 전개가 있어야 하겠지만, 일단 남북한이 합의하는 내용을 합의문서로

마련하는 한 조약과 같은 성격을 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사료된다.

또한 「남북연합」의 기구는 과도적 조치이지만 내치권, 외교권, 국방권의 독립적 주권을 상호존중한다는 점에서 민족내부간, 국가간이라는 차이를 빼면 국가연합과 남북연합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과 연방제국가와의 차이점〉

연방국가(Federal State=Bundesstaat=Etat Fédéral)는 연방헌법에 의하여 구성되는데 지방분권주의에 입각하여 통치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다 분할 행사케 한다. 연방제 국가는 국가연합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하나의 국가 형태라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연방을 구성하는 각 支分國(주·「란트」등)은 광범한 자주조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된다. 특히 연방제국가는 그 성립요건으로서 통상 체제의 단일성, 경제제도의 단일성 및 국방체제의 단일성을 전제로 한다.

연방제국가란 결국 연방헌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일정치·경제·국방체제를 갖춘 완전한 국가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치체제와는 理念, 경제 및 국방체제의 相異點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분단상황은 연방성립의 요건을 전혀 충족시킬 수 없으며 동시에 미래의 통일국가 형태가 單邦이든 聯邦이든간에 필히 중간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른다.

남북연합은 헌법이 아니라 민족공동체 헌장(이는 헌법이 아닌 조약 내지 협정의 성격에 더욱 가깝다)에 의하여 성립되며, 각기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면서 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각료회의(모든 현안과 민족문제에 대한 협의·조정 및 그 실행을 보장한다) 및 南北評議會(통일헌법 기초 및 통일실현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와 같은 과도적 통일기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연합은 국가연합도 완전통일국가도 아닌 문자 그대로 통일로 향한 중간단계의 독특한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의 중간단계로 제시한 「남북 연합」은 분단상황하에서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계의 설정이라는 점에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가 아닌 특수한 결합형태라 할 것이다. 또한 그 자체가 최종단계가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협력과 공존공영관계를 도모하면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조치라는 점에서 제한적 통일결합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民族共同體憲章」을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채택하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南北頂上會談의 중요성〉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과 그 실현을 위한 대북제외의 배경 및 경위를 살펴 보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의한 「민족공동체헌장」의 성격과 이를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채택하자고 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간의 40여년에 걸친 理念 및 體制的 對決과 分斷의 장기화에 따라 심화된 동족간의 반목과 불신, 이질성과 적대감 등을 해소하고 민족적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여 民族의 和음을 실현하는 첩경은 동족간의 다각적인 對話와 접촉의 폭을 넓히고, 社會開放과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성원간의 內面的 統一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남북한관계로 볼 때 이와 같은 다각적인 대화·접촉·교류·협력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南北韓當局間의 합의를 통한 주선과 지원이 없이는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남북한관계를 正常化하고, 민족의 生存을 위협하고 있는 전쟁 재발 위험성을 제거하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 한반도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것이 평화적 통일의 기본과제가 되는데, 이와 같은 정치적 화해와 긴장완화 조치 및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쌍방의 최고통치책임자간의 회담에서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협의·해결할 수 있는 民族의 生存과 관련한 현안문제이다.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頂上會談이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외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최고통치책임자간의 회담이 가지는 기능적 효율성 못지 않게 화해와 신뢰조성의 결정적 契機가 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 의미도 크기 때문이다.

頂上會談은 쌍방의 최고통치책임자만이 가지는 權能, 즉 권한과 책임,

재량권과 보장성 때문에 다른 어떤 회담 형식보다도 포괄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實現 자체가 화해와 신뢰조성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우리 정부가 1981년 이래 기획있을 때마다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하고 또 수락을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1981년 1월12일, ① 민족적 신뢰회복 ② 전쟁재발 방지를 포함한 평화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제의한 이래, 1981년 6월5일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제의하면서 ① 그동안 남북한 당국이 제의한 統一方案을 비롯하여 ②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하자고 하였다.

특히, 1983년 1월18일에는 이 頂上會談에서 긴급히 협의·해결해야 할 當面課題로서 ① 남북한간의 緊張緩和와 전쟁 재발 방지문제 ②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문제 ③ 국제무대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民族力量의 낭비를 방지하는 문제 ④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 마련 문제 등 4개항을 제시하면서 회담 受諾을 촉구하였다. 이런 議題들은 남북한의 최고통치책임자간의 회담에서 가장 실효성있고 보장성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민족의 현안문제인 동시에 통일문제이기도 하다. 1987년 6월3일에는 이 4개항의 의제에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거두어 온 경제·기술을 비롯한 제반분야의 결실을 북한의 겨레와 함께 나누는 문제”를 추가 제의함으로써, 統一로 가는 길에서 북한동포의 생활의 質을 높이려는 民族共同體意識을 시현하였다.

제6共和國 정부는 1988년 10월4일의 國政演說과 제43차UN 총회에서는 대통령의 연설(88.10.19)을 통해 남북한 頂上會談을 거듭 촉구하였는데, 북한측이 그동안 주장하여 온 「南北韓 不可侵 宣言問題」를 포함하여 군축문제, 연방제 통일방안 등 平和的 統一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포괄적

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과 실현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그동안에는 이를 “두개 조선조작책동”이니 東西獨방식이니 비방하면서 거부하여 왔으나, 1986년이래 金日成 자신이 이 頂上會談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바도 있다. 다만, 아직도 恣意的인 전제조건을 붙여 그 실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對內外的으로 공언하였다는 것은 현실인식의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金日成은 1986년의 「신년사」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국회회담을 빨리 성사시키며, 나아가서 북과 남의 최고위급회담도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1988년 9월8일에는 비록 주한미군 철수니, 국가보안법 폐지니, 정치군사회담의 선행 등 전제조건을 내세웠지만, 頂上會談의 필요성을 다시 시인하기도 하였다.

金日成은 '89년 1월1일의 「신년사」에서는 남북대화 및 통일문제와 관련, 남북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南北政治協商會議」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黨 총재자격으로 초청한다고 하여 그 성실성을 의심받게 하였다.

또한 1990년 1월1일의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남북한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최고위급당국」과 각정당 수뇌들이 참가하는 協商會議를 제의하고 있는데 이는 東歐의 급격한 變革에 접하여 對內外 宣傳面을 의식하여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 向後 態度變化가 주목된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89년 1월17일 年頭 記者會見을 통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한정상회담을 실현하여 민족문제 해결에 획기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그 實現意志를 밝힌 바 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는 그 節次와 議題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해 당국대표간의 예비회담이 필요하다. 우리가 頂上會談을 실현시키기 위해 高位當局代表者會談을 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북한관계의 현실에서 볼 때, 앞으로 남북한간의 頂上會談이 실현되면 平和와 統一의 결정적 契機가 마련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효율성과 생산성 못지않게 정치적 和解와 민족적 信賴回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남북정상회담이 가지기 때문이다. 그 실현자체가 북한체제의 對南路線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것은 지금까지의 남북대화가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한 채 踏步狀態에 빠져 있는 오늘의 현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각종 對話에서 나타난 懸案問題들을 보다 成果있게 진척시키고, 나아가 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갖가지 장애요소들을 打開하기 위한 突破口를 마련하려면, 실무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頂上會談이 실현되면 최고 통치권자의 權能으로 이같이 실무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협의 타결하고, 그 實現을 위한 제반 후속조치들을 포괄적으로 강구하여 그 實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적 차원의 對話와 協商에서는 그 주어진 권한과 책임상 일정한 制約이 있게 마련이다. 예컨대 戰爭再發의 위험성을 제거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 일은 고도의 統治權의 次元의 문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실무급 대표들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최고결정권자인 수뇌급 회담에 맡겨져야 한다.

또 정상회담은 기능적인 면에서의 實效性이외의 쌍방간에 화해와 신뢰의 조성을 위한 歷史的 轉機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象徵의 效果도 크다. 東西獨의 경우 72년에 있었던 基本條約 締結까지의 관계개선 과정을 보면, 실무회담을 거듭한 끝에(장·차관급 회담 70회, 실·국장급

회담 200회), 마침내 兩獨間 頂上會談(2회)을 통하여 최종적 타결을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정상회담이 대화와 협상의 突破口 마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협상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頂上會談이 교착된 협상의 打開手段으로 활용된 사례는 많다. 미·소관계에서도 그렇고, 미·중국간이나 일·중국간의 국교정상화협상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이집트간 平和協商過程에서도 정상회담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民族共同體憲章의 성격과 내용〉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간에 和解와 統一의 轉機를 마련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採擇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그 성격상 중국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채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곧 統一章典인 민족공동체 憲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憲章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족내부의 特殊關係를 規律하는 基本章典을 제정하여 오늘의 분단상황으로부터 미래의 통일로 나아가는 확고한 里程表를 마련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통일에의 기본약속을 민족과 역사앞에 宣言하여 그 實行을 보장해 나가자는 두가지 목적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민족공동체헌장」은 첫째로 통일의 基本章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서부터 統一의 過渡體制인 「南北聯合」을 발족하여 운영하는 일, 그리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諸般問題에 관한 남북간의 包括的 合意를 담게 됨으로써 앞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길잡이가 되는 하나의 里程表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민족공동체헌장」은 이러한 통일의 里程表를 민족과 역사앞에 확인하고 그 이행을 다짐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憲章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협의 결정된 다음 각기 對內的으로 필요한 節次(國會同意 등)를 밟아 宣布함으로써 發效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절차에는 남북이 각기 이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여 반영함으로써 正統性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안으로는 민족성원 전체와 밖으로는 국제사회에 그 실현을 다짐함으로써 실효성을 보장하자는 뜻도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 憲章은 대내외적으로 민족내부의 特殊關係를 규율하는 基本章典으로서의 효능을 지니게 된다. 이 헌장은 대내적으로는 민족통일을 추진하는 기본원칙으로 宣稱됨으로써 민족적 차원의 正統性和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고, 대내외적으로는 통일문제의 自主的 解決 原則을 闡明하는 것으로서 國際的 正統性和 支持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헌장」은 단순한 原則問題나 機構를 설치하는 節次事項등을 明文化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단의 현실에서 벗어나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통일추진의 進路를 引渡하는 基本章典이 되는 것이다. 또 이것은 장차 統一憲法에 의해 통일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남북관계 전반을 規律하는 基本規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5. 理念과 制度가 다른 남북한사이에 어떻게 「남북연합」을 할 수 있는가?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定期國會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에 이르는 中間過程으로서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한 쌍방이 합의하여 채택하는 民族共同體憲章에 따라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 체제로 「남북연합」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연합」은 남북이 이질적인 사상과 체제하에서 연방체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장 완전한 통일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을 인식하여 우선 민족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연합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 이유는, 오늘의 分斷狀態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상호충돌의 위험없이 統一基盤을 확실하게 다져 나가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남북연합이란, 그 자체가 통일된 국가의 최종형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분단의 현실을 관리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統一體制로서 잠정적 결합체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南北聯合」은 「1民族 2國家」 체제하의 國家的 關係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내부의 특수한 結合形態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형태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연합」이라는 用語 자체가 단순한 지역적 결합을 뜻하는 概念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성격과 內容에 대해서는 논란의 餘地가 있다.

우리가 제의한 「남북연합」은 어디까지나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特殊關係로서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와는 다르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여러 국가들이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政治的 統合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유럽공동

체」(EC)나 「노르딕연합체」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共同體와 노르딕聯合體의 경우는, 경제분야의 통합에서 출발하여 점차 통합의 정도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정치적 통합까지 指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념과 체제는 물론 生活樣式面에 있어서도 참가국들이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남북연합」은 그 概念과 전적으로 부합되는 역사적 前例와 실증적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남북연합의 構想은 특정한 理論을 모방한 것이 아니며, 다른 국가들의 統合形態를 모델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聯合」의 제의는 우리가 처음 내놓은 독창적인 것이다.

다만 우리의 歷史的 傳統과 남북분단의 現實的 與件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統一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서 특수한 結合形態의 일종이다.

우리가 제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이라는 共同管理體制를 두려는 목적은, 오늘의 分斷狀態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方案을 제시할 필요성을 인식한 바탕에서 우선 兩體制의 聯合形態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했기 때문이다. 즉, 「南北聯合」은 民族과 國家가 하나로 합쳐지는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方途로서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과도적 統一體制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연합」은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 날카롭게 맞서 있는 오늘의 분단상태로부터 평화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분단 관리우선의 現實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이 아무리 소중한 민족의 至上課題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接近方法이 摸索되어야 한다.

당장 오늘에 통일이 실현되지 못할 바에는 분단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민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편, 불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互惠的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착실히 통일기반을 다져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오늘의 분단과 미래의 통일 사이에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設定하여 민족사회를 하나로 잇는 方案과 통일국가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方도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의한 「南北聯合」의 實現可能性은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당장에라도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機構設定과 역할까지 상세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상 前例가 없는 결합형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남북한이 상호 논의하고 수정보완하면서 통일의 중간과정을 착실히 다져나가면 못할 것도 없다.

문제는 우리의 제의를 북한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受容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이 赤化統一野慾의 妄想에서 깨어나 진정한 민족성원의 자세로 돌아와 민족통일의 테이블에 동참하여 진지하게 통일논의를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熱意와 意志에 따라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統一以前에라도 남북한 동포는 서로 왕래하고, 서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리면서 共同體生活圈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화유산을 繼承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南北韓 정부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정치적 통합에 앞서 사회통합, 문화통합, 경제통합의 길을 여는 통일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을 기어코 성공시켜야 한다.

6.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측과 공산권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 실현가능성은?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후, 북한과 공산권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반응〉

1989년 9월 14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두 개 조선을 조작하는데 알맞는지는 몰라도 통일방안으로는 아무런 합리성, 현실성이 없다.”
- “이 統一方案은 이전 獨裁者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共同’이니, ‘연합’이니 하는 허울을 씌워 통일방안이란 냄새나 피웠을 뿐, 본질에 있어서 그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이 統一方案은 두 개 조선으로의 분열을 固着化 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한정없이 끌려는 ‘제2의 分裂方案’이다.”
- “‘동서독식’의 基本協定과 똑 같은 「공동체헌장」이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固着시켜 서로 남남끼리 살자는 것이다.”
- “교류협력을 통하여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통일을 위한 바탕을 마련한다고 떠들고 있으나, 과연 두 개 국가로 있으면서 장사나하러 왔다 갔다 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 “國家保安法을 그대로 두고 도대체 ‘共同體’와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고, 交流協力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中間段階란, 본질에 있어서 통일의 接近段階가 아니라, 두 개 국가의 첨예한 대치단계이며, 북과 남의 對決段階이다.”
- “현실적으로 單一制度에 基礎한 통일이란 前提로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일방이 타방을 먹지 않는한 도저히 실현될 수 없

다.”

• “북남 쌍방사이에 다른 한 제도를 없애버릴 것을 豫見하는 단일제도의 「통일헌법」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가.”

• “統一問題 해결을 기약없이 지연시키고, 中間段階라는 명목 밑에 북과 남의 관계를 두 개 國家關係로 合法化하여 우리나라에서 對決과 分裂을 끝없이 지속시키려는 대결과 분열의 방안이다.”

〈共產圈의 反應〉

1) 소련의 반응

1989년 9월 12일 소련은 모스크바 방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노태우대통령은 두 國家首班理事會를 조직할 것을 제의했다. 동시에 남조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리와 각측에서 10명의 相들이 참가하는 내각을 조직할 것을 제의했다. 그리고 남조선대통령은 조선반도를 둘로 나눈 現비무장지대를 平和地帶로 창설할 것을 호소했다.”

• “주요야당인 平民黨은 大統領의 계획을 반격했다.”라고 논평없이 보도했다.

2) 중국의 반응

1989년 9월 12일 중국은 北京放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이 방안은 조선북측이 發起한 「高麗民主共和國」의 형식으로 통일을 실현할 데에 대한 方案과 對立되는 것이다.”

• “옵서버들은 ‘이 제의는 南朝鮮의 現行社會制度를 전반적 朝鮮半島에 강요하는데 目的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朝鮮北側이 堅持하고 있는 南北雙方이 지금의 社會制度를 그대로 두고, 그 누구도 相對側을 다치지 않을 데에 관한 統一主張과 맞지 않는다”라고 옵서버의 주장을 인용하여 논평하였다.

〈實現可能性〉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통일이 가까운 시일안에 실현되거나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아직도 남북은 반목과 불신, 憎惡가 남아 있고, 상호 침예하게 對決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國際情勢는 강대국들 사이에 군비축소와 平和共存을 추구하여 「신테탕트시대」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남북한의 狀況與件은 和解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실현은 우선 통일의 前段階로서 잠정적인 中間段階를 거칠 수 밖에 없고, 非政治的인 분야부터 交流와 協力을 추진하면서 중국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는 漸進主義를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理念과 體制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위에 「南北聯合」이라는 과도적 統一體制를 만들고, 이 안에서 交流와 協力을 통해 民族同質性을 회복하고 民族共同生活圈을 형성하여 民族社會의 통합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전히악의에 찬 비난으로 拒否意思를 밝혔다.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에서 아무리 훌륭한 統一方案이 나왔다 하여도 타방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통일은 方案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 상호간에 統一接近을 위한 共同協力 없이 통일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측의 태도에 달려있다. 북한도 하루속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눈을 돌려 「大轉換의 時代」에 순응함으로써 變革의 물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의 세계는 體制와 理念을 넘어 平和와 和解를 指向하고 있다.

세계의 도처에서 사회주의는 死滅해 가고 “이제는 공산주의로는 안된

다”는 목소리가 공산국가 안에서 메아리쳐 가고 있다.

북한도 주저없이 개혁과 개방에 동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統一對話에 나와야 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통일 대화와 평화공존, 그리고 교류협력을 바라고 있다.

7. 우리의 자주·평화·민주원칙과 7·4 남북 공동성명의 통일 3 원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선의의 체제경쟁 상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합의하여 발표되었다.

그런데 남북간의 歷史的인 합의문서인 공동성명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합의에 서명한 북한이 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내용의 일부만을 恣意的으로 해석하면서 상대방을 타도하기 위한 비방의 소재로만 이용하기 때문이다.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은 統一의 原則과 구체적 실천사항 등 남북한이 지켜야 할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남북간의 최초의 합의문서다. 이는 4반세기 동안 단절된 남북한이 서로 理念과 體制를 초월하여 對話를 추진하고 제반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 역사적 문서인 것이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항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선언했다.

첫째, 통일의 원칙에 관한 합의이다.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民族自決權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自主의 원칙,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平和의 원칙, 그리고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을 도모한다는 民族大團結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에 관한 합의이다. 서로 상대방을 비방 증상없고, 무력도발을 하지 않으며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셋째, 남북교류에 관한 합의로 민족적 유대, 상호 이해증진, 평화통

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한다.

넷째, 남북적십자회담에 관한 합의로 회담을 빨리 성사시켜, 이산가족의 재회를 실현시킨다.

다섯째, 상설 직통전화 개설의 합의로 돌발사고 방지등을 위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직통전화를 가설한다.

여섯째,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이다. 남북간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일곱째, 이상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 것이다.

이 성명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남북조절위」 소명론에도 불구하고 동성명의 정신이 유효함을 강조해왔고, 그후 제반 대북제의를 통해 실천을 모색해 왔다. 우리의 기본인식은 법적 차원을 떠나 한반도에 2개의 정치적 實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호 확인한 기초위에서 쌍방이 평화공존의 과정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남북한 관계가 사실상 평화공존의 초기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우리는 平和共存과 統一을 상호 배타적이며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를 않고 상호 밀접히 연관된 과정과 단계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키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잠정적인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무력혁명에 의한 통일은 남북공동성명에 명백히 배치되는 방법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이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이나 「7·7특별선언」의 「민족공동체 형성」 개념도 7·4공동성명 정신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원칙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3원칙이 제시하고 있는 정신을 그대로 계승 포용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밝힌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은 국민적 합의일 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수용한 것이다.

통일의 원칙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도적 단계에서, 혹은 통일국가의 수립 절차를 협의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우리 민족의 입장과 자세라 할 수 있다.

自主의 원칙은 우리의 통일문제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남북한 쌍방의 협의로 해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격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선의의 협력관계를 단절하는 고립과 폐쇄를 의미하는 폐쇄적 자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남북한 어느 일방이 무력이나 전쟁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전복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이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평화란 무력의 직접적인 사용뿐 아니라 일체의 폭력적 방법의 배제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代議民主主義 원칙을 떠나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통일은 민족구성원 全體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통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民族 全體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서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화해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때에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민주적권리가 보장되고 책임이 수반되어야 민족대단결이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통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민족 대단결은 어디까지나 민주 원칙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 원칙과 함께 민주 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수용함으로써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 3원칙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한편, 「민주」에 바탕을 둔 「민족대단

결」의 실질적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해 남북한의 당국자가 서로 합의하여 발표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김일성의 통일노선에 대한 한국측의 굴복, 즉 자신들의 승리라 규정하면서 대남 전략적 차원에서 그일부 조항만을 일방적인 해석에 의해 수용하고 나머지 합의사항은 파기하고 있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주체적인 통일노선의 위대한 승리”나 “수령께서 제시하신 통일방도의 빛나는 승리”라고 선전하였다.

북한측은 남북공동성명 7개항중 제1항의 평화통일 3대원칙만을 왜곡 해석하여 선전하며, 나머지 6개항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성명의 제1항인 통일원칙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내세워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한정권의 퇴진 및 공산당활동의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7·4남북공동성명」은 통일의 원칙과 추진방안을 합의한 문서로서 제 기능을 하여야 함에도 북한측은 수차 “남북 조절위원회는 없어졌다”고 공언하며 합의사항 전체를 파기시켰다.

앞으로 남북간에는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좀더 명백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조치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과연 사회 각계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 통일방안이라고 할수 있는가?

統一의 主役은 民族構成員 全體이며 統一國家는 결국 민족전체의 民主的 意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통일방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추진력 또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의 통일방안수립이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어 각계 각층의 의사를 수렴하는데 미흡하였고, 때로는 일방적인 홍보 계몽으로 나간 나머지 통일방안의 내용이 국민속에 뿌리박지 못해 왔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제6공화국정부가 들어서고 내외정세의 변화 즉 民主化·開放化의 시대에 있어서 統一論議도 개방화함에 따라 정부는 새통일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250회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등을 통해 학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계, 경제계, 여성계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왔으며 국회 통일특위의 공청회등을 통해 정치권의 의견도 수렴해 왔다.

또한 정부는 각계의 통일관련주장과 언론매체를 통해 表出된 통일논의 총 426건을 취합·분석·정리하였으며, 88년 6월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지방을 비롯한 각계각층 1만 6천 8백여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衆智를 모아 왔다. 특히 통일방안이 우리 민족전체의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海外교민사회 지도층인사까지 범위를 넓혀서 광범하게 여론을 수렴해 왔다.

따라서 이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결집하여 창출된 명실상부한 국민의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통일방안 관련 국민의견 수렴

간담회·세미나 (총 250회, 2,304명)

구 분	실시 기 간	회수	인원	분 야	비 고
각계인사와의 대담·간담회	88. 6. 1 ~12.31	220	1,647	학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교육계, 법조계, 노동계, 여성계, 문화예술계, 대학생 등	
지방도시순회세미나	88. 10. 29 ~11.12	10	96	학계, 언론계, 사회계 등	시도별 주요 10대 도시
통일문제전문가 워크샵	88. 11. 8 ~12.20	6	42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통일대화유경험자세미나	88. 10. 21 ~12.26	5	44	통일대화 정책자문위원, 남북회담대표단	
교민방문간담회	88. 11. 24 ~12.13	9	475	교민지도층인사, 주재언론인·상사원 등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실문조사 (총 16,801명)

구 분	실시 기 간	인원	비 고
여론지도급인사	88. 6.25~12.22	5,939	대학생 포함
서울시민	88.10.17~10.24	800	한국갤럽연구소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	88. 9.16~12. 6	9,198	
민족통일협의회원	88.10.18~11. 5	259	
해외교민	88.11~12.	605	아주·구주·미주지역

논의·논조 분석·정리 (총 426건)

대 상	분 석 범 위	건수	비 고
각계의 통일논의	87. 9. 1~88.10.31 기간중 자료	77	각당의 정강·대표연설, 단체·개인의 주장 등
일간지(7개)의 논의	88. 3. 1~88.10.31 기간중 자료	326	사설, 기획기사, 해설기사 등
대북접촉·교류 제안	88. 3. 1~88.10.31 기간중 자료	23	개별인사, 민간단체, 학생단체 등

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남북연합」과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나 두 방안은 민족을 보는 시각, 통일에 이르는 접근방법, 지향하는 통일국가의 형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수용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먼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쌍방간에 가로 놓여있는 장벽을 헐고,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아 민족적인 和음을 달성함으로써 민족의 완전한 재통일을 위한 밑바탕을 하나씩 다져나간다는 점진적 통일에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첫째, 과도적 통일체제로 「南北聯合」을 결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즉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룩하기전까지의 남북간의 분단현실을 관장해 나갈 중간 단계적 성격의 잠정적체제로서 제의한 이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다같이 번영해 나갈수 있는 공존·공영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서로 달라진 민족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터전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임시체제를 말한다.

이 때 남북한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둘째, 통일국가의 未來像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된 조국의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 통일이후 국가의 형태와 국회의 구성방법 등에 대한 우리측의 구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통일된 국가는 단일국가 이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연방제 방식

과 같은 미완성형 통일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체제는 반드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통일만 된다면 어느체제라도 좋다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을 확고히 배격하고 있다.

셋째, 북한측의 입장과 주장을 폭넓게 受容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입장만을 내세워 북한측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 나간다는 기본정신 아래 지금까지 북한측이 주장해온 바와 처하고 있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등 「남북연합」에 두는 모든 기구들의 구성을 남북에서 똑 같은 수가 참여토록 하고 있다. 또 「남북연합」이 세워지면 민족 동질성회복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교류·협력문제와 함께 정치, 군사문제까지도 협의해 나갈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것은 북한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를 적극 받아들여 의논하자는 우리측의 폭넓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1980년 10월 10일 북한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들고 나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먼저 남한에서의 반공정책철폐, 주한미군철폐, 반공정부의 퇴진등 이른바 선결조건이 실현되면,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채 쌍방의 대표 및 해외동포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기구들이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는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첫째, 상대방체제를 부정하는 先決條件을 제시해 놓고, 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상호 용인하는 바탕위에서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하는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더욱이 대화상대방의 體制를 부정하고 자진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평화적 통일방안이 될수가 없다.

둘째, 「10대 시정방침」에서 연방제로 통일된 뒤에 교류·협력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실현시켜야 할 남북한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화합과 민족공동체형성을 거부하는 논리로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정치선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셋째, 북한의 연방제는 분단된 나라의 통일에 있지않다. 즉 연방의 개념을 대외적으로는 공존지향적 통합유형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10대시정방침중의 민족연합군 창설과 대외정책의一元化에서 對外主權을 연방정부만이 행사하는 전형적인 연방(Federation) 형태로서, 이는 결과 속이 다른 기만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연방에 필수적인 연방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허구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북한의 입장이 애매한 것은 실제 추구하는 대남정책의 기초가 ‘연공합작’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선결조건을 무시한다하더라도 정치사상과 制度가 다른 체제간에는 연방을 형성 할수가 없다. 그런 歷史的인 선례도 없으며 이론상으로도 실현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소련의 예를 보면 쉽게 이해 할수 있다.

다섯째, 같은 민족간에 연방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73.12刊 p.313)을 보면 “연방제는 문화, 풍습, 언어가 다른 이민족간에 실시하는 국가구조형태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남북간에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연방제를 들고 나올때는 통일이 될때까지 과도적 조치로 연방제실시를 주장 하더니 1980년 6차당대회에서 들고나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통일된 최종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 공산집단이 꾸준히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연방제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平和共存性을 부각시킴으로써 내외 여론을 현혹시키려는데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감상적 통일논의를 부채질

하고, 주한미군철수등을 통해 국가안보태세를 약화시켜 '선 남조선혁명' 후 남쪽에 연공정권을 수립하고 북한정권과 合作(연방, 연합, 연립), 공산화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기본노선에서 나온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평화통일 방안이 아니고 대남적화전락에 입각한 「위장평화전술」이라고 하는 이론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

10. 우리가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대남혁명노선의 포기를 주장하는 배경과 이유는?

우리민족은 1945년 日帝의 식민지로 부터 벗어나는 민족해방의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전에 국제정치의 희생물로서 민족분단을 강요당하여 올해로 45년의 분단민족사를 맞고 있다. 민족의 분단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100만이 훨씬넘는 군사력이 상호대치되어 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은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비 부담 등 민족적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간에 편지한장 내왕 못하는 민족적비극은 지속되고,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갈등으로 인하여 민족적동질성은 가속적으로 파괴되어 감으로써 민족의 분단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남북한이 영원히 갈라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분단의 극복은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민족사적 소명이다.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차적과업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사상과 제도의 대립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남북한이 냉전구조적 상황밑에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호 적대적의식을 청산하고 民族共同體를 구성하는 같은 성원으로서의 동반자관계를 이룩하여야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조선’에서 반드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이 포기되어야 한다.

오늘날 배를린장벽이 무너져 동·서독 통일문제가 거론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분단상황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동·서독사이의 교류·협력관계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교류·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2민족·2국가정책으로 압축될 수 있는 동독의 대서독혁명전략의 포기가 뒷받침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동·서독관계와 한반도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류·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남북한 평화공존관계의 定着을 이른바 ‘두개조선조작책동 정책’이라고 매도하면서 한사코 반대하여 왔다. 북한의 이와같은 주장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기본 속셈은 ‘남조선’혁명전략노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명백백한 실증이었으며, 북한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한 남북대화의 전망은 불투명하며, 한민족공동체형성을 통한 민족통일로의 접근 가능성은 희박했었다.

그러므로 우리민족이 남북한간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 통일로 접근하려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노선이 포기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족통일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갖춘 「근대민족국가」를 형성시키는 과업이며 이 과업이 실현되려면 오늘날 소위 「주체사상」으로 위장된 북한의 독재체제는 청산되어야 한다. 북한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인민대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허울좋은 「주체사상」을 표방하여 대내외적인 선전·선동을 강화함으로써 마치 ‘인민대중’이 국가사회의 주인인양 철저히 위장되고 있으나 북한의 인민대중(주민)은 「조선로동당」 및 궁극적으로는 勞動黨을 틀어쥐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시키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북한에는 현대문명사회가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나아가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통제된 획일적 사회일 뿐만 아니라 人權이 근본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兵營社會이다. 이러한 말살된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지 않는한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통일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노태우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국회개원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의하면서 북한정권에게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였던 바, 이것은 우리나라가 통일정책을 제기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다.

11. 南北分斷의 경위와 分斷長期化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南北分斷의 經緯〉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36년간의 암울했던 日本植民統治로 부터 우리나라는 해방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美·蘇 強大國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시켰다.

제2차 世界大戰의 戰後 처리과정에서 戰勝國인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38도선을 경계로 南北으로 分割占領한데서 비롯되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독일의 분단과는 달리 戰時의 聯合國會談에서 사전에 論議나 합의된 바 없이 갑자기 이루어 졌다.

다시 말해서 1945년 2월 8일 「알타會談」에서 한반도의 분할점령이 密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즉, 그 회담의 내용이 전부 발표된 公式文書에도 한반도 분할점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새로운 自主政府가 출범할 때까지 信託統治를 실시할 것에 관하여 루즈벨트와 스탈린의 짧은 對話가 전부일 뿐이다.

그리고 1945년 7월 17일 「포츠담會談」에서도 한반도 분할점령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戰時의 聯合國會談이 한반도의 분단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합국회담에서는 일본의 敗亡後에 한국의 즉각적인 獨立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책임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信託統治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버림으로써 이미 한반도문제를 國際化시켰다. 이러한 처사는 결국 한반도의 분할점령을 가능케 하는 整地作業과 같은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만일 전시의 연합국회담이 한반도의 즉각적인 독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그主人에게 맡겼었다면, 비록 우리에게 民族獨立運動 세력간에 분열과 대립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남북분단의 비극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알타會談」에서 소련의 對日參戰을 약속받음으로써 소련이 한반도에 진격해 들어오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 처사도 한반도 分割占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했고 대대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그리고 蘇聯軍은 한반도에서 破竹之勢로 南下하자 미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蘇聯軍의 南下沮止線을 어디에 확정할 것인가에 苦心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에서도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野心을 간파한 外交官들(폴리모스크바 特使, 헤리만 駐蘇大使 등)의 建議(미국이 한반도를 先占하고, 즉시 소련의 南下를 저지해야 한다)도 있었지만 트루만은 이 建議를 일축해 버림으로써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이와같은 상황에서 陸軍省 찰스·본스틸대령과 딘·러스크대령의 건의를 채택하여 “38도선을 경계로 미·소양군의 進駐와 지역내 일본군의 降伏接受”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영국, 중국, 소련에 통보하여 동의를 받는 한편, 「一般命令 제1호」로 맥아더사령부에 하달함으로써 南北으로 분단되었다.

결국 남북분단은 外勢의 책임이지만, 우리 민족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족의 自主·獨立力量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國權을 빼앗겼던 것이 그렇고, 解放前後 民族獨立運動 세력간의 분열과 대립으로 統一獨立의 기회를 잃은 것이 그렇다.

〈分斷長期化의 原因〉

南北分斷이 장기화되는 원인은 統一을 沮害하는 要因이 있기 때문이며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통일을 실현하려면 政治理念과 體制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自由民主主義 체제와 共產主義 체제의 상극적인 이데올로기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國家形態와 어떤 政治體制를 선택하느냐의 난제를 풀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이념 및 체제문제의 극복은 남북한이 사회를 개방하고, 민족성원들이 두 體制를 비교·확인한 뒤,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平和定着을 위하여 남북한이 긴장완화와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합의에 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제적 보장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은 敵對意識을 불식시키고 하루속히 신뢰회복을 이룩하여 民族共同體意識을 함양시켜야 한다.

우리는 「한 민족」, 「한 겨레」임을 확인하는 民族共同體意識을 함양시켜야 한다. 남북한이 상호 적대의식과 민족이질감이 상존하는 상황은 통일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分斷長期化를 종식시키고 統一成就의 길로 매진하는 첩경은 남북한이 상호간 신뢰회복과 민족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두고, 모든 난제들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넷째, 북한은 對南赤化統一의 야욕을 버리고 진정한 統一對話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오늘날 중·소 및 東歐共產圈의 民主化, 개혁·개방의 물결과 역사적 변혁의 흐름에 북한도 주저없이 동참하여 폐쇄된 사회를 개방하고, 주민들에 대한 「金日成父子偶像化」식의 政治教化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東獨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개혁과 변화의 과정을 본받아야 한다. 동독 공산당의 장기집권 독재자 호네커의 퇴진과 연금, 「베를린障壁」의 자유개방, 東西獨頂上會談, 1990년의 自由總選舉實施등과 같은 措置들이 북한에서도 일어나 북한공산당의 장기집권 독재자

金日成의 退進과 審判, 「休戰線」의 자유개방, 南北頂上會談 개최, 북한지역의 자유총선거 실시 등 民主化, 改革의 歷史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金日成主體思想」의 迷夢에서 북한주민들이 깨어나게 되고, 참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에 대한 민주사회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바탕에서 민족 본래의 바탕으로 돌아와 진정한 民族統一을 위한 진지한 對話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때가 分斷長期化의 길에 終止符를 찍고, 남북한이 한 민족성원으로서 나란히 統一大道를 향한 힘찬 巨步를 내딛는 때가 될 것이다.

12. 남북한이 서로 「民族史的 正統性」을 내세우는데 그 구체적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가?

〈문제의 제기 및 정통성 개념〉

정통성문제가 제기되었던 시기는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와 관련된다. 즉 1970년대초에 유엔에서 한반도문제는 당사자문제로 한정시킴으로써 남북한당사자들이 한반도를 누가 대표하며, 어느쪽의 통일명분에 따라 통일해야 하느냐의 競爭의 와중에서 이것을 판가름짓는 전략개념으로서 남북한 어느 쪽이 민족사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통성의 개념화가 다양하므로 실제 우리 내부에서도 체계화되지는 못한 면도 있다. 다만 여기 정리한 내용은 주류를 이루었던 논리를 정리할 뿐이다.

「正統性」이란 어떤 主體가 갖는 正當한 法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족이 主體가 되어야 하는 민족사에서는 그 민족의 정통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民族史의 정통성은 民族이란 주체가 갖는 「주체성」과 國家라는 주체가 갖는 「정통성」위에서 성립되는 것으로서 민족사의 정통성을 위해서는 먼저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여야 하고, 그 위에 국가적 차원의 정통성을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사적 정통성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에서도 찾아야 하고, 未來까지도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정통성에 대한 합리성, 고유성, 지속성 등을 갖추어야 된다.

〈大韓民國의 正統性〉

조선왕조 말기에 淸·露·日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이 그들의 지배권을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지역에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정세 속에서 高宗은 1897년 「大韓帝國」이라는 國號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뒤 日本의 강압에 의하여 韓日合邦이 이루어졌으며, 大韓의 國民들은 1919년 3월 1일 民族代表 33인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문을 선포하자 독립운동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지고 해외에 까지 확대되었다. 日帝는 총격으로 강압하였기에 애국지사들은 해외로 망명하여 국권회복과 民主共和體의 독립한국을 세우기 위하여 上海에서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日帝로부터 광복을 되찾게 되자 유엔의 결의와 감시하에 공정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은 그 헌법전문에서 3·1精神을 계승하였음을 명백히 밝히는 동시에 임시정부의 國號인 「大韓民國」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수립방법면에서나 국내외로부터의 지지획득면에서 북한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다.

물론 「朝鮮」이란 국호도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호칭이기는 하다. 그러나 朝鮮王朝와 日帝侵略下の 통치기관인 「朝鮮總督府」를 연상케 하는 당시의 국민감정으로 보아서는 다시 국호로 사용하기에는 달갑지 않았다.

〈북한의 「抗日革命傳統」의 내용과 허구성〉

우리의 정통성과는 달리 북한이 내세우는 正統性이란 김일성이 만주에서 抗日鬪爭을 전개하여 支配的인 역할을 했다고 날조하는 데서 그 기초를 찾고 있다.

이 혁명전통에 대하여 黨規約과 社會主義憲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黨規約前文：“1926년 처음으로 조직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抗日革命鬪爭을 통해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로동당은 抗日革命鬪爭시기에 김일성수령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社會主義憲法3條：“조선민주주의 人民共和國은 帝國主義 侵略者를 반대하여 조국의 광복과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革命傳統’이라는 것은 순수한 민족주의적 항일투쟁의 전통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팽창을 방조하는 목적으로 소련공산체제를 적용하는 점에서 반민족적 정통성이라 하겠다.

初期憲法에는 ‘抗日傳統’을 나타내지 않았었는데 1972年 社會主義헌법에서 규정 되었다.

북한이 소위 김일성의 “抗日革命傳統”이라 내세우는 날조된 역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근대사는 1866년「서만」號 사건에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를 등장시키는 데서 부터 시작한다. 그후 김일성의 父 金亨稷은 1917년에 평양에서「朝鮮國民會」라는 항일비밀조직을 만들고, 1919년의 3·1독립운동에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며, 192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는 社會主義의 혁명운동에 또한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응우로부터 4代가 되는 金日成은 1926년 14세 어린 나이로 <ㄷ·ㄷ>(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비밀혁명조직을 만들고 1936년 5월에는「조국 광복회」를 창립하여 회장이 되었으며, 만주에서「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고 이를 이끌고 국내에 들어와 보천보 茂山地區戰鬪를 주도하여 승리하고, 드디어 1945년 8월에 일본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家系를 독립운동가문으로 날조하여 북한은 김일성우상화와 통치의 정당성을 조작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抗日革命傳統”이란 金日成 1人統治의 정당화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며 民族成員이 총체적으로 살아온 역사의 줄거리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한낱 역사날조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外侵을 이기며 살아온 민족의 역사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民族의 주체적 차원에서나, 法統性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그들이 내세우는 「혁명전통」주장이 합리성 면에서 설득력이 없자, 근세사의 왜곡, 항일투쟁사의 날조, 심지어는 김일성 부자 및 그의 家系에 대한 우상화 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또 文化的 정통성 면에서 고찰해 볼 때 북한은 일부 민족고유의 전통과 풍속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말소되었고 생활패턴도 상당히 달라진 점을 볼 때 문화적 측면에서도 북한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3. 남북한이 지향하는 理念과 體制가 다른 상황에서 과연 평화통일은 가능한 것이며, 역사적 先例가 있는가?

單一民族이 한 主權國家로 統一한다는 것은 정치이념과 체제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國家的 통일을 말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국가통일의 형태이며, 우리 민족통일의 궁극적 목표이다. 우리가 이런 통일을 달성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극적인 정치이념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여 이념과 체제를 하나로 收斂하거나 調和시키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통일 앞에 제기되는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한 국가가 理念을 달리한 分斷國家로 갈라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終戰과 함께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이념과 체제가 상이하게 분단된 나라로는 南北韓, 東西獨, 中國, 베트남 등 4개국이다. 4개국 가운데 재통일을 완성한 나라는 공산화된 베트남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무력에 의한 合併이었다.

베트남을 제외한 현존하는 3개의 분단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이념과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면 그것이 최초의 역사적 선례가 된다.

역사적 先例의 유무에 상관없이 분단국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상황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한 推論이 될 수 있다.

어떤 정치이념이나 체제, 특히 근대의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창출된 특정 理念은 영원불멸일 수가 없다. 역사의 발전과 時代狀況의 변화에 따라 이념의 변질과 체제의 변화는 반드시 수반되게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발전과 시대상황에 적응력이 없는 이념과 체제는 실천적 검증과정에서 그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兩大 정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표면상 병렬의 이념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개의 상극적인 정치이념이나 체제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 평가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도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生成하여 이상적인 가치와 제도로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共產主義는 한 시대의 특정상황을 배경으로 目的意識을 가진 일단의 사상가와 정치 지도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自由民主主義가 모든 사상과 제도,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包容하고, 시대와 상황에 적응하는 생명력과 자체 조정능력을 지닌 相對的 理念이라면, 공산주의는 도식적 세계관과 歷史觀에 입각한 절대적 教條主義로서 상황과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없는 이념이다.

최근 공산국가에서 보여주는 변화상황을 體制의 收斂現象으로 보든, 보지 않든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념과 체제가 非공산주의적으로 변질되어 가고있는 사실이다. 북한이 현재 고수하고 있는 이념과 체제도 차츰 내외의 압력을 받아 변질되어, 우리 민족통일의 장애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南北韓간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여도 민족의 슬기를 발휘한다면 통일의 가능성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성원 전체가 자유롭게 이념과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다면 평화적 통일은 성취할 수 있다.

어떤 특정의 정치이념이나 체제가 절대적인 價値를 지닌 무오류의 사상과 제도라는 환상은 그리 오래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제시한 통일의 목표이며 동시에 未來像인 자유, 인권, 행복의 理念은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치일 뿐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의 어떤 정치체제도 이런 가치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는 普遍的인 價値들인 것이다. 북한측도 이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있을 수 없다.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가 무엇이든 자유, 인권, 행복의 理想을 목표로 그 體制를 발전시킬 수 밖에 없다. 이를 목표로한 양 체제의 발전과정에서 體制 優劣은 드러날 것이며, 동시에

우리 민족성원에게는 더 우월한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현상황에서 理念과 體制문제를 克服하는 첩경은 우선 한반도의 平和定着과 남북한간의 信賴를 바탕으로 한 交流 協力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연합」의 단계를 설정,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각 분야에서 상호 開放하여 교류와 협력을 해 나간다면 상호 신뢰가 쌓이고 민족의 一體性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民族共同體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며, 더욱 공고한 민족공동체로 發展된다면 우리 민족성원은 급속히 單一民族國家를 실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상극된 이념과 체제를 調和내지는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 민족성원은 민족전체의 繁榮과 個人의 권리와 누구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體制를 선택하거나, 창조적으로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북한과 合意할 수 있는 통일을 향한 여러가지 제의와 제안들을 강구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對北政策, 동시에 북한의 제안들도 受容하는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 국제정세가 한반도의 통일에 유리하도록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對外政策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南北韓간의 理念 및 體制問題는 民族이란 높은 次元의 理念下에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이념과 체제로 향해 나갈 때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平和統一 이외의 方法으로 統一을 추구하려 할 때는 民族의 自滅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나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남북간의 상이한 이념·체제문제도 해결해 주며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줄 것이다.

14. 사회일각에서는 이른바 「收斂理論」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혼합·절충체제를 거론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1950년대 말부터 歐美學界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수렴이론은 현재 대립하고 있는 두개의 社會體制의 장래를 展望하는데 有效한 理論으로 거론되어 왔다.

수렴(收斂 : Converge)이라는 語源을 살펴보면, 라틴어의 Convergere 로서 “무엇이 기울어지다. 접근하다. 한 점에 모이다.”라는 뜻이다. 이 용어는 원래 자연과학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기하학에서는 두 線이 한 點에서 接하는 경우, 생물학에서는 生體 혹은 비교적 유사한 환경의 적응으로 인하여 생기는 눈앞의 한 點으로 집중하는 경우에 使用되어 왔다.

그러나 50년대 부터 이 集中의 개념은 경제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援用되기 시작했다.

사회과학자들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現代의 두 社會經濟體制 즉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 사이에는 상호 접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체제는 현재 동일한 기술적·사회적·경제적 課題를 안고 있으며,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未來는 필경 비슷한 軌道에 진입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aymond Aron, W.Buckingham, Pitirin A.Sorokin, Jan Tinbergen, John K.Galbraith, Fritz Sternberg 등의 학자들에 의해 전개된 수렴이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계의 기본적 命題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간에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類似點이 존재한다.

둘째, 양체제간의 차이는 상호작용 접근의 결과로 서서히 소멸되어 간다.

셋째, 양체제의 특징과 요소를 배합한 混合型的 單一 社會經濟體制
 으로 양 체제가 轉化하는 必然的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수렴이론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中央執權化와 規制가 강화되는데
 반해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는 分權化와 自由化가 일어난다고 본다. 따라
 서 社會主義 사회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가 없어지고 경영의
 自律化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초기에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가미
 된 市場經濟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급기야 現代資本主義社會와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데올로기가 융화된 새로운
 세계는 市場經濟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도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西方側 학자들의 수렴이론에 대해 공산권학자들은 帝國主義
 的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964년 4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현대부르주아社會의 수렴이론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공산권학자들은 “수렴이론은 부르주아思想의 전개에 지나
 지 않는다”고 귀결짓고 있다.

또한 東獨의 M.G.Donhoff는 1971년 10월 “수렴이론이란 마르크스·레
 닌주의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공격을 위해 대두된 것이다. 즉 사회주의
 를 말살시키기 위한 하나의 독트린으로 創案된 것이다. 이는 두 體制의
 차이와 政治的 變化를 전연 도외시한 이론이다”라고 공박한 바 있다.

공산측의 입장은 사회주의적인 변혁을 위한 투쟁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자본주의만이 인류의 자연법칙적 발전책으로서 영구적인 사회형
 태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체제의 수렴·통합은 사회·경제적 不相
 容 때문에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 본 수렴이론은 어디까지나 高度의 産業社會를
 전제로 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화의 과정을 거친 서구의
 先進社會 理論이라는 點에서 分斷韓國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援用·適用
 하는데는 일단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同 이론이 제시하는 中核理論이 ① 공업화과정에 있어서는 體制의 차이에 관계없이 생산수단의 기술과 관리층에 脫이데올로기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②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開放과 改革이 불가피하게 되며, ③ 풍요로운 복지사회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教條主義의 세계관에 변화가 일게되며, ④ 異質의인 체제간의 교호작용과 상호 교류증진의 경우, 우수한 체제에로 民心이 기울어지게 된다는 點들이라고 할 때, 장기적 시각에서 南北韓關係發展에의 적용가능성을 진단·시도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理念과 政治·社會體制가 다르지만 高度의 産業社會로 향한 발전과정에서 접근을 통한 상호적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되고 쌍방공허각기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상호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수용하게 된다면 분명 수렴이론은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는 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쟁방지·평화교류·협력·민족공동체 의식增進이라는 共通利益을 상정할 때, 적용가능성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問題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수렴이론의 접근시각이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수렴을 과연 순탄하게 실현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단순하게 도식적인 방법으로 混合함으로써 과연 통일된 하나의 제3이념·체제가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인 것이다. 왜냐 하면 남북한의 理念을 무조건 변증법적으로 다 지양하고 제3의 理念을 찾아야 한다면, 또는 混合해야 한다면 하는 주장은 공허한 주장일 뿐, 합리성과 현실성을 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階級主義와 타협하여 民族主義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폭력혁명주의에 굴복하여 民族生存權과 自由와 平和를 희생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長期的 안목에서 볼 때, 民族의 생존권과 통일번영을 보장할 수 있으며 민족구성원 대다수의 뜻에 부합하는 민족주의적 정치이념이 그렇지 못한 것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教條的이고 獨斷論的인 이데올로기에 執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民族親和力을 소생시킬 수 있는 民族的 利益優先原則의 立場에서 접근할 때에 현재의 대립적 이데올로기의 자기반성과 발전적 改造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최대과제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이념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평가되는 自由民主主義를 우리의 민족사적 正統性에 더욱 부합되게 발전·구현해 나가는 일이다. 민족구성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自由와 平等을 보장·조화시킬 수 있도록 민주발전과 복지향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理念 및 政治體制 문제는 높은 차원의 民族主義의 이념아래 人類文化史의 발전방향과 軌를 같이 하는 民主·自由·福祉의 이념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민족은 영원하지만 사상과 체제는 限時的이라는 命題아래 알맞는 민족적 정치이념을 創出할 수도 있을 것이다.

15.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정책과 「반공안보」정책과는 상충되지 않는가?

남북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는 狀況의 二重性을 도외시 할 수 없다.

통일이 민족적 과제이고 역사적 召命이며, 또 시급한 것은 分明하나, 40여년이상 계속되고 있는 분단의 現實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分斷의 현실은 대결의 상존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國家安保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共產集團의 대남도발과 전쟁재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한 國家安保와 民族生存을 위한 自救的 차원에서도 反共安保態勢의 強化가 필요하다. 즉 한반도는 統一이 될때까지 통일과 안보라는 두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며, 다만 어디에 더 비중을 크게 두느냐하는 문제가 있을뿐이다.

統一과 安保는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개념인것 같지만 分斷의 現實은 이 두개의 서로 다른 개념을 무시하고 접근할 수도 없다. 우리는 먼저 한반도 分斷 40여년의 상황을 결과로서만 보지말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도 理解해야 한다.

1950년대 北韓의 전쟁도발은 휴전이후까지도 무력대결의 악몽을 씻어 버릴 수 없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4대군사노선(1963. 2)과 3대혁명역량 강화전략(1964. 2)은 우리가 「선 경제건설, 후 통일」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北韓은 1970년 제5차당대회(1970. 10) 이후 ‘결정적시기조성’으로 우리를 위협하였으며, 1975년 4월 김일성의 중국방문은 “한반도의 월남화”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우리는 「8·15선언」(1970)을 통해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선 평화, 후 통일」의 당위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안보상황이 '70년대까지 統一狀況을 크게 위협하였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 통일상황이 커지면서 안보상황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최근의 북방정책과 세계적인 脫冷戰 實用主義의 영향으로 공산권과 교류가 증대되고, 통일논의가 확산되면서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안보상황을 너무 낮게 인식, 평가하는데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에 平和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안보상황을 도외시하는 것은 위험한 思考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하며, 다만 통일 상황이 밝은 전망을 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아직도 北韓側에 상당한 原因이 있는한 우리의 國家安保政策도 이에 相應할 만큼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의 통일이념인 민족·민주·자유·복지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해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대화하며, 민족공존·공영을 이룩하자는 것으로서 양자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16. 한반도 「中立化統一論」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남북 분단이후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이 거론된 시기는 「4·19학생혁명」을 전후로 한 1950년대말과 1960년대초였다. 특히 統一論議의 百花齊放時代라고 일컬어지는 제2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일부 해외동포사회의 인사와 국내 革新系 그리고 미국의 朝野人士들이 한반도 중립화통일방안을 제기하였다.

해외동포사회의 중립화통일론의 주장은 기존의 남북한정권을 東·西冷戰의 대변기관에 불과하다고 간주함으로써 한민족의 自主的인 통일실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입장에서 미·소 세력을 배제하고 중립국감시·보장하의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반도 중립화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국내 혁신계의 중립화통일론의 주장은 南北直接協商에 의한 永世中立化統一과 美·蘇 등의 강대국이나 유엔등 국제적 보장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또한 마이크 맨스필드 美上院議員은 미국이 관련강대국들과 협의하에 「오지리식 중립화통일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 제기되었던 중립화통일론의 특징은 민족내부적 합의나 분단이후의 남북의 敵對的 대치상태, 강대국들간의 논의나 합의의 부재상황과 같은 주변상황을 간과했거나 극히 理想論, 觀念論에 치우친 나머지 무조건 南北協商 강행 입장에서 또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1960년대초 張勉 총리는 맨스필드의 「오지리식 中立化統一方案」과 관련, 政府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그 주요 견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는 오지리와는 달리 소련·중공과 인접하여 전략적 요충에 위치하고 있다. 만일 중립침해시는 유효한 適時對應支援이 불가능하다.

둘째, 오지리는 4개국점령시에도 단일정부를 유지하여 공산주의 세력의 부식이 없었음에 반해 한반도는 북한지역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도발한 공산정권이 엄존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한반도중립화통일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변국가들의 세력균형과 보장, 민족내부의 당사자간의 합의, 전략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自衛를 위한 군사력의 완비등이 中立化現實條件임을 감안할 때, 당시의 상황하에서 한반도중립화통일론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感傷의이고 國論分裂의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 제5공화국 정부의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통일후의 정부형태나 대외정책노선을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포용적이고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즉, 통일정부가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립주의, 비동맹노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親西方·親共產圈路線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의 방향을 못박고 있지 않다. 民族自決, 自由, 民主, 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의 對外政策 路線은 우리에게 적대하지 않은 한 그 누구에게도 적대하지 않는 全方位外交政策路線일지언정, 중립이나 아니냐의 兩者擇一的 선택을 강요받을 입장에 있지 아니하다. 민족자결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南北當事者가 합의하는 통일국가 실현이라는 大義名分에 따라 南과 北이 民族的입장에 확고히 서는 노력이 急先務인 것이다.

다만 한반도통일의 방법으로 중립화론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中立維持의 條件과 中立化의 成功·失敗事例를 냉철히 검토하여 教訓要素를 導出함으로써 統一祖國의 未來像정립에 반영하는 것이 意味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오지리의 경우는 소련의 비타협적 태도를 비롯하여 강대국들의 利害不一致로 난관이 컸음에도 民族主義 旗幟下에 단결을 이룩하고 안정된 政黨政治등을 기반으로 결국 강대국의 보장합의를 유도하여

통일을 달성하였다.

한편, 라오스의 경우는 政治·經濟·社會的 불안정과 국민적 합의·단결의 부재 현상 속에서 東·西冷戰과 월남전등의 국제적 요인이 가중됨으로써 끝내 중립화통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中立化 成功의 관건은 內的 合意와 國際的 保障의 존속이라는 두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개의 기둥이 튼튼히 세워지지 않고 걸모양만 갖췄다고 中立化가 곧 統一이라는 等式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오스의 事例에서 보듯이 내적 합의없는 中立的 地位가 내란을 야기시키고, 赤化 陰謀의 시나리오를 현실화해 나감으로써 결국 中立化統一이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또한 中立化論은 자칫, 국내적 요인을 배제하고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에 의한 보장이라는 국제적 요인만을 강조함으로써 외세배격이 곧 統一이라는 단순논리에 빠지기 쉽다. 자칫하면 非同盟 中立主義路線은 곧 民族自主的인 統一論이고 그 밖의 것은 非自主的이고 外勢 依存的인 統一論으로 매도해 버리는 愚를 범하기 쉽다는 말이다.

한반도 中立化 統一方案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中立化 成功條件이 무엇인가를 역사적 경험에서 도출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최소한 다음과 같이 두가지 기본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 中立을 원하는 나라는 內的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中立 또는 中立化에 의한 統一의 主張은 한반도내외의 현실로는 觀念的·理想主義的 論理의 반영이라고 일단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한반도를 緩衝地帶化하여 中立國으로 하면 兩大陣營의 세력균형이나 주변강대국간의 세력균형과 이해관계에도 아무런 害를 주지 않을 것이므로 分斷狀態를 종식시킬 수 있으며, 中立化 統一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개진되어 왔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

이면서 동시에 주변관련국들의 利害가 교차되고 있는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도 남북한의 타협과 東·西陣營간의 타협을 교차시키는 타협점으로서 中立化 統一論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상황을 감안할 때, 위의 두가지 중립화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즉 中立化 統一方案을 선포한다고 해도 統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상 中立化의 참 뜻은 外交·軍事的인 측면의 中立的政策을 표방하는 것이지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한 어떤 새로운 體制·理念 中立化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點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先 統一, 後 中立化 政策路線」의 論議일 경우에만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先 中立化, 後 統一政策路線」의 논의는 非現實的이라고 할 수 있다.

南北간에 合意에 의해 統一국가가 건설된다면, 統一韓國의 對外政策路線의 中立化 標榜문제는 검토될 수 있으며, 주변4강의 合意問題도 현실적으로 거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의 中立化 統一問題는 우선 統一당사자인 南北韓간의 合意(물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됨)가 先行되어야 하며, 그다음 주변4강의 중립보장의 合意와 준수가 뒤따라야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中立化 統一論은 統一論議가 전개되는 가운데 필히 제기될 課題의 하나로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17. 이른바 「民衆統一論」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날 우리社會는 각계각층 즉, 대학가의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을 비롯하여 勞動界, 宗教界, 教育界, 文藝界, 出版界, 其他分野의 民衆革命論者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른바 民衆統一論이란 우리 일반국민들의 순수한 염원인 민족통일과는 전혀 다른 매우 위험한 내용인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중통일이란 소위 「民衆」(노동자, 빈농, 도시빈민)이 주체가 되어 「民族解放」(자립)의 명분하에 주한미군을 축출하고, 「民衆解放」(민주)의 구실하에 반공정권을 붕괴시켜 「민중정권」이란 이름의 人民政權(共産黨이 主導하는 暫定的인 聯合政權)을 수립함으로써 북한의 共産政權과 聯合(북한식 표현으로는 합작)하여 共産化統一을 달성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론이며 국내 민중혁명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두가지 해방 즉, 민족해방·민중해방에 의한 「民衆統一·解放統一」論의 正體인 것이다.

이른바 「민중주권」을 내세우고 기층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민중통일론은 사회를 지배계층과 소외계층으로 양분한 반민족·반평화운동이며, 국민의 수임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무시할 뿐 아니라 통일방해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自民闘」(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의 약칭으로서 대학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좌경반합법조직체)와 「민민투」(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의 약칭으로서 좌경반합법조직체)간에는 多少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자민투」는 민족적 모순을 중시하는 나머지 선 민족해방(자주), 후 민중해방(민주)을 실현한 다음 북한에 흡수통일시키자는데 비해 「민민闘」는 계급적 모순을 강조하는 나머지 선 민중해방(민주), 후 民族解放(자립)을 실현한 다음 북한과 地域自治에

의한 연방제를 거쳐 합작통일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統一概念은 사실상 超階級的인 국민 또는 민족을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며, 또한 和合에 의한 공존논리가 아니라 혁명에 의한 다른 한편의 征服論理인 것이다.

차제에 「民衆統一」論者들이 기도하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이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이는 북한의 당면 對南革命路線인 人民民主主義革命과 同義語로서, 다만 우리국민의 공산주의 기피사조와 현행 국가보안법의 범망을 회피하기 위한 僞裝名稱인 것이다.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들의 분파를 보면 크게 양대파가 있는데 그 하나가 전술한바 「자민투」이고 다른 하나가 「민민투」인데, 이들 양자의 혁명노선을 구체적으로 그 전략계획에 따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社會構成體 평가면에서 「자민투」가 남한을 「新植民地 社會」로 보는 데 대해서 「민민투」는 「隸屬國家獨占資本主義 社會」로 規定하고 있다. 즉, 「자민투」가 식민지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민민투」는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차이가 있다.

둘째, 당면 주요모순의 規定面에서 「자민투」가 「帝國主義와 民衆間의 모순」으로 보아 민족적모순을 강조하는데 대해서 「민민투」는 「파시즘·매판자본과 민중간의 모순」으로 규정하여 階級的모순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주요모순 규정면에서의 차이점은 전술한 社會構成體 評價의 차이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셋째, 당면 1단계 예비혁명의 戰略目標策定에 있어서 「자민투」가 「主帝國主義 逐出, 從 파시즘 타도」로써 민중민주주의정권—실제로는 人民民主主義政權—을 수립하는데 두고 있는데 비해, 「민민투」는 「主 파시즘 타도, 從 帝國主義 逐出」로써 民衆共和國—실제로는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正道라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목표 책정의 차이는 전술한 주요모순 규정면에서의 차이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넷째, 革命主力軍 책정면에서 「자민투」가 「프롤레타리아 영도하의 勞·農·貧民동맹과 그 속에 뿌리박은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주력군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서 「민민투」는 프롤레타리아트만을 주력군으로 책정하고 있다.

다섯째, 혁명보조군의 책정면에서 자민투가 보다 광범하게 진보적 청년 학생층과 인텔리, 小生産者계급 그리고 애국적 民族부르주아지들을 잡고 있으며, 또한 야당도 비록 전략적으로는 打倒對象이지만 與黨과의 갈등을 間接豫備軍으로 활용할 필요성에서 잠정적인 戰術的 제후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서, 「민민투」는 貧農, 도시빈민 및 進歩的 青年學生으로 잡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차이 때문에 「自民闘」는 「民民闘」를 左傾的 英雄主義니, 妄動主義니, 모험주의 등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민민투」는 「자민투」를 두고 左傾的 機會主義니, 投降主義니, 改良主義 등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양파는 서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정통과임을 자처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서로 헤게모니 쟁탈전을 전개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반제·반파쇼투쟁」면에서 통일전선을 취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민투」, 「민민투」와 같은 용어의 사용은 적어지고, “혁명의 불꽃”그룹이라든가 “반미청년회”와 같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이며, 그 후예들은 오늘날에는 「서민학련」, 「전대협」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이 이렇게 밝혀진 이상,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政府는 이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만 하고, 아울러 우리국민 모두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18. 바람직한 統一論議와 그 活性化 방안은 무엇이며 國家保安法 등의 改廢 및 特別法 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6·29민주화선언」이후 「제2의 統一論議의 百花齊放時代」라 할만큼 統一論議가 활발히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통일이 우리민족의 至上 課題이며, 따라서 민족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의견이 개진되고, 또 정부는 이를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統一論議가 國民的 合意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채, 特定集團의 政治的 目的이나 利害에 따라 衆口難防的으로 가열화되거나 性急하게 行動으로 옮기게 된다면 國益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民族의 生存問題가 걸린 統一問題가 현실성이 없는 空理空論이나 心情論에 위탁되어 해결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진정한 통일을 위한 논의를 活性化하려면 정부나 어느 정당, 집단, 개인 할 것 없이 민족의 먼 장래까지 골똘히 생각하며 진지한 연구·토론을 거쳐서 大計를 세운 연후에 차분하게 정책화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民主化時代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통일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歷史와 民族앞에 責任지는 자세와 節制·慎重性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基本的 자세를 바탕으로 다음 몇가지 事項을 유념하여 통일논의를 활성화해 나간다면 진정한 國論合意를 이룩함으로써 통일추진역량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기반조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첫째, 憲政秩序테두리안에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否定하거나 위협하는 통일논의는 스스로 節制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북접촉과 남북대화에 관한 宣言·提議·聲明發表 등은 責任있

는 정부당국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집단이나 개인이 중구난방식으로 대북제이나 대화에 나서는 것이 國益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統一問題 해결에도 否定的 要因이 될 수 있다.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우리의 경우, 가능하면 정부와 병행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國會를 통해 통일논의가 수렴·집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는 통일정책의 입안·추진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保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 발표에 있어서도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구태의 연한 태도로부터 과감히 脫皮함으로써 국민적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가도록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國會(統一特委와 外務統一委)와의 긴밀한 정책협의, 與와 野(政策委)의 事前協議·調整, 정책자문기구의 활성화, 민간통일단체와 社會 各界各層 代表와의 허심탄회한 통일논의 활성화, 통일공청회, 보고회, 매스콥을 통한 통일논의 등 각양각색의 「統一對話의 廣場」을 개설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國民的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大學 및 言論機關 통일문제연구소와 긴밀한 협조아래 통일에 관한 지혜를 모으고 국민여론의 소재를 파악하는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난 89년 9월11일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천명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국회의 공청회를 거쳐 명실상부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실상 「국민적 통일방안」이라 일컬을 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통일은 본질적으로 分裂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和음을 志向하는 것인만큼 우리 안에서 부터 국민화합·국론합의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과거에 풍미했던 政府獨占論이나 對政府 불신풍조는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마음속

에 자리잡고 신뢰받는 정부답게 진정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
고, 국민은 政府를 신뢰하고 節制와 責任感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통일논
의의 自由化·活性化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적 지혜와 統一力量을 結集해
나가는데 동참해 나간다면 生産的인 南北對話, 南北韓關係改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統一論議의 活性化 過程에 있어서 자칫 잘못 적용되거나 국민
의 基本權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法律에 대해서는 점차 改善해 나가야
할 것이다. 國家保安法의 경우,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전복하려는 反國家的
事犯의 적용등 구체적인 法적용의 한계를 보다 세밀히 규정하는 문제등
을 비롯하여 앞으로 운영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改正문
제를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南北交流를 위한 特別法案은 이미 국회에 제출, 계류중에 있
다. 이법은 국가보안법개폐문제와 연계시켜 처리한다는 야당의 입장으로
89년 12월 현재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19. 과거 통일문제를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비판적 見解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일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과 意見의 收斂努力을 결한채, 또 與와 野의 事前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超黨의 합의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채, 政府가 獨占的으로 統一政策·方案을 수립·추진하거나 對北提議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衝擊을 준 경우가 때로는 있었음을 否認할 수는 없다. 統一問題야말로 민족전체의 문제요, 범국민적·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下向式 統一論議와 「정부독점적 정책」추진으로 말미암아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통일문제를 政權安保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과 不信을 자아냈다는 批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統一의 名分을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기본자세에 있어서 진실성을 상실했다고 지탄받아도 마땅하다. 지난간 40여년의 한국정치사를 회고할 때, 우리는 두가지 경우를 두고 통일문제를 정치에 이용했다는 비판에 접하게 된다.

첫번째 사례는 이승만 대통령의 武力北進統一論이다. 이승만은 그의 복진통일론의 환상적이며 실현불가능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家父長的 獨裁의 지속을 위해서 武力北進統一政策 등과 反共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국내정치세력을 거세·탄압하는데 이용했다는 비판이다.

두번째 사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명분으로 「維新體制」를 수립함으로써 長期執權陰謀에 통일문제를 이용했다는 비판이다.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이후 南의 「維新體制」의 출범과 北의 「사회주의헌법」의 개정공포에 따른 金日成唯一體制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결국 통일과 남북대화를 명분으로 「장기집권시나리오」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의 의구심이 발생한 것이다.

통일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誘引要因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그것

은 政權의 民主的 正統性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허약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정통성의 기반약화를 통일문제의 독점적 전개로서 보완하려는 시도가 政策立案과 실행과정에서 나타났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統治權의 행사」주장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용공조작사건」주장, 그리고 북한정보의 독점등에 대한 비판들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對政府 불신·비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民主的 正統性을 부여받은 제6공화국정부는 정통성의 是非라는 무거운 부담으로 부터 벗어난 合法的 정부로서, 통일문제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發想 자체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민족의 장래, 국민의 死活과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통일문제를 결코 정부 독점이나 密室 政策決定에 의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표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國會와 與·野지도자, 學界·斯界의 통일문제 전문가, 각계각층 대표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초당적·범국민적 통일정책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統一政策수립 발표과정에 있어서는 이미 대통령이 공명한 바와 같이 국회, 여·야, 국민의 지혜와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野黨도 統一問題를 政黨次元의 利益에 利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으며, 우리 국민들도 “나는 민족통일을 부르짖으니까 節次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통일문제를 다른 목적에 利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政府는 앞으로 한편으로는 착실하게 정치의 民主化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실되고 겸손한 자세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바라는대로 실천해 나갈 때에 국민의 절대지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政權安保」나 政派利益을 위한 統一問題의 이용이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發想과 試圖가 더 이상 통일을 향한 한국정치사의 前途에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다같이 警戒해야 할 것이다.

20. 「6·25」同族相殘이 통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戰爭責任문제에서 「南侵·北侵論」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6·25」同族相殘은 분단의 悲劇과 苦痛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민족을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뜨린 엄청난 또하나의 悲劇을 가져왔다. 수백만명의 인명살육과 국토의 폐허화, 1천만이산가족과 전쟁고아와 미망인, 그리고 休戰線의 장벽과 모든 것의 단절, 침예화된 군사적 대치상태와 증오·不信·적대감의 팽배등 戰爭으로 말미암은 온갖 비극과 不幸은 민족분단을 심화시킴으로써 민족사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다.

北韓共產集團의 남침도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道程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서 현재까지도 민족화합과 민족적 신뢰회복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은 반민족적 罪行에 대해 민족과 역사앞에 사죄하거나 反省의 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暴力·武力에 의한 赤化統一路線을 고수하고 있으며, 적반하장격으로 이른바 「北侵論」을 날조·주장하거나 고무·선동함으로써 우리側에 전쟁의 責任을 전가해 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道程에 있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6·25南侵挑發의 역사적 사실은 계속 재확인되고 후손들에게 알려야 한다. 북한측이 민족적 양심에 돌아올 때 그 죄행은 용서할 수 있으나, 역사적 사실 자체를 지워버리거나 망각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南侵論」主張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전통주의학과 중심)

전통주의자들은 한국전쟁의 起源을 스탈린의 「侵略的帝國主義」에서 찾고 있는데, ① 유럽에서의 美國의 對蘇군사적 압력을 극동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한국전쟁을 사주했다는 「壓力分散說」 ② 美國의 對日單獨平和條約을 체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美·日條約견제설」 ③ 駐韓美軍완전철수 및 美國의 극동방위선

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에치슨 宣言」(1950년 1월)을 기화로 도발했다는 「虛點攻擊說」④ 「美國의 抵抗決意 實驗說」⑤ 中國赤화에 이은 아시아 共產化를 위한 「武力示威說」⑥ 「美·中共對決誘導說」 또는 「中共의 自己消耗誘導說」⑦ 소련의 「不凍港追求說」등 다양한 논증들이 展開되었다.

여러 分析資料들을 綜合해 볼 때, 한가지 명백한 점은 한국전쟁도발직전의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소련의 統制는 政治·經濟·軍事的 方面에서 거의 완벽했다는 사실이다.

이 點은 특히 1974년말에 공개된 美 CIA각서 「北韓政權의 現勢」(1950. 6.19字)와 1981년 모스크바에서 출판된 「소련과 인민조선과의 관계」(자료집)등을 볼 때, 소련은 최소한 북한의 南侵計劃을 정확하게 認知하고 있었음은 확실한 것이다.

또한 1970년에 간행된 「흐루시초프 回顧錄」의 證言이 南侵陰謀를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의 證言에 의하면, 1949년말 金日成은 모스크바로 스탈린을 찾아가 南侵計劃을 설명하고 스탈린의 동의를 얻고자 했으며, 김일성은 “남조선을 총점으로 찌르기만 하면 남조선에서의 폭발을 촉진시켜 인민의 권력, 즉 북조선의 통치권력이 승리할 것”을 장담했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스탈린의 신중한 계획수립중용을 받고 金은 새 계획을 수립, 모스크바를 재차 찾았으며, 美國의 개입을 우려했으나 速戰速決로 전쟁이 끝난다면 미국의 개입을 회피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스탈린의 제의로 毛澤東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는 “金日成의 제안에 동의하고 이 전쟁은 조선인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국전쟁안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註 : Khrushchev Remembers, with an Introduction, Commentary and Notes by Edward Crankshaw Translated and Edited by Strobe Talbott(Boston, Little Brown & Co., 1970 , pp.367-369)

北韓의 南侵에 관한 共產圈 刊行 자료중 중요한 것을 두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고슬라비아 學術院(大百科辭典, 1978, 第4卷, p.555)

“한국전쟁은 1950. 6.25 북한군대가 38선을 넘어 먼저 南侵함으로써 발발되었다.”

② 中國語版(『브리태니카 大百科辭典』, 1986)

“6·25전쟁은 北方軍이 不時에 南進하여 일어났다.”

이처럼 韓國戰爭案이 확정되면서 소련의 對北韓軍事支援이 활발해졌으며, 소련은 1948년 12월 철군후에 1949년 1월 평양에 소련특별군사사절단을 파견하여 북한군의 현대화를 추진했다. 1949년부터 1950년 6월 南侵직 전까지 정찰기 10대, 야크전투기 100대, 폭격기 70대, T-34형 전차 100대, 重砲 상당수를 지원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소련의 군사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1950년 6월 현재 13만 5천명의 지상군을 확보하고 남한과의 접경지대에 정예부대 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美陸軍省 자료)

한편, 몇가지 「北侵論」주장의 내용을 살펴 보자.(修正主義者들의 見解)

修正主義者들의 論據는 I.F.Stone,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1952)” 韓國戰爭祕史”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美國과 韓國의 共謀가능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주장인 즉, “이승만정권이 국내정치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었으므로 국내 정치 위기 해소를 위해 한국정쟁을 도발코자 했다”는 것이다. 또한, “맥아더장군의 「아시아 優先主義」가 결국 이승만, 蔣介石, 덜레스와 共謀하여 한국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트루만行政府의 유럽優先主義의 대외정책을 역전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빙성있는 자료제시가 없으며, 대부분이 단편적인 신문보도와 추측에 바탕을 두고 있다. 「스톤」의 저술이후 修正主義者들의 논리는 여러각도로 전개되었다. 즉 ① 南北韓軍備競爭이 한국전쟁의 발발을 가져왔다는 主張

② 李承晩政權의 「武力北進統一論」이 북한의 대남도발을 촉진시켰다는 주장 ③ 미국의 對南韓 군사공약의 강화가 북한을 자극했다는 주장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명백한 증거와 논증으로 확인되고 있듯이 北韓의 南侵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南侵은 先制奇襲의 이고 전면적이었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었다.

이 점은 北韓의 民族保衛省이 각 사단에 하달한 정찰명령 제1호(1950. 6.18자)와 소련군사고문단이 民族保衛省에 명하여 각 사단에 하달한 전투명령 제1호(1950. 6.22자)에 의해 명백히 立證되고 있다.

비교적 修正主義學派에 가까운 美國의 Frank Baldwin박사도 北韓이 주장하는 「北侵論」을 否認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로서 金日成批判을 위해 「北朝鮮王朝成立秘史」를 쓴 林隱 역시 흐루시초프回顧錄의 證言과 같이 “6.25動亂의 放火者는 곧 金日成”이라고 斷定하고 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시 되었던 史實도 기록과 증언을 덮어둔채 확인하지 아니하면, 날조된 주장의 반복 선전으로 설명과 眞僞확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때가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平和統一을 위한 大長征에 있어서 후계세대들에게 필히 역사적 사실로써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항목중의 하나가 한국전쟁사라고 할 것이다.

21. 남북한 관계가 어느단계에 가야 우리사회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許容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산당의 조직과 그 활동을 허용하는나 불허하느냐 하는 문제는 南北韓 平和關係의 양상과 共產黨의 성격 여하에 좌우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國體를 보존한다는 전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自由民主體制의 다양성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自由와 平等이 보장되며,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며, 민족, 민주, 자유, 복지를 理想으로 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 미묘할 수 밖에 없다.

남북한간의 平和共存과 交流·協力 關係는 북한의 내부 정치경제의 변화와 對南觀의 수정을 전제로 한다. 이는 상호 內政不干涉이 제도화된 상태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단순히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고 對決關係가 清算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산당의 활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條件이 최소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 쌍방이 그 어떤 思想·理念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이 허용되고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相互主義 원칙이 무시된 일방적 요구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사회적·법률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南北韓 쌍방이 다같이 이러한 條件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어떤 이념적 정당도 상대방의 體制를 부인해서도 안되며, 더욱이 상대체제를 부인하고 전복하려는 목표나 교리를 내포하고 있어도 안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면 현 남북한 정당은 다같이 상대편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당으로써 인정을 받아야 하고 상대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法的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게 탄압받거나 통제 받아서도 안된다. 정당의 조직이나 활동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남북한이 民族共同體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이 보장될 때 정치적 공동체 형성, 政治的 統合도 가능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民主와 統一」은 모든 政派와 個人이 헌법에 보장된 제반권리를 행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시장경제의 테두리안에서 법에 따라 모두 평등하게 경쟁하는 상태 등 보편적 개념의 민주가 아니라,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상태를 「민주」내지는 「통일」로 보고 있다. 아무리 공산당의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었다 하여도 그들은 민주화나 통일이 실현되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평화공존과 交流가 있다하여도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산당은 소위 人民政權이 수립될 때까지 「민주와 통일」이란 슬로건을 내걸을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는 “김일성의 절대적 무오류성”, “북반부 사회주의 제도의 절대적 우월성”이라는 두가지 神話에 의하여 지탱해 왔다. 이것이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 요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평화공존 관계, 진정한 교류·협력의 관계가 남북간에 형성된다면 한반도에서 戰爭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아니라, 북한의 對南共產化 革命의 위험도 소멸한 상태가 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平和共存의 제도적 장치가 공고해 지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우리 한국의 정당과 북한의 「조선로동당」의 활동 범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고, 우리도 좌익정당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조치

와 규정의 제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政治體制의 조정도 어디까지나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로동당」이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려면 북한은 실질적인 多黨制를 채택해야 하며 우리의 정당이 북한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 우리는 西歐의 공산당과 같이 暴力革命에 의한 정권탈취를 포기하고 의회민주주의, 複數政黨制에 의한 정권교체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용하는 공산당이나 좌익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허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民族共同體가 공고히 발전되어 정치공동체로 이행될 단계에서는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하느냐, 않느냐하는 사항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시점에는 「조선로동당」도 불가피하게 변질되어 있을 것이고 남북한의 모든 민족성원이 양 체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아무리 공산당 활동을 허용한다 하여도 그 이념과 체제의 허점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의 對南共產化 革命을 저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산화 혁명전략을 완전 포기시킨 후, 평화공존관계와 교류·협력을 실시한다면 남북간에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포함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2. 분단 장기화에 따른 民族異質化 현황과 그 해소책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재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課題들이 있다. 그 하나는 분단에서 오는 유형 무형의 고통과 불행을 제거하고, 제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한반도에 平和를 정착하는 문제,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斷絶된 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나타나는 民族一體性的의 弱化現象을 방지하기 위한 民族異質化의 극복문제이다. 이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상이한 理念과 體制를 극복하여 政治的, 體制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면 외형상의 政治的 통일에 앞서 민족적 信賴를 회복하고, 相互 交流·協力하여 민족적 同質性和一體性的의 회복이 요구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의 단계를 설정한 취지의 하나도 남북간 이질화를 해소하자는 데에 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외형상의 體制的 統一은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정치적 통일을 강행한다 하여도 민족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심각한 民族分裂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의 이질화는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自然的 이질화 현상」도 있지만 북한공산집단이 共產化 革命을 위해 인위적으로 진행시킨 「人爲的 이질화 현상」도 있다.

여기서 통일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인위적인 異質化 政策인 것이다. 북한공산집단은 傳統文化의 말살, 民族史의 왜곡 날조, 言語의 변조 등 민족의 固有性을 훼손시키면서 “공산주의 새 人間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人間改造 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들은 완전 폐쇄된 사회에서 “은 社會의 주체사상화”란 구호아래 주민을 조직화하고 政治教化를 시키면서 社會主義的 民族을 따로 형성하려고 기도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民族成員間에는 같은 민족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民族共同體 意識은 사라져 가고, 상이한 가치관, 서로 다른 思考方式과 行動樣態

를 보이는 데에까지 이르렀으며, 민족의 근본바탕인 언어, 역사, 전통문화를 共有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

남북이질화의 현상이 북한사회의 폐쇄성에서 연유하기에 그 극복을 위해서는 북한이 문을 열고 남북간 단절의 벽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사회를 開放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가운데 理解와 신뢰를 구축하여 나가는 것이 더 이상의 이질화를 막으며 이를 서서히 解消하여 同質性을 회복하는 첩경이다. 즉 民族一體性 회복은 民族의 生存을 위협하고 있는 緊張을 緩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바탕위에서 남북한의 社會開放과 交流協力을 통한 민족의 共同繁榮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政府는 일찍부터 制度的인 보장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20개 示範實踐事業」도 提議한 바 있으며, 특히 대통령의 「7·7 특별선언」을 비롯한 對北提議에서 民族의 共榮과 民族異質化 해소를 위한 實踐方案을 제시하고, 北韓產 物品의 자유반입과 학술·문화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실천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사회공동체,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이 남북한 동질화의 첩경이다.

남북한의 同質化 전개방향을 보다 심도있게 진단하는데에는 인류문화사의 發展·展開過程에서 시사받는 점이 많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발전에서 서로 相異한 문화적 요소가 조우하게 될 때, 보다 보편성이 있고 우수한 문화요소에 다른 문화가 흡수 統合되어 왔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民族史의 측면에서 보다 正統性이 있고, 世界史的 측면에서 보다 普遍性이 있다면 북한동포들이 우리 민족성을 회복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기나긴 민족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의 分斷史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또한 거시적으로 본다면 남북한은 방법은 다르지만 각기 근대화 과정을 거치어 產業社會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라는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단절된 상태에 있다하여도 의식상 상호 共感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남북한에 사는 민족성원은 같은 時代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호 共通要素도 갖고 있다. 이 공통요소를 발굴하여 증폭시키는 것이 바로 민족동질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북한공산집단이 아무리 세뇌교육에 의한 민족이질화 정책을 추구한다 하여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재의 이질화 상태는 민족의 再結合이 불가능하도록 진척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남북한이 비록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여 斷絶된 세월을 보냈다하여도 한국인의 피에 조상 전래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심층적인 무의식과 고유한 사고체계, 基層文化까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血緣이란 민족의식과, 유교나 불교문화의 영향요소(물론 이를 북한에서는 봉건적 잔재라고 하고 있음)는 쉽게 퇴색치 않을 것이다. 이것은 民族一體性を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다. 敵對感이나 不信, 反目과 함께 남북한의 이질화현상은 共存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결국은 해소될 수 밖에 없는 표피적인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민족이질화로 인해 남북한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23. 서독이 제시한 「獨逸統一 10個項」이란 무엇인가?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콜수상이 의회에서 발표한 「독일통일 10개항」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정치적으로는 「聯邦制」, 경제적으로는 「契約共同社會」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콜首相의 통일방안은 제1단계로 동독에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고, 제2단계로 國家聯合형태의 구조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제3단계에서 완전한 연방제 또는 연방질서하의 再統一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2단계에서는 경제·환경·교통·문화·범죄예방을 위한 「共同委員會」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독은 동독에 대해 인도적 분야와 의료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② 서독은 동서독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동독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③ 만일 동독의 정치·경제체제에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 진다면 對東獨支援과 協力을 확대할 것이다.(이것은 동독의 憲法改正, 自由·平等·秘密·普通選舉를 보장하는 選舉法改正, 공산당의 權力獨占終熄을 의미한다.)

④ 서독은 동독의 한스·모드로首相이 제안한 合同機構로서 「契約共同社會」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서독은 이 「契約共同社會」가 경제, 수송, 환경보호, 과학, 보건, 문화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⑤ 聯邦制 창설을 목표로 동서독간 「聯合構造」를 형성한다.(서독은 동독의 合法的 民主政府를 전제로 동서독간 정치, 협력, 협의를 위한 「合同政府委員會」의 구성을 전망하고 있다.)

⑥ 동서독간 관계발전은 전체적인 구주통합 및 동서관계의 구조속에서 진행시킨다.

⑦ 구주공동체(EC)의 계속적 강화와 그 틀안에서 독일재통일을 조망

한다.(콜首相은 “우리는 독일의 統一過程을 유럽문제의 하나로서 고려한다. 구주 공동체(EC)는 민주적인 동독과 중부 및 동남부의 민주적 구주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EC의 국경은 2개의 독일국경을 흐르는 엘베강에서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⑧ 「歐洲安保協力會議(CSCE)」는 전체 구주설계의 핵심으로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

⑨ 軍縮은 계속 되어야 한다.

⑩ 서독 정부는 구주에서의 「평화로운 환경」 창조를 원하며 그 속에서 독일인들의 自決을 통하여 統一이 실현되기를 원한다.(콜首相은 “독일의 통일은 「單一獨逸統一國家」로의 복귀이며, 이는 聯邦政府의 정치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분단된 독일의 再統一問題는 미·소는 물론 구주의 주변국가들의 利害關係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제까지 먼 훗날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후, 연일 수 십만명을 이룬 동독 국민들까지 統一口號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동독정권 자신마저 피하기 힘든 현실로 統一問題가 대두되었다.

동독은 社會主義國家로의 존속과 발전을 고집하고 있지만, 1990년 중반에 실시되는 동독 自由總選舉의 결과에 따라 共產黨支配의 政治構造를 변혁시킬 非共產圈 정당의 득세와 더불어 獨逸統一에 방향으로 대세가 기울어질 가능성마저 예측되는 상황을 맞게되었다.

그러므로 동독은 더 이상 獨逸統一問題를 반대할 수 만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콜首相이 제의한 「獨逸統一 10個項」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을 끈다.

서독의 통일방안은 독일의 재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동독정권을 통일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특히 통일된 독일의 位相을 두려워하는 소련 등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W

TO)」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두 同盟體制의 會員國位置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과 「구주통합」과 같은 구주의 새 질서 再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독일의 재통일 노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두 개의 독일은 상호 현실인정에 인색치 않고, 현실의 인정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상호방문, 居住移轉의 自由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통일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콜首相이 제의한 國家聯合體制와 경제협력방안은 주목을 끌고 있다.

둘째, 獨逸民族에 대한 두 독일국민들의 민족적 자각이다.

동서독 국민들은 분단상태에서도 서로 相扶相助하고 인내하면서 「국민적인 힘」을 축적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재통일을 외치고 있다.

이와같은 「국민적인 힘」은 어떠한 外勢도 막을 수 없다는 眞理를 우리는 오늘의 독일에서 보고있다.

24. 한국과 독일 통일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

① 강대국에 의한 強制分斷

○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강제분단되었다.

○ 독일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4대강국에 의하여 독일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분단되었다.

이와같이 한국과 독일은 그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더불어 강국대국들에 의하여 강제분단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② 이데올로기의 對峙狀況

○ 한반도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自由民主主義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大韓民國(Republic of Korea)」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1948년 9월 9일 공산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남북한은 이데올로기상의 對峙狀況에 놓이게 되었다.

○ 독일은 서독에 1949년 9월 7일 자유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獨逸聯邦共和國(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부가 수립되었고, 동독에 1949년 10월 7일 공산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獨逸民主共和國(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동서독은 이데올로기의 대치상황으로 분단되었다.

이와같이 한국과 독일은 南北으로, 東西로 다 같이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로 사상과 이념이 대립되는 양상으로 대치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 주변4강의 影響力

○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미국·일본·중국·소련등의 주변4강에게 외교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국제권력과 정치세력의 균형을 깨지않는 조화있는 통일노력을 하면서 점차 民族自決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

○ 독일의 통일문제는 미국·영국·프랑스·소련등 주변4강의 영향력권 내에 있는 문제로서 그 강대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과 독일은 그 분단극복이 단순한 민족내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強制分斷을 초래한 강대국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④ 統一不實現의 현상

○ 한국은 분단이후, 45년이 지나오는 동안 통일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 독일은 분단이후, 「東西獨 基本條約」의 체결로 상호간 신뢰회복과 交流協力을 도모하여 相扶相助하고 있으나,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과 독일은 다 같이 統一實現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지속해 왔으나 아직도 統一을 이루지 못한 分斷國家라는 現實狀況에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

① 統一의 歷史

○ 한국은 역사적으로 1300년에 이르는 오랜동안 單一民族으로서의 생활문화권과 통일국가를 계승발전시켜 왔다. 즉, 668년 新羅의 3국통일로부터 1945년 분단될 때 까지 무려 1300년간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다.

○ 독일은 통일의 역사가 불과 75년 밖에 되지 않는다. 즉 1871년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을 통합한 獨逸帝國의 성립으로 독일통일을 실현한

시기로 부터 1945년 분단될 때 까지 75년간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다.

② 分斷의 經緯

○ 한반도의 분단은 카이로·테헤란·알타·포츠담등 강대국회담에서 일본의 항복이전에 논의된 바 없었다. 38도선 남북분단은 1945년 8월 11일 일본군의 항복접수를 위한 군사적인 편의에 따라 미·소 양국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敗戰國에 대한 응징조치가 아니었으며, 더구나 한민족의 세력약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

○ 독일의 분단은 戰時에 소집된 강대국회담(알타·포츠담회담)에서 이미 합의되었다. 이 합의내용에 따라 동프로이센을 소련과 폴란드에게 병합시키고, 전국토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오데르·나이세강」以東地域의 국토를 폴란드에 병합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전국토와 베를린을 4分割시켜 「4大國 占領地域」으로 分割占領하게 되었다.

독일의 분단은 한국의 분단에 비하여 더욱 비참했고 잔인했던 것이다. 이는 敗戰國에 대한 철저한 보복과 응징조치였으며, 게르만민족의 세력약화를 위한 계획적인 措置였다.

③ 周邊情勢

○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미국·일본·중국·소련등 4強體制의 角逐場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東西陣營의 세력균형이 유동적이며 군사적 대결에 의한 局地戰의 위험이 尙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中·蘇間에는 國交關係가 수립되지 않았고, 그들 양국은 한국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북한도 美·日 양국과는 국교관계가 없는 상태이다.

○ 독일은 서독이 NATO에 가입했고, 동독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東西陣營의 국제적 방위체제의 대결로 맞서게 되었다. 東西陣營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한 독일은 국지전의 위험은 없다. 서독은 1970년 소련과

「獨·蘇不可侵條約」, 폴란드와 「獨·波友好條約」을 체결하여 共產諸國과 國交關係를 정상화 했다.

그러나 주변4강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독일의 통일을 「새로운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바라지 않고 있다.

④ 對決狀況

○ 한반도는 북한이 불법남침한 6·25動亂으로 말미암아 南北韓間에는 침예화된 무력대결의 상태로 계속 대치해 있어서 긴장감이 尙存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 걸친 南北會談이 진행되고 있으나, 相互交流와 協力の 길이 트이지 않고 있다.

○ 독일은 분단이후 同族相殘의 전면전쟁이 없었다. 그리고 武裝共匪의 도발과 테러도 일체 없었다.

1972년 「東西獨 基本條約」의 체결이후, 다방면적인 交流協力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상부상조하면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 왔다.

25. 獨逸과 中國의 통일접근방안은 무엇인가?

〈東西獨의 統一問題〉

동서독은 분단 45년을 지나오는 동안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로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여 다방면적 교류협력을 증진해 왔으나, 남북한처럼 각기 뚜렷한 통일방안을 내 놓지 않았다. 서독의 입장은 동독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에게 자유의 물결이 스며들게 하여 “人間다운 삶의 質”을 높히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1969년 빌리·브란트首相의 「東方政策」으로 처음 동독을 승인함으로써 「1民族 2國家」라는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였다.

서독은 「東西獨 基本條約」을 잠정적인 협정으로 보고, 재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분단고통을 완화시키는 방도로 여겼다. 즉, 「동서독 기본조약」은 중단기적 시점에서 자유왕래, 상부상조, 공동번영, 장기적 관점에서 獨逸統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自決權의 확대, 동서진영 및 동서독간의 긴장완화의 수단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分斷은 있으나 고통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방면적 교류협력의 활발한 추진은 통일국가를 방불케 하였다.

또한 빌리·브란트의 말처럼 “歐洲의 통합없이 東西獨의 통일없다”는 인식아래 “통일은 역사의 과제로 유보하고 실현가능한 교류협력을 증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독은 “독일민족은 하나다”라는 기본원칙의 「독일정책」을 내 세워 “더 큰 自由, 더 높은 人權保障, 더 質 좋은 삶의 추구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분야의 지원으로 독일민족 공동번영을 위해 헌신노력 하겠다”는 「對東獨政策」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

한편 동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이후, 동서독은 「2民族 2國家」임을 강조했다. 즉, “실제로 독일내에는 「社會主義의 민족」과 「資本主義의

민족』이라는 서로 상이한 두 민족이 생겼고, 이들은 서로 統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동독의 입장은 全獨逸공산화통일만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당장 그러한 통일정책을 표명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하고 교류협력에 의한 실리추구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같이 동서독은 상호간 처지와 목적은 달랐지만 「對決의 시대」로부터 「交流協力の 시대」로 兩獨關係를 일대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평화정착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그후, 1973년에 동서독은 함께 UN에 加入하여 국제무대에서 동등한 地位를 확보하게 되었다.

1989년에 공산권의 변화와 改革과 開放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자 동독에도 민주화 개혁의 물결이 몰아 닥쳤다.

동독공산당정권은 국민들의 전국적으로 확산된 개혁요구의 시위에 시달려 결국 호네커가 물러나고 권력의 중추인 동독공산당 정치국의 전면개편과 베를린장벽 및 국경개방, 大聯政編成(27개장관중 11개장관을 비공산당원 임명), 서독인에게 국경 및 베를린 자유통행허가등 대폭적인 개혁조치를 속속 단행하였다.

그러나 밑으로부터 증폭되는 동독의 개혁요구는 多黨制導入, 자유선거 실시, 언론자유보장등 근본적으로 體制變革 또는 共產主義의 포기 수준에 올라섰다. 드디어 동독공산당지도부는 크렌츠書記長의 國家元首職 사퇴까지 감수하는 전원퇴진의 최후단계에 이르렀고, 호네커前서기장을 연금 하기에 이르렀다.

東獨의 國家評議會議長에 비공산당원이 취임했고,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자유총선거에서 공산당이 패배하고 비공산당정권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한스·모드로首相은 1989년 12월 19일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서독의 콜首相과 兩獨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앞두고 동독

국민들은 “獨逸再統一問題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시위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서독의 콜首相이 제의한 「獨逸統一 10個項」(24問項參照)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지금의 동서독관계는 양독국민들이 상호간 자유왕래를 할 수 있고, 서독의 화폐가 동독에서 통용될 수 있으며, 서독의 경제지원이 가능해진 상태(사실상 經濟統合된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독의 통일문제는 주변국가들의 利害關係와 직결된 문제로서, 동서진영의 영향력 있는 강대국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주시해야 하며, 성급한 속단은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中國·臺灣의 統一問題〉

중국과 대만의 統一政策은 “臺灣을 흡수통합하여 기어코 統一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입장과 “「1國家 2制度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만의 입장이 맞물려 있어서 통일실현의 전망은 難測하다.

중국의 統一政策은 1981년 9월 30일 全人代常委長 葉劍英이 발표한 「平和統一 9個方案」에 근거한 「1國家 2制度 통일방안」이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3通4流(3通→通郵·通商·通船, 4流→經濟·文化·體育·科學交流)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의 제의를 즉각 거부했다. 이 제안은 「제3차 國共合作」을 위한 僞計이며, 「홍콩返還協定式」 통합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속셈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중국은 1951년 5월 23일 중국·티베트협상에서 이른바 「1國家 2制度論」을 적용한 바 있었으며, 그 후 1959년 「티베트民主改革」을 단행하여 강제통합시켰으며, 달라이·라마를 印度로 강제추방시켰던 사례를 想起하여 「1國家 2制度案」으로 위장된 「平和統一政策」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不政策(不接觸·不妥協·不協商)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대만의 統一政策은 「3民主義에 의한 統一方案」이다. 즉 3民主義를

통한 새로운 中國建設, 反共報國의 行動綱領實踐, 대만건설경험에 의한 대륙재건을 주요내용으로 한 統一政策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人的·物的交流가 증대되고 있고, 共產圈의 변화의 물결에 따라 점차 중국도 改革과 開放의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天安門事態 以後 鄧小平의 퇴진과 더불어 새로운 권력구조의 정비로 상당한 시간은 걸리겠지만 역사발전의 자연스러운 귀결에 순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대만도 “3不에서 3和(平和共存·平和競爭·平和統一)로” 현실적인 교류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고, 새로이 「大陸接觸法」을 草案하여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통일문제는 가까운 시일내에 통일실현을 전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이 東歐共產諸國과 같이 民主化, 改革, 開放이 실현된다면 통일문제는 급진전될 전망을 배제할 수 없다.

Ⅱ

남 북 대 화

26. 남북대화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남북으로 分斷된 조국과 민족을 자주적·평화적으로 統一하는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수단방법은, 한반도의 주역인 남북한 당사자가 상호인정의 바탕 위에 대등한 입장에서 마주 앉아 相互主義 정신으로 민족의 懸案問題를 함께 풀어나가고, 통일조국을 더불어 설계·건설해 나가는 남북대화 밖에 없다. 더욱이 오늘날의 우리 統一環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는 통일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변4강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남북한간의 直接對話로 한반도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만큼 개선되었다. 이는 한반도문제가 분단의 유형면에서나 UN의 연례적 현안문제였던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듯이 원래는 국제문제였으나, 그동안 우리의 主體的 역량이 신장되는 한편 국제적 지배질서도 多極化·國益優先化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통일문제가 차츰 민족내부문제화되고, 우리민족의 自決領域이 차츰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분단 26년만에 남북적십자회담으로 남북대화의 문이 열린 이래, 남북조절위원회의, 체육회담,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경제회담,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등 몇 가닥의 남북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지만, 남북한간의 실질관계 개선이나 회담 본연의 생산적 성과를 거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는 남북대화에 임하는 남북한의 입장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른 데 기인한다고 피상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는 南北對話를 호혜적 협상과 타협으로 民族의 현안문제를 平和的으로 해결하는 기본수단으로 보느냐, 상대방의 體制를 전복하고 革命을 부추기는 정치선전장으로 보느냐 하는 대화의 본질문제, 대화의 眞僞문제와 연관된다.

물론, 지난날 남북대화에 임한 쌍방의 기본입장의 차이는, 논리적으로는 “先 平和, 後 統一”을 지향한 우리 통일정책의 기초와, “남조선 혁명이 곧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전략에서 연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나 회담은 호혜·타협의 바탕 위에서 협상하는 協同의 場이지, 결코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한 鬭爭의 場은 아니다.

아 물론, 우리는 남북대화와 접촉의 폭을 넓혀 對決과 斷絶에서 비롯된 민족적 信賴를 회복하고,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에 平和를 定着시키며,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和合과 共同繁榮을 실현시킬 뿐 아니라 통일조국을 함께 설계하려는 호혜·평등의 입장인 데 반해, 북한측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부추기고 우리 체제를 비방 선전하고 교란하는 혁명전술로 삼겠다는 자세를 드러냈다.

북한측이 그동안 모든 남북대화에서 회담의 성격이나 主題에 관계없이, 反共政策의 폐지, 駐韓美軍의 철수, 反共政權의 퇴진,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을 “남조선사회의 자주화·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前提條件化하고 政治宣傳의 場으로 만들려고 한 것도 남북대화를 정치적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그들의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가령, 南北赤十字會談에서는 쌍방이 미리 합의한 대로 ① 이산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 통보하고, ② 그들의 상호방문을 실현시키며 ③ 그들 간의 편지를 주고 받게 하고 ④ 희망에 따라 재결합을 시키고 ⑤ 그밖에 인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血肉間 離散의 아픔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른바 ‘조진·환경개선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적십자회담과는 관계도 없는 駐韓美軍 철수와 반공정책 및 법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회담을 중단시켰다. 그후 1989년 재개된 적십자회담(실무대표접촉)과 2차 고향방문단 교환문제는 갖은 난관끝에 교환방문 규모와 日字까지 합의하였으나 사회개방과 교환방문 실현을 기피하는 북한측은 쌍방이 이미 합의한 공연물 선정원칙을 무시하고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꾸며놓은 혁명가극(피바다)을 들고나와 이를 무기연기케 만들었다.

南北經濟會談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역과 협력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하면 된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조선 실업자 구제’나 ‘경제적

합작'만을 선전하다가, 미리 의견접근을 본 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이나 교역통로 개설(경의선 철도 연결 및 교역항 지정)문제등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된 회담까지 중단시켰다.

'90년 북경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은 선수단명칭, 團旗, 團歌등에 合意하는등 북한측의 정치적 수요와 입장을 우리가 수용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에 쌍방의 異見이 드러나, 북한측의 진의와 촉박한 시일을 고려할 때 그 실현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國會會談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구다운 정치문제를 다루면 된다. 統一祖國의 未來像이라든지 남북한의 정치체제적 對決의 해소방안같은 것도 협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쌍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행정부 당국간 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군사문제를 들고 나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만 하자면서, 여기에 정당·사회단체 대표와 각계 개별 인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거나,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의제로 제시하는 등 억지주장을 하였다.

1989년 2월부터 시작된 남북 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은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및 密入北者 석방 등 회담외적 문제를 이유로 지연시켜가며 정치선전을 하였고, 회담의 명칭, 대표단구성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議題 등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대화자세는 근본적으로는 북한측이 평화와 평화적 統一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고 몇 가닥의 대화에 호응하는 시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안팎의 사정 때문일 뿐, 남북대화를 통한 실질관계 개선, 민족적 同質性 회복, 민족의 화합 등 평화적 통일에는 뜻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對南革命路線에 변화가 없는 한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남북대화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입장을 얼핏 보면 우리는 平和共存지향적인데 북한은 統一 지향적인 것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논리가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것은 곧 드러난다. 적십자회담에서 통일만 되면 이산가족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전한다. 그렇다면 통일회담, 정치회담에나 나와야지 적십자회담에 나와 의제까지 합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주’를 내세우지만 남북 頂上會談이나 당국대표간회담을 거부하는 북한측이 미국과의 3자회담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민족대단결’을 표방하지만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10대 시정방침’을 보면, 연방제로 통일된 뒤에나 경제교류·협력도 하고 사회개방도 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宣傳面에 치중한 대화 부정적 입장과 자세는 대남 혁명전략이라는 教條的 기본노선의 문제도 있지만 東歐의 급격한 變革에 직면하여 ‘地上樂園’의 虛像이 노출되고 외부의 충격이 두려운 체제내부 사정에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7.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 '민주', '민족', '평화'는 우리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共產主義者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말은 우리와 같은것이라도, 그것이 政治的 용어인 경우에는 뜻과 概念이 우리와 달라서 그 표현과 형식은 같지만 다른 內容을 포함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意圖的으로 언어를 교란전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언어의 二重戰術이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言語를 흥기와 같이 투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표현, 전달하려는 이미지에 현혹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人民'이라는 단어를 기본용어로서 즐겨사용한다. 이들이 말하는 인민은 우리가 사용하는 「國民」이나 「民衆」과는 다른 특별한 政治的 의미를 부여한 단어이다. 자유세계에서 國民이라면 어떤 階級이나 階層을 막론하고 한 국가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이란 용어대신 '人民'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인민이란 착취를 받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규정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산당에 동조하는 사람에 국한시켜 그 개념을 적용한다. 따라서 人民이란 「총체적 개념」이 아닌 「계급적 개념」인 것이다. 요는 共產革命의 主動者와 그 혁명활동에 同調할 수 있는 계급을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은 「인민」을 공산화혁명의 戰略的 견지에서 규정하고, 이것이 統一戰線形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계급적 개념이기 때문에 공산화혁명 추진 단계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는 가변적 개념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 혹은 '민주주의'는 '인민', 즉 공산혁명을 지지·찬동하는 집단을 본위로 하는 정치방식이나 사회조직원리를 뜻하는 개념이다. 즉 個人의 존재는 부인되며 階序的 조직이나 集團에 의한

‘人民’에 대한 지도관리를 말한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민주에는 인민이라는 但書가 앞이나 뒤에 붙어다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와 같은 自由民主主義體制에서의 민주주의는 우선 개개인의 권리를 전제로하여 성립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북한은 자유민주체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 규정하고, 이런 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의 민주주의」라고 매도한다. 그러면서 인민민주주의 혹은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이를 ‘피착취 계급’의 민주주의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黨의 조직등 모든 정치기관의 운영관리를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원칙에 따른다고 한다. 이 경우의 민주주의 역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이기에 집단주의원리에 입각하며, 결과적으로는 중앙집권제라는 내용을 수식하는 수사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사용하는 민주 혹은 인민민주주의는 개인의 人權이나 自由平等을 내용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民族」이란 용어를 즐겨 쓰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共產化統一의 전략·전술적 次元의 용어혼란전술로 볼 수 있다. 그들은 對南提議나 남북회담석상에서 민족이란 용어를 항상 강조하며 그 사용 빈도는 우리보다 많다. 북한공산집단은 6·25동란을 ‘민족해방전쟁’이라 부르며, 1970년까지는 소위 ‘남조선 혁명’을 「反帝·反封建 민족해방」이라 규정, 민족해방을 계급혁명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피압박 민족’의 解放을 지지하고 민족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듯 선전하나 「民族主義」 그 자체는 본질에 있어 부르주아적이고, 과도적이며 반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 언제나 「民族」보다는 「國際主義」를 앞세운다. 스탈린은 “민족이란 資本主義時代의 산물로서 資本主義의 타도와 함께 소멸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원래 민족이란 혈연, 地緣과 같은 自然的 共通性的 기초위에 언어, 전통, 풍습, 종교와 같은 文化的 共通성을 갖는 運命共同體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그 결과 특정한 민족의식, 민족성, 민족정신을 共有하는 인류의 역사적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의 공산화혁명을 계급혁명의 일환으로 보는 등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신봉하면서 ‘민족’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共產化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그 하나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에 주요 장애물로 보고 있는 駐韓美軍의 철수, 미국의 對韓 安保支援 중단등을 목표로 한 反美鬭爭을 선동고취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내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반체제·반정부운동을 전개하는 세력을 포용하여 聯共合作이나 통일전선 전술의 견지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平和’는 물론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개념과 같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평화」란 글자 그대로 서로가 화목하며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즉 戰爭과 소란에 반대되는 靜的 개념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은 전세계에서, 또는 한 국가사회내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일체의 要素가 소멸된 상태를 뜻하는 動的이며 투쟁적인 개념인 것이다. 즉, 자본주의를 포함한 모든 비공산주의적 요소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 말살된 상태에서만 진정한 平和가 온다는 발상이다. 공산혁명을 반대하는 평화는 곧 反動을 뜻하는 것이며, 공산혁명을 위한 人民戰爭을 평화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다. 그들이 평화를 강조할때는 물리적인 힘이 부족할 때로 양성적이고 노골적인 戰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적대와 비방, 파괴와 내부교란등 음성적 전쟁을 앞섰다는 것은 아니다. 양성적이건 음성적이건 전쟁은 부단히 지속된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平和觀이므로 그들에게는 평화가 곧 戰爭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28. 「연석회의」와 「회담」은 개념상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북한이 연석회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측이 주장하는 연석회의란 무엇인가?〉

북한이 주장하는 연석회의란 한마디로 말해서 群衆集會를 뜻한다. 그들은 連席會議를 「聯席會議」라 표기하며,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연석회의는 국회의원과 諸정당·사회단체대표들까지 참여하는 共產主義 특유의 軍중대회식 회의를 말한다.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말대사전」은 “연석회의란 어떤 안건을 토의하기 위하여 여러 단체나 조직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회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조선말대사전, 1962. 북한과학원)

북한이 주장하는 연석회의의 한 예로 1948년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바로 軍중대회식 연석회의였다.

그 때 남측에서 金九, 金奎植 선생 등 인사들이 참석했었는데, 막상 현장에 당도해 보니, 그것은 「南北協商會談」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의 각본대로 연출되는 「軍중대회」였던 것이다. 즉 북한공산당 지도자들이 등단하여 長廣舌의 연설을 하고, 동원된 수많은 청중은 요란한 박수를 보내고, 남측 대표는 축사형식으로 간단히 연설을 끝내면 그들에게 유리하게 마련된 決議文을 전격적으로 채택하여 선전효과를 한껏 거두려는 것이었다.

지금 북측이 계속 聯席會議를 고집하는 속셈도 그와같은 연극을 또 한번 연출해 보겠다는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국어대사전에는 “연석회의란 여럿이 일정한 곳에 모여 의논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어대사전, 이희승, 1982, 민중서관)

〈會談의 概念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국어대사전에는 “회담이란 한 자리에 앉아 이야

기 함”이라고 정의했고,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말대사전」에는 “회담이란 공식적인 사명을 띠고 정한 장소에서 같이 모여서 일정한 사업을 토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회담이란 군중집회의 성격을 띠 수 없으며, 일정수의 대표들이 쌍방이 같은 수로 참가하여 國家나 團體의 대표로서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의견을 가지고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단체간에 있었던 회담의 例로 든다면 「美·蘇頂上會談」, 「東·西獨頂上會談」, 「韓·日閣僚會談」등 수없이 많다.

〈북한이 聯席會議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국회회담의 성격을 굳이 연석회의 형식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人民의 의사를 폭 넓게 수렴하고, 겨레의 의사를 최대한 集大成하는 최대의 형식”이라는 미명하에 國會代表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국내 반체제파 등 견해를 달리하는 사회단체나 각계각층의 인사와 의석을 갖지 못한 政黨의 代表까지 南側代表로 구성하여 연석회의에 참석시킴으로써 北側은 같은 목소리로 一絲不亂하게 나오는데, 우리측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의견이 엇갈려 싸우는 동안 그들에게 유리한 방안을 전격적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대규모 聯席會議形式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예비회담을 보이콧트하여, 그 決裂의 책임을 우리측에 轉嫁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국회회담의 형식에 난관을 조성하는 북측의 속셈은 국회회담을 그들의 統一戰線戰略으로 악용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985년의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에서도 북측은 남북국회회담의 형식을 「聯席會議」와 「雙務的 代表會議」로 구분하여 제의하면서

연석회의는 북한대표 100명이 우리 국회본회의에 연석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같이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연석회의는 기본적으로 聯共統一戰線을 構築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側의 統一論議와 관련된 국론분열과 政治·社會的 혼란을 造成하기 위한 僞裝 平和攻勢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종래부터 자주 제기해 온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973년 4월 「南北政治協商會議」 제의.
- 1973년 6월 「大民族會議」 召集 제의.
- 1982년 2월 「南北政治人聯合會議」 제의.
- 1989년 9월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등

만일 백보를 양보하여 社會團體의 代表를 선발하여 연석회의에 포함시킨다 하여도 어떻게 국회회담의 대표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많은 社會團體中 어느 단체를 선정할 것인가?

북측이 요구하는 諸政黨·社會團體는 사실상 한국내 반체제파 및 반체제단체에 국한되는 것이다.

오늘날 남북국회회담의 대표구성에 있어 國會議員이 아닌 代表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북측의 주장은 논리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단이다. 금년1월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남북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당국자회담에 諸政黨 代表를 포함시키는 「政治協商會議」를 소집하자는 주장에 이어, 지난 1월 9일에는 「한국정부와 각정당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2명의 연락원을 서울에 파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속셈은 첫째, 북한이 自由往來 및 開放意志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둘째, 한국이 이를 受容할 경우에는 연락원을 통해 野黨總裁들을 방문, 편지를 전달해 정부의 「對北窓口一元化方針」을 無力化시켜 북한의 「政治協商會議」 논리를 정당화시키며, 셋째, 한국이 거부할 때에는 南北對話 및 交流意志가 없다는 것으로 모략선전하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국가최고의결기관인 국회의원의 쌍무적「남북국회회담」을 외면한 채, 북측의 목소리만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남한내 左傾親北勢力들이 대거 참가하는 聯席會議形式의 群衆集會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그들이 획책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이 論理에 맞지 않게되자 근래에 와서 北韓은 국회회담은 회담대로 추진하고 남북의 당국과 정당·단체 대표들까지 참가하는「민족통일협상회의」또는「정치협상회의」의 개최를 재차 강조하여 선전공세를 펴고 있으나 이 또한 연석회의 형식을 답습하여 고집하고 있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29.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우선 軍縮會談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남북한간의 군비축소 동결 또는 기타 군사력에 관한 문제가 핵심적인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韓半島의 平和를 확보하고 戰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南北韓 軍事力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平和定着問題는 統一을 향해가는 중요한 조건이며 필요한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북한간에는 軍縮會談이 실현되어 응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條件이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첫째, 군비통제의 감시와 위반했을 때의 제재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둘째, 남북한간의 敵對感 및 不安要素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休戰協定 제13조에는 남북한 상호적대행위의 완전정지와 군비동결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한간의 상호불신으로 인하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셋째, 남북한간의 統一觀과 軍事態勢는 엄연히 相異하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다거나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全韓半島를 共產化 하겠다는 대남전략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

넷째,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관계에는 사실상 남북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美·日·中·蘇 등이 직·간접적으로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고 군사력 규모의 변경이나 기타 군사문제에 관한 해결은 各側의 利害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섯째, 북한은 '87년 7월23일 政務院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에서의 段階別 군축실현을 위한 다국적군축협상을 제의함으로써 한반도 군축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그 내심적 의도가 駐韓美軍의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선전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군축회담이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平和定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도의시한 어떤 논의도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정부는 1988년 6월 10일 제3차 UN 군축 특별총회에서 崔光洙 外務長官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 군축 3단계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현단계에서는 현실적이고 合理的인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있다.

첫째, 남북한간의 조속한 對話再開와 후속접촉 및 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서 남북한은 不可侵協定の 체결에 합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平和와 安定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러한 다음 남북한은 한반도 군축이라는 目標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군축3단계 접근방안이 절대적인 불변의 원칙인 것은 물론 아니다.

만약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에서나 기타 남북한 당국간의 회담에서 군사문제에 대한 좋은 합의와 실질적 결실을 갖게되면 보다 우선적으로 군축문제가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盧대통령의 '88년 10월19일 UN 연설에도 이 점이 강조되어 있으며, 同年 12월 28일 北韓側에 軍事問題를 포함한 총리급회담을 우리가 제의한 바 있으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연합」체제의 남북각료회의에서 군사적신뢰구축과 軍備統制 문제까지도 토의하자고 제의하고 있으므로 평화구조의 새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가는 북한의 진실된 결심여하에 달려있다 하겠다.

30. 統一論議를 개방하고 民間交流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對北窓口를 一元化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정부는 1988년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논의의 적극개방과 활성화를 뒷받침하되, 對北提議와 接觸의 窓口는 政府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基本立場을 공식 정리, 발표한 바 있다.

민족통일로 향한 전진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각계인사들의 人的 交流와 함께 物的 交流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러나 統一論議는 憲政秩序에 기초를 두고 實定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정책의 수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對北提議나 접촉의 창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정부를 제쳐놓고 직접 북한측을 상대로 對北提議나 접촉을 시도하려는 것은 통일논의의 자유화와 실질적인 남북관계 改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대북제의나 접촉에 관한 限, 자제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함으로써 중구난방적이고 국론분열적인 주장과 행동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북한의 對南統一戰線戰術에 이용될 소지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의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그리고 남북통행과 신변보장 안내를 전담하는 정부의 체계적인 주선·조정·안내 없이 특정 개인과 집단이 임의대로 休戰線을 오가는 대화제의와 접촉을 무조건 강행하려 할 때 나타날 혼란과 위험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문제는 「창구일원화」라는 어휘의 표현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창구일원화」라는 말은 자칫 모든 접촉과 대화의 主體는 정부가 전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른바 「정부독점론」의 강변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남북대화, 접촉, 교류의 主體는 분명 정부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또 독점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남북간에 진행되어 온 多方面의 對話가 이를 웅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적십자회담은 적십자사와 대표들이 중심이 되고, 체육회담은 체육계인사들이 대표가 되며,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은 국회의원들이 대표가 되어 진행되어 왔다. 또 이 모든 회담의 경우, 사전 정부당국과 긴밀한 협의·의견조정·협조를 거침으로써 남북 관계의 현황, 북한측의 회답에 임하는 기본입장과 예상태도 등을 사전 검토하고 우리측의 기본입장을 정립하여 회답에 대응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회담을 용의주도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는 自然人 사이의 대화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다. 어떤 형태의 대화·접촉이든 공식적인 것인 한 그것은 곧 한민족과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銘心해야 할 것은 統一의 名分을 절대가치로 인정한 나머지 그 名分을 獨善的으로 利用하는 愚를 犯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통일을 위한 길이라면 個人이든 集團이든 직접나서서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特權的 發想은 이미 責任性과 節制로 부터 이탈한 행위임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다. 대화와 통일에 대한 신중론이 反統一的인 것으로 매도되고, 體制와 政府를 반대·배척하기 위한 政治鬭爭의 手段으로 ‘무조건 대화’, ‘무조건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統一志向的인 것으로 옹호되는 현상은 결코 통일에 이로울 것이 없다.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提議·對話·접촉·교류의 진행은 책임있는 정부의 주선과 협조안내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건설적이라 할 것이다.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통행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교통순경이 존재하고, 그의 역할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북접촉의 창구와 신변 안전보장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정부당국이

민간·국회·정부·사회단체등의 접촉·교류를 원활히 추진, 보장할 수 있는 「통일교통순경」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統一論議는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진실성, 합목적성, 목표지향성, 현실성과 함께 합헌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주체는 국민의 수임기관인 정부이다.

따라서 통일논의를 확대개방하고 자유화하면서, 동시에 民間交流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民間交流協議會를 活用하고, 대북창구를 정부로 일원화 한다는 기본입장은 결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1.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 올 시기를 언제로 전망하는가?

남북한관계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는 문제와, 이 대화를 통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문제는 별개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남북대화를 적극 제의하거나 이에 호응해 왔다.

첫째는, 대남도발 등 그들의 企圖를 은폐하는 위장수단으로 對話攻勢, 즉 위장평화공세를 펴왔다. 6·25남침을 은폐하기 위해, 그 18일전인 1950년 6월 7일에 이른바 ‘평화통일호소문’을 발표하여, 남북총선거에 의한 입법기관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7월15일부터 17일 사이에 海州나 開城에서 열자고 제의하고, 6월 10일에는 그들이 억류하고 있는 曹晩植선생과 남한에 잡혀 있던 남로당 대남총책 李舟河, 金三龍을 교환할 것을 제의한 것이라든지, 아웅산 폭발 만행 하루전인 1983년 10월 8일에 중국을 통해 「3者會談」을 미국측에 제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우리의 정치적 혼란기나 과도기에 대남제의를 적극화하였다. 4·19직후의 정치적 혼란기인 1960년 8월에 「연방제」 통일을 위한 남북 회담을 제의하고, 10·26사태 이후의 과도기에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한 것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 남북대화를 통해서 이른바 ‘남조선革命’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주객관적 정세라고 판단하였을 때 이를 촉진하기 위해 대남제의를 적극 화하거나 우리의 제의도 곧 받아 들였다. 1970년대초의 제1기 남북대화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닉슨독트린 등)이나 월남전에서 비롯된 미국내의 反戰무드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측은 남북대화에 호응하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할 수 있고, 한국의 안보태세도 약화시

킬 수 있다고 오판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넷째, 북한체제가 국제사회에서 규탄받고 고립화되었거나 대내적 政策 需要가 생겼을 때 이미지 改善을 위하여 위장평화전술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였다. 아웅산 폭발만행 뒤에 ‘3자회담’을 공개 제의(84. 1. 11)한 것이라든지 습營法 시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1984년 가을부터 적극 호응해 온 제2기 남북대화가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우리의 정치적 과도기에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수단으로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인 경우인데, 이 때는 당국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각당·각파·각계 각층의 대화를 내세웠다. 1980년 11월 11일, 당국을 배제한 정당·사회단체대표 및 각계인사로 ‘고려연방국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개별인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나, 1981년 8월 6일의 ‘민족통일촉진대회’소집 제의, 1982년 2월 10일의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제의, 1983년 1월 18일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제의, 1988년 6월의 학생회담 수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섯째, 한미관계가 불편한 시기에 편승하여 韓美 이간책동의 일환으로 對美 평화협정 체결 제의 등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빈번히 제의하였다. 한미관계가 불편했던 1974년에 미국의 上下兩院에 편지를 보낸 것도 그 예이다.

끝으로, 그러나 우리 정국이 安定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무력이나 폭력의 수단에 의한 대남전략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 초의 제1기 남북대화, 1985년 4월 9일의 ‘남북국회회담’제의, 1987년 1월 11일의 ‘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1989년의 ‘남북정치협상회의’나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 및 1990년 1월 김일성 신년사에서 제의한 “남북한 당국 및 정당 수뇌 협상회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유형의 남북대화는 아무리 적극성을 보이고 대화 빈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신뢰회복, 관계개선, 평화정착, 민족의 화합 등 평화와 平和的 統一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宣傳을 위한 정치심리전 내지는 대화속의 대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남북대화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展望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북한측의 對南觀과 對南路線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생산적인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 남한이 “美國에 의해 지배·수탈되는 해방되어야 할 식민지”가 아니라, 본받고 도움을 받으며 어우러져 살아야 할 선진국 수준의 신흥공업국이라는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서, 북한측이 민족공동체를 함께 형성해 나가야겠다는 實用的인 노선으로 수정하였을 때, 관계정상화, 평화구축, 민족의 공동번영, 통일조국의 설계를 위한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의 남북한관계와 통일환경의 발전추이에서 보면 그 시기는 빠르면 1990년대 초에서 늦어도 중반으로 전망해도 좋을 것이다.

북한에도 平和와 經濟發展의 수요를 느낄 때가 되었다. 한국이 결코 북한에 의해 해방되어야 할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세계가 알고, 차츰 북한의 동포들도 깨닫게 되었다. 북한의 배후에 있는 소련·중국·동구공산권까지 한국을 發展模型으로 삼겠다고 한국에 접근하면서, 북한당국에도 남북한간의 관계정상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나아가서는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남북대화밖에 없다고 권장하고 있다.

북한측으로서는 대화와 접촉의 폭이 넓혀짐에 따른 體制的 충격을 이겨낼 만한 면역조치를 갖추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인 남북대화 시기를 1990년대초로 보는 이유는, 그밖에도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 우리 북방정책 성과의 可視化, 남북한의 발전격차,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 및 개방의 물결과 북한에의 압력, 東西間 화해구조의 정착 등 여러 요인과 맞물려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최근의 남북대화 자세를 볼 때 남북간에는 몇가닥의 대화나 인적교류 및 경제교역과 교류의 폭은 차츰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1990년, 북경)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의 경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측의 입장과 수요를 우리가 대국적으로 수용하고 양보해 나간다면, 비록 변수가 있고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회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새해에는 동구의 변혁과 소련의 변화가 계속되어 그 영향이 다소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구와 북한의 현실상황에 차이가 많은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2.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南北關係 改善의 장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主張은?

周知하다시피 북한공산집단은 60年代 이후 소위 4대군사노선을 強化함에 따라 대폭 軍事力을 증강시켜 왔으며 全地上兵力의 75%以上을 휴전선 부근에 實戰配置해 놓고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그동안 對南武力도발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북한공산집단은 61年에 中·소와 군사방위조약을 맺었는데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나면 “지체없이 모든 軍事的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支援한다는”條約上 가장 강한 약속을 다짐받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군사적 手段 支援이란 核武器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서 韓·美防衛條約(1953. 10. 1)은 條約上의 弱點(戰爭발발시 韓·美兩國大統領은 각기 자국의 의회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시간상의 비신속성과 제약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75年에 월남이 共產化되었을 때 김일성은 남한에 越南式 게릴라전이 가능하다는 自信으로 회심의 미소를 띠었으며, 곧 북경을 방문(75. 4월 18일)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잃을것은 軍事分界線이요 얻을것은 祖國統一뿐”이라고 장담했다. 사실상 北韓은 中·소의 지원 없이도 단독으로 기습 남침할 수 있는 能力을 보유하고 있다.

韓·美팀스피리트 합동 훈련은 이와같이 북한의 4대군사노선강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력증강, 월남의 공산화, 김일성의 북경발언, 거기에다가 76년 8월 18일 도끼만행사건 등 한반도에서 緊張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자위적 對應措置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팀스피리트 合同軍事훈련을 사실상 공개리에 年例的으로 실시해 왔다. 즉 훈련의 규모, 일시, 作戰地域등을 公開的으로 실시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특히 1982년부터는 매년 북한측에 팀스피리트 훈련계획을 事前

通報해 왔을뿐만 아니라 參觀人을 초청까지 했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 참관하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팀스피리트훈련이 공개적인 自衛的 수단으로 年例行事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침도발이니 北侵준비중이니 하면서 터무니없는 악의에 찬 비난을 가해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공산집단은 팀스피리트훈련 때마다 이를 구실로 북한에서 '전쟁준비총동원령'을 내려 북한내부를 긴장케 하고, 북한주민 총동원의 수단으로써 악용하고 있으며 金日成體制에 대한 불만을 그들 내부의 전쟁준비총동원령과 주민동원체제로써 호도하려는 술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위적 手段의 對應조치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年內 1회만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소련과 海上合同군사훈련을 年內 1회가 아니라 수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때 북한은 우리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김일성체제유지의 名分의 하나로 利用하고 있다는점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삼아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왔다. 즉, 그들은 남북 대화와 훈련은 兩立될 수 없다는 主張下에 팀스피리트 훈련계획발표에 맞추어 진행중인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延期 또는 중단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대남전략상 남북대화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팀스피리트 훈련기간중에도 북한의 先提議로 남북간에 會談이 進行된 때도 있었다.

즉, ① 1979년 2월-3월 남북조절위 變則對坐, ② 1979년 2월-3월 탁구회담, ③ 1980년 2월-8월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④ 1984년 4월-5월 남·북체육회담 등이다.

이렇게 볼때 북한측은 그들의 대남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팀스피

리트훈련기간중에도 그들의 선제의로 회담을 제의해 왔고, 그들의 내부사정상 불리하면 거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건없이 인내심을 갖고 순수히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데 노력을 다해 왔던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는 不信과 오해문제, 軍事的 긴장상태 緩和問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것인 만큼 팀스피리트 훈련문제 역시 對話를 통해 이 훈련이 필요치 않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이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그 性格上 緊張을 高潮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전쟁재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의 과거태도에서도 알수 있듯이 팀스피리트 훈련이 남북대화의 장애요소가 된다는 그들 주장은 대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向後 南北對話의 持續的 추진과 進展을 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이 그릇된 자세가 是正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측의 이같은 자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팀스피리트 훈련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검토중에 있는 問題임을 밝혀둔다.

Ⅲ

주 변 정 세

33. 공산권은 왜 개혁과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동구공산권의 개혁추세가 북한에 미칠영향은?

1989년 하반기 동구공산권 전반에서 노도와 같이 일어난 개혁·개방의 물결, 특히 공산당 1당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마침내 제2차세계대전후의 東·西냉전체제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을 허물게 되므로서 세계사의 일대變革을 예고 하고 있다. 원래 공산권에서의 개혁·개방은 스탈린주의로 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부르주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계급사이의 모순과 갈등이 극대화되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난다는 마르크스·엔겔스의 이른바 “아래로 부터의 사회혁명론”은 어느 자본주의국가에서도 발생하지 않자, 레닌은 “직업혁명가집단(공산당)에 의한 폭력혁명”으로서의 후진국혁명론을 만들어 내어 제정러시아에 적용, 1917년 볼셰비키혁명을 성공시켰으며, 레닌을 계승한 스탈린은 “소련이 자본주의국가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이른바 「1국사회주의론」을 내걸고 국가권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극단의 專制主義로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스탈린주의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1당독재, 경제적으로는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말살시킨 공포사회로 정착되어 공산주의의 「原型」을 만들었다.

이러한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기는 처음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의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론」으로 부터 제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소이념분쟁이 점차 표면화되면서 국제 공산주의 노선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중국공산주의는 등소평의 實用主義노선으로 이어지면서 경제현대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경제원리(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고 經濟特區를 설정하는등 서방자본주의제도를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비록 공산당독재체제를 견지하고는 있으나 공산주의 본래의 모습에서 사실상 이탈하고 말았다. 강택민·이봉등 1989년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

요구 시위사태후 새로 등장한 중국집권층은 인민의 민주화요구를 말살하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으나 절박한 경제발전의 필요상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중단하지 못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사회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으로 중국인민의 민주화요구를 완전히 봉쇄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후르시초프의 반스탈린노선은 브레즈네프의 등장으로 일단 중단되었으나 1985년 고르바초프의 집권으로 다시 불붙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공산체제속에서 安住하면서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은 공산관료집단(노멘크라투라)에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만성화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음을 알자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우선 복수후보를 내세워 선거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民主改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공산당1당독재를 규정한 헌법 제6조의 폐기여부를 거론하는 상황으로 사태가 진전되고 민주화 열기에 자극받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등 발틱3국 등에서 민족독립 요구가 확산되자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주의는 청산하되 레닌주의는 고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그의 민주개혁은 일정한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국내경제체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존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타성에 젖은 소련국민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1986년 블라디보스톡선언과 1988년 블라스노야 르스크선언으로 구체화된 바와같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시베리아경제개발을 함으로써 소련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

끝으로 동구공산권은 제2차 세계대전후 소련군의 점령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공산권에 편입되었으나 미·소간 신데탕트시대의 개막으로 소련의 통제력이 이완되자—브레즈네프독트린의 이른바 「시나트라독트린」으로의 전환—자동적으로 국민내부로부터 民主化와 경제적번영을 위한 욕구

가 폭발하게 되어, 대부분의 국가가 금년중에 自由선거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상 살펴본바와같이 공산권의 개혁·개방정책은 중국, 소련, 동구공산권의 경우 각각 특성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공산주의는 공산당1당독재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필요성과 국민의 정치적 민주화요구가 개혁의 기본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산권전반의 개혁·개방물결이 아직 북한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채택한 이후 서방선진국의 자본·기술을 끌어들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김일성·김정일 공산세습체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경제체제를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합영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조총련기업을 유치하여 낙후된 경제에서 탈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령화에 따라 김일성이 퇴장하고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면 정치적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대외개방경제정책을 더욱 가속화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정치적 민주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체제위기상황으로 급속히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東歐와 북한의 현실을 비교할 때 金日成 주체사상 일색화와 문화전통에 차이가 있고, 주변환경면에서도 동구보다는 정보유통과 소련의 영향력도 적으며, 남북이 예리하게 대치중이라는 사실 등으로 동구의 영향으로 인한 급격한 變革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점진적 改革과 南北協力の 展望은 그어느때보다 밝다 할수 있다.

34.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들 국가 간의 사전합의나 양해없이 自主的인 統一이 가능한가?

우리나라는 美·蘇·中·日 등 강대국 틈바귀에 위치하여 제2차세계대전후의 戰後처리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달리 국제정치적 희생물로서 분단이 강요된 이른바 「국제형 분단국가」이다. 따라서 주변강대국의 대 한반도 政策은 우리 민족의 統一問題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통일문제의 主人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자신으로서 남북한의 우리 민족이 합의하면 주변강대국은 이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주변강대국의 對韓半島 긴장완화정책과 統一에 대한 立場을 보기로 한다.(분단 원인 및 중립화 문제 등에 대하여는 별도문항을 참조 바람)

미국은 “직접 협상을 통하여 1953년의 한국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시켜야 한다”는 北韓側의 이른바 「三者會談」提議를 거부하고 한반도의 軍事·政治問題는 남북한간의 直接對話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월남의 「티우」정부대표를 배제시킨 채, 당시 「키신저」安保持補와 「레·독·토」越盟政治局員사이의 비밀협상방식이 결국 월남공산화를 재촉하였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한반도에서 재현시킬 수 없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위해 南北韓間의 직접대화를 중용하는 한편, 自國外交官에게 北韓外交官과의 접촉을 허용하는 등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對北政策과 7·7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對中·蘇接近을 위한 「北方政策」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일방적인 접근을 경계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우리의 統一을 바라지 않는 나라가 日本이다.

日本の 對韓半島 政策은 대체로 美國의 정책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政府의 공식적인 한국지지 정책과는 달리 「사회당」등의 對北韓 政策을 묵인함으로써 南北韓에 대하여 사실상 ‘양다리外交’를 유지해 오고

있다. 다만 대북한 일변도로 기울어졌던 「사회당」이 최근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日本은 “한반도에 하나의 강력한 통일민족국가가 성립되는 것은 국가이익에 反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南北 分斷상태하에서 南北에 대한 各各의 이익을 취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

소련은 對韓半島 政策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재론할 필요도 없이 북한을 太平洋戰略 수행의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988년 「세바르드나제」外相의 平壤 방문후 발표된 「공동보도」가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聯邦制」, 「三者會談」, 駐韓美軍 철수 및 한반도 非核化 등 北韓의 통일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1985년 이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 표방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교류를 가속화시키면서 「南朝鮮」혁명전략논리에 입각하여 韓國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北韓에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초프」는 1988년 9월16일 「서울올림픽」을 하루 앞두고 한국을 공식적으로 호칭하면서 「연안국 안보회의」와 「경제교류」를 거론하는 이른바 「크라스노야르스크 宣言」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소련은 對韓國關係에서 政經分離 原則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北韓을 의식한 잠정적 조치이며 사실상 이른바 「두개의 韓國政策」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1989년에 들어서서 소련은 더욱 韓·蘇 經濟協力の 중요성을 認識하게 되었고, 國交수립도 멀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예상됨으로써 급기야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 또는 우리의 單獨加入 문제에 대해서도 支持의 立場을 보여 한반도에서의 南北間 平和共存 支持와 두개의 국가 存在를 現實의으로 認定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련은 물론 북한의 聯邦制統一을 지지하고 있다.

끝으로 中國은 蘇聯보다도 더 엄격히 政經分離 原則을 적용하여 북한의 「연방제」등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른바 「一國二體制論」을 표방

하여 「홍콩」반환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논리로서 臺灣統一問題를 추진하고 있는 中國은 북한의 「聯邦制」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1989년 11월5~7일 金日成이 北京을 극비리에 방문했을 때 중국 지도층은 南北韓 유엔同時加入을 反對하고 북한의 統一政策을 支持하는 立場을 보였다.

그러나 주변강대국의 對韓半島 政策의 공통점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어야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의 平和定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주변강대국은 각기 自國의 국가이익을 정면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결정적 이유는 없다. 원래 제2차 世界大戰 後처리 과정에서 강대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입장은 독일문제에 대한 입장과는 다르다. 또한 국제적 긴장완화 추세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점차 「民族內部問題化」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우리 민족은 冷戰構造的 對決意識을 하루빨리 탈피하고 民族 자주역량을 결집시켜 통일여건을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크게 진전되지 않는 것은 주변4강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對南赤化의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한민족공동체가 형성되어 국민(민족)의 自主的 統一意志가 강력히 구축되어 있다면 주변국가는 우리의 自主的 統一노력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35.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주변4강의 교차승인이 분단고착화를 뜻한다는 일부주장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는 1973년 발표한 「6·23外交政策宣言」에서 ①南北韓의 동시 유엔가입을 반대하지 않으며 ② 상호주의의 원칙이라면 中·蘇 등 공산권국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제6共和國에서도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이나, 그것이 여의롭지 못하면 韓國의 단독 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한 國際的 여건조성을 위하여 외교력을 기본적으로 排除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對中·蘇 交流를 가속화하기 위한 「北方外交」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의 「6·23외교정책선언」이 발표되던 날 공교롭게도 북한을 방문중인 체코공산당 제1서기 「구스타프·후사크」를 환영하는 군중대회 석상에서 金日成은 ① 군사5개항(군사력 증강중지, 군비축소, 무기반입중지, 주한미군철수 및 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 ② 多方面的인 교류·협작 ③ 大民族會議 ④ 고려연방공화국 창설을 주장하면서 ⑤ 高麗聯邦共和國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정책을 표방한 이래 韓國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정책을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분단고정화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방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한반도주변4강에 의한 南北韓 交叉承認案(키신저 전미국 국무장관의 주장)은 물론, 심지어 우리의 「북방정책」에 따른 對中·蘇 交流조차도 ‘두개조선 조작책동’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유엔결의에 따른 총선거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는 소련의 비호하에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한반도에 사실상 2개의 政府가 실제로 존재하여 40여년이 되도록 남북쌍방사이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유엔에 가입조차 되지않아 세계외교무대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북한측은 1952년에는 UN동시가입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고려민

주연방공화국」 단일국호하에서만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 민족은 언제 유엔무대에 설 수 있겠는가?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은 북한측 주장과는 달리 ‘두개 조선 조작책동’도 아니며 ‘조국의 영구분단정책’도 아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다음 統一이 되면 단일 국호로 변경하면 된다. 소련은 유엔창설 과정에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聯邦政府이외에 백러시아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공화국 등 3개 의석을 갖고 있는데 북한측 논리에 따른다면 소련은 3개 공화국으로 분단되었다는 말이 된다.

한편, 北韓은 1973년 부터 한국이 이미 가입한 유엔산하기구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유엔통상개발회의」(UNCTAD),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직속기관과 「세계보건기구」(WHO), 「만국우편연합」(UP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유엔전문기구—11개의 유엔산하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북한측 논리대로라면 한국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유엔산하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도 조국의 ‘영구분단정책’이 될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政府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對南戰略的 발상 때문이다. 「대한민국」정부를 이른바 ‘인민민주주의혁명’에 의한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조선」이 유엔에 가입되어 국제적으로 국가승인을 받으면 革命이 制動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同時에 유엔에 가입하면 북한의 대한민국정부 인정 → 남북한 평화공존관계의 定着 → 平和統一 논리로 발전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한반도 주변강국의 남북한 交叉承認問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북한이 주변강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내지 교차교류를 반대하는 것도, 역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혁명논리적 발상이다.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한 平和共存관계의

수립,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원한다면 최소한 한반도 주변강
국들이 남북한과 교차접촉·교차교류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36. 「駐韓美軍 撤收」주장에 대한 對應論理는 무엇인가?

북한은 駐韓美軍이 그들의 安保에 위협이 되고 全韓半島共産化 戰略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하에 이의 철수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 주장에서 “민족의 自主性”을 특히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國際權力政治의 냉엄한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물론 長期的이고 원칙적인 견지에서 한국의 防衛는 한국인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단계로서는 남북한간의 軍事的不均衡, 상호간의 敵對感과 不信, 그리고 군사력집중, 북한의 南侵가능성 등의 이유로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은 한반도 安定과 平和에 필요하다. 또한 그 철수시기는 북한의 南侵에 대한 한국의 獨自의 抑止가 가능하거나, 북한이 對南赤化革命戰略을 포기했다는 객관적인 확증이 있는 연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북한의 駐韓美軍撤收 주장의 內容〉

북한은 한국전쟁에 介入했던 中共軍이 철수하자(58. 10) '59년 10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2기6차회의에서 南日 副首相이 “주한미군을 철수” 할 것을 주장한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주장에서 名分으로 제시하고 있는 論理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統一은 물론 南北對話의 전제조건으로서 주한미군이 철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은 民族 自決權을 유린하는 등 국제법원칙의 위반이란 것이다. 넷째, 주한미군은 7·4공동성명 3原則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美軍의 한국주둔이 UN헌장 및 決議事項(外軍撤去)을 유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여섯째, 주한미군은 모든 外國軍의 철거를 예견한 休戰協定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근거가 되고 있는 韓美相互防衛條約이 不法的인 것이라는 것이다. 여덟째, 주한미군의 철수는 時代的 요구라는 것이다.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의 底意〉

북한의 對南戰略·戰術,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제의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한가지 특징은 모든 것에 주한미군의 철수가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직접 주한미군의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이 존재하는한 결정적 시기가 도래해도 무력남침에 의한 赤化統一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하고자 기도한다.

둘째, '60년대이후 추진해온 남조선혁명전략의 일환인 남조선에서의 革命力量強化는 한국의 현존 政府를 전복하고 주한미군을 축출한 상태에서 民主政府(容共政府)가 설립되어 북한과 合作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고 또 국제무대에서의 革命力量強化 역시 주한미군이 제국주의적 침략으로써 한국을 강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미국을 곤경이 빠뜨리고 주한미군을 撤收하도록 壓力을 가하는 것을 目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한국이 美國의 식민지라는 주장하에, “한국정부는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非正統的 政府로서 미국의 도움에 의하여 집권하고 있으며 한국민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만 철수한다면 한국정부는 자동적으로 붕괴하고 소위 ‘민주인사’들에 의한 ‘民主政府’가 수립될 것”이라는 논리체계를 구성해 놓고 있다. 북한이 제안하는 統一方案이나 對話提議에서도 역시 주한미군 철수요구가 不變의 요소로, 그 전제조건이거나 목표로 되어 있다. 「고려연방제」나 「3者會談論」등이 다 그러한 例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기본정책이 한반도의 共產化統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 對內的 政治的 觀點에서 金日成이 북한社會를 동원하고 북한주민을 통제하며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희생시키면서 軍事力을

증강하는 이유를 南朝鮮解放에서 찾았으나, 그 실현이 멀어져가는 시점에서 그들이 內的으로 공약한 한반도 공산화 統一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에서 그 이유를 찾고 주한미군을 속죄양으로 이용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그들의 약점을 국내정치적으로 호도하고 변명하려는 것이다.

〈駐韓美軍의 意味와 役割〉

주한미군은 원래 UN군의 일부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UN군이 한국에 파견된 것도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무력으로 기습남침을 감행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고 평화를 회복하려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파견되었다. UN의 派兵決定은 북한의 무력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국정부의 개입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UN헌장이나 일반 국제법 理論上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오직 북한의 무력남침인 것이다.

주한미군의 法的地位와 관련,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은 휴전협정 조인 직후인 1953년 10월 韓美 양국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이유 자체가 북한에 그 책임이 있고 또한 파견 경위나 주둔형식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이상, 북한으로서는 이에대한 適法性 여부를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역할은 ①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체결 당사자로서 UN측을 대표하는 휴전협정 감시자 ② 북한의 再侵역지 ③ 남북한간의 緩衝役割담당 ④ 東北亞 세력균형의 유지 등 4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측의 主張內容別 對應論理〉

첫째, 주한미군 철수가 統一對話의 前提條件이라는데 대하여 美軍이 우리의 統一政策 수립이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철수시킬 수 있으므로 우선 북한이 통일

을 위한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측에서 한국의 상황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따를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內政干渉이고 성실한 대화자세로 볼 수 없다. 35만이나 되는 西獨의 美軍주둔이 동서독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동·서독 긴장완화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 전쟁위험의 원인으로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北韓이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한 尙存하며 한국과 미국은 전적으로 방어적인 전략에 입각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사례와 6·25전쟁의 책임을 묻고, 현재 남북한 군사력 比較面에서 북한측이 훨씬 우세한 입장에 있으므로 이를 한국수준으로 감축하고 남북한간에 신뢰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될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이 국제법 원칙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한 UN軍과 주한미군의 파견경위의 설명으로 合法性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넷째, 7·4共同聲明 원칙의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統一의 原則이지 國防의 원칙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하고 북한이 공격적인 자세를 완화하고 성실한 자세로 신뢰를 쌓아가면 한국에서는 駐韓美軍을 계속 주둔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주한미군이 유엔헌장 또는 UN 決議事項의 위배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한미군은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파견된 UN군의 일부이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북한의 南侵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북한은 UN의 統一案을 拒否해 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섯째, 미군의 한국주둔이 休戰協定의 위반이라는 점에 대하여 美軍이 철군하면 협정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것은 미국이 휴전협정의 준수를 감시할 법적인 責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또 북한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對美平和協定締結이나 3者會談을 갖자는 근거와도 상치된다.

일곱째, 韓 : 美相互防衛條約이 不法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한 국가는 자유로히 外國과 조약을 맺을 권리가 있고 이를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內政干涉이 된다. 북한이 외국과 맺고있는 조약에 한국이 폐기나 내용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여기에 북한은 순응할 것인가를 반문해 본다.

여덟째, 時代的 요구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한 국가의 방위를 자신이 담당하는 것은 時代的 要求라고 할 수 있지만 전쟁을 피하고 억지해야 하는 것은 인류역사의 通時代的 要求이며 주한미군은 바로 전쟁을 抑止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武力赤化路線을 포기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면서(공격적인 군사력 감축과 불가침협정 등) 성실한 자세로 南北對話에 임해 상호간의 信賴를 쌓아가면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오기를 우리가 보다 더 희망하고 있다.

37. 최근 보도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개발 잠재역량은 어느정도이며, 북한의 「한반도 非核地帶化」 주장의 저의는 무엇인가?

한 국가의 핵개발 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관련요소를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대체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강한 국가의지, 핵물리학을 포함한 핵기술의 수준, 핵의 평화적인 이용시설의 규모, 그리고 경제력의 뒷받침 등으로 집약된다고 할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북한의 경제역량이나 원자력의 이용수준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意志의 강도와 오늘날의 핵개발은 기술적으로 그 難度性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핵개발 임박설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영국의 군사정보문제 주간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se Weekly)가 89. 9. 20자에서 “현재와 같은 발전속도라면 북한은 5년 내에 핵실험 폭발장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뒤는 실전용으로 사용가능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고 밝힌점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북한의 핵개발에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① 1955년 4월 : 북한 과학원 제2차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를 결정 ② 1956년 2월 : 모스크바에서 朝·蘇과학기술원조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고 연합핵 연구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 ③ 1956년 9월 : 朝·蘇간 원자력평화이용 협정조인 및 고주파 질량기 제조에 성공 ④ 1961년 : 평북 寧邊에 대단위 원자력연구소 착공 ⑤ 1961~67년 : 약 3천명의 과학자를 소련의 드부나 핵연합연구소에 연수시키는 한편, 金日成대학과 金策공업대학에 핵물리학 및 핵공학과를 설치 ⑥ 1963년 10월 : 방사능 동위원소를 興南비료공장의 암모니아 합성 및 과인산 석회 생산공정에 도입 ⑦ 咸興·雄基 및 海金剛일대에서 양질의 우라늄광 발견 ⑧ 1964년이후 : 北京의 番山초대에서 朝·中핵물리학자의 수시회합 및 우루무치(烏魯木齊)핵실험장에

북한의 핵 전문가 파견 ⑨ 1965년 : 소련으로부터 1천kw급 실험용 원자로를 도입 ⑩ 1974년 :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한국은 1957년 가입) ⑪ 1980년 : 寧邊에 3만kw급 원자로 제2호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86년에 완공 ⑫ 1985년 : 20만kw의 제3호기를 착공하여 90년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건설중이며, 12월 12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국은 1975년에 서명)과 함께 176만kw급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도 합의하여 90년에 착공예정 ⑬ 1986년 12월 : 소련 수상 리즈코프와 북한 총리 姜成山 간에 핵기술협정 조인 및 政務院 부서로 원자력공업부를 신설하고 핵전문가인 崔學根을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 1985년 12월 핵확산 금지조약에 서명한 이후부터 소련에 의한 핵기술 제공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이 高威力의 전략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플루토늄의 대량생산은 소련만의 감시기능으로 제재가 가능할는지 몰라도 전술핵 제조에 충분한 소량추출은 북한의 축적된 단독기술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최근에는 플루토늄만 제공받으면 테러단체도 핵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미국의 원자력위원이던 J. 테일러 교수는 원료만 있다면 핵전문가가 아니더라도 TNT 1백톤급의 소형핵탄은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핵탄의 원료인 이 플루토늄의 획득이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농축 및 재처리작업으로 임계량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 및 기술면에서 낙후된 중국이나 인도가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Pu-239를 생산하기 위한 核발전소 건립에는 6~10년, PU 再處理 공장 건설에는 8~9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이 이 시설의 동시 건설계획에 착수하거나, 소련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지원 및 시설지원이 제공되지 않는한 90년대에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逆論理를 적용하면 90년대에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각종 ‘성명’, ‘담화’와 국제회의·군중집회·보도매체의 논설 및 사설등 각종 可用手段을 총동원하여 「한반도 非核平和地帶」 창설 주장을 끊임없이 선전하면서 이와 연관된 이유들을 부각시켜 對韓, 對美 비방공세를 극렬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확대·유포하여 주한미군의 최신장비 반입을 중단하고 그 철거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적인 反戰·反核단체들과의 연대적 활동을 유도하며, 한국내 사회일각에 反核·反戰운동을 부추겨 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은 처음부터 실현에 비중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대내외 선전 선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비핵지대화」 문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련의 전체核戰力の 3분의1내지 4분의1이 극동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각종 核投發手段, 作戰機, 군함이 한반도 주위에 전개되어 있는 상황을 차치하고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를 결코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非核地帶化論은 남북한간의 정치적, 군사적 화해와 신뢰구축및 주변 四強의 보장이 진척되지 않는한 現實化 되기가 어려운 과제라고 볼때, 북한의 선전·선동전략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제의를 현 단계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美·蘇간에 實質의 군축을 통한 데탕트 무드가 조성되어가고 있고, 소련이 한반도 非核化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時點에서, 우리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南北間의 軍事的 對峙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政治·軍事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38. 북한이 미국과의 「平和協定」체결을 내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북한은 한반도의 軍事問題를 해결하는 것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하여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른바 ‘先決條件’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71년4월12일 북한외교부장 許鎔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하면서 「8개항통일방안」이란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번째에서 “남조선에서 美帝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풀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선결조건」은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행한 金日成연설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을 提議하는 가운데 「사회의 민주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군사파쇼정권의 민주주의정권으로의 交替등으로 내용이 보장되지만, 이 때 金일성은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美國에 다시 한번 제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원래 평화협정은 南北韓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북한측은 주장해 왔다. 즉, 1973년6월23일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평화통일의 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한지 불과 수시간후 마침 평양을 방문 중인 체코공산당중앙위 총비서 구스타프 후사크를 환영하는 군중대회 석상의 金日成연설(이른바 5개항통일방안)에서 “북과남 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한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②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③ 군대와 군비의 축소 ④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⑤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라고 말한바 있었다.

북한이 평화협정체결 當事者를 이른바 「남조선당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바꾼것은 1974년3월25일 「최고인민회의」가 미국상하양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편지를 보낸 때부터이다. 북한은 “① 「남조선」은 1953년 「조선정전협정」서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참여할 수 없으며 ② 국군통수권을 美帝가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1953년의 한국전쟁 휴전협정은 駐韓유엔군사령관을 일방 당사자로 하고, 「조선인민군사령관」과 「중공인민지원군사령관」을 타방 당사자로 하고 있다. 한국군사령관은 당시 한국정부의 휴전 반대정책에 따라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 “한민족은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은 아니지만 전쟁을 후손에게 미루는 결과가 될 미지근한 휴전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승만대통령의 강경한 휴전반대정책이었다. 이승만대통령은 1954년 韓美相互防衛條約을 보장받음으로써 휴전협정을 양해하였지만 한국군사령관 이름으로 서명할 수는 없으며, 이른바 「대전협정」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作戰權은 유엔군사령관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유엔군사령관이 휴전협정에 서명하면 한국군도 서명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여하튼 현시점에서 국제법적 해석여하에 관계없이 한반도 군사문제의 제1차적 당사자는 南北韓 바로 자신이다. 1953년의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치시켜 한반도의 平和를 定着시키는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가 되고, 한국과는 다만 국제법적 효력조차 불투명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실이다.

한편 북한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서 국군통수권은 미제의 상전이 틀어쥐고 있다”고 내세워 북한·미국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國軍統帥權」과

作戰權 개념의 혼돈에서 나온 주장에 불과하다. 「국군통수권」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다만 군사작전의 효율적수행을 위하여 군사작전을 韓·美聯合司令官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경우에서와 같다.

북한이 한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참된 이유는 판곳에 있다. 북한이 「남조선당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1974년 「최고인민회의가 미국 상하양원에 보내는 편지」를 계기로 북한·미국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바꾼 것은 1973년의 파리 월남평화협정을 본받으려는 것이다. 이 협정은 당시 미국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헨리 키신저박사와 월맹공산당 정치국원 레·득·토사이의 秘密協商을 통하여 타결되었다. 越南을 협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월남정부는 「괴뢰정권」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결국 「파리월남평화협정」에 따라 주월미군철수후 월남은 2년만에 共產化되고 말았다. 북한이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는 기본 이유는 월남공산화 과정을 한반도에서 再現시켜 보려는 간악스러운 흥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반도 군사문제의 해결은 남북한을 직접당사자로 하여 「不可侵協定」을 체결하거나, 남북한을 직접 당사자로하는 협정을 이른바 ‘분단 고정화정책’이라고 하여 북한측이 한사코 반대한다면 남북한은 「불가침선언」을 하고 이를 한반도 주변강국이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盧대통령은 1988년 10월 역사적인 유엔총회연설에서 「東北亞 平和協議會議」개최를 위하여 남북한 및 주변4강 등 6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민족공동체헌장」속에 군사문제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남북연합」 체제를 구축하여 남북각료회의안에 군사분야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문제의 토의와 아울러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해 놓고있다.

39. 우리가 추진하는 「北方政策」과 서독의 「東方政策」은 어떻게 다른가?

〈北方政策〉

○ 沿 革

우리가 추진하는 북방정책에 있어서 그 용어를 사용한 연혁은 1973년 6월 23일 「6·23宣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 朴正熙大統領의 「6·23宣言」은 對共產圈에 대한 문호개방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 후, 1983년 6월 故 李範錫외무장관이 國防大學院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북방정책은 그 실마리가 풀릴 것이며 북방정책의 진전은 남북한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북방정책이란 용어 사용의 처음이 되었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대통령은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특별선언」을 천명함으로써 대통령선거시 公約한 北方政策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 北方政策의 目標와 方針

「6·23宣言」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내외상황의 급변하는 정세에 부응하여 北方政策을 구현함으로써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고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하며, 사회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향한 民族共同體意識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1988년 6월 5일 崔侑洙외부장관은 “북방정책”의 근본목표는 중국 및 소련과의 접근을 통한 남북한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북방정책의 目標은 과거의 對美의존외교라는 일방통행식 외교에서 탈피하여 自主外交, 多邊外交의 일환으로 東歐공산제국 및 중

국·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北韓과의 관계개선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북방정책의 目標은 ① 東北亞 및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전의 구축 ② 交易擴大를 실현하여 國益增大를 도모 ③ 국제적 지위향상 ④ 平和統一의 여건과 환경조성 등이다.

그리고 北方政策의 哲學과 方針으로는 ① 북방정책은 북한의 동맹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과의 외교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자는 정책이 아니다. ② 북한과 民族共同體 인식의 바탕위에서 우리 민족이 국제사회에서 상호협력하여 共同繁榮을 모색함으로써 平和統一의 길을 열어가려는 것이다. ③ 우리가 大乘의 입장에서 양보하고 설득해서 통일의 길을 찾자는 것이 북방정책의 철학이며 방침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北方政策의 原則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소극적인 정책을 탈피하고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북방정책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셋째, 북방정책은 정치적 교류와 비정치적 교류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넷째, 북방정책은 국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추진한다.

다섯째, 미국등 우방국과 기존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한다.

○ 북방정책 推進機構와 展開過程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北方政策協議調整委員會」, 「北方交流推進委員會」(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경제교류를 추진할 기구로서 「對外協力委員會」(위원장:부총리), 「國際民間經濟協議會」(위원장:민간경제 4단체장)와 統一問題를 추진하는 기구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 「安保長官會議」, 「戰略企劃團會議」를 두고 있다.

北方外交의 展開過程을 살펴볼때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중·소 관계는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소련은 당기관지인 프라우다, 정부기관지 이즈베스차를 통해 “한반도

에 두개의 정부가 있으며, 소련의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접촉은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한국과 소련은 1989년에 상호무역사무소의 개설과 더불어 영사업무도 시작함으로써 관계개선의 폭을 점차 넓혀가게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의 政治問題에 대해서는 소련보다 신중한 태도이나 경제 교류는 오히려 광범한 접촉을 전개하고 있다.

헝가리, 폴란드 및 유고와는 이미 關係正常化를 수립하였고, 체코를 비롯한 몇 나라들과 수교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북방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東方政策〉

서독의 社民黨首인 빌리·브란트首相이 1969년 10월 28일 東方政策(Ostpolitik)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독일내 2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는 「국제법적 승인」이 아닌 「국내법적 승인」이다.
- ② 동서독은 상호 外國이 아닌 特殊關係이다.
- ③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에 입각한 不可侵條約을 체결하자.
- ④ 독일에 대한 「4大國協定」을 존중한다.
- ⑤ 상호간 경제·문화등, 다방면적 交流協力을 증진하자.
- ⑥ 「할슈타인원칙」을 폐기한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독일의 統一은 국제정치와 군사적 여건변화,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의 변화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동서독간의 교류협력을 우선 실현함으로써 共存共榮의 실리를 찾고 상호간 신뢰회복과 긴장완화로 平和定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北方政策과 東方政策의 比較〉

북방정책과 동방정책은 분단국으로서 다같이 상대적 국력우위에서 오는 자신감에서 천명되었으며, 「할슈타인원칙」의 포기선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분단의 상대방을 「하나의 民族」이라는 民族共同體로 인식하여

民族自害的인 對決關係를 止揚하고 민족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差異點으로는 첫째, 東方政策은 통일을 위한 段階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北方政策은 이를 토대로 하여 통일실현을 하기 위한 段階的 성격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東方政策은 동독의 배후세력인 소련·폴란드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었으나 北方政策은 중·소 및 동구공산제국과 폭넓은 관계개선을 통하여 북한에 영향을 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셋째, 北方政策은 우방국들에게 북한의 문호개방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特色이 있다.

40. 미국·일본 등 서방국가의 대북한 접근이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개방 및 남북한 긴장완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남북한 平和共存關係를 定着시킨 바탕위에서 민족통일로 접근하려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한 사회를 相互開放하여 여러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 오늘날 북한은 주한미군철수, 한반도의 非核平和地帶化, 군비축소, 불가침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軍事問題의 先決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남북으로 40여년간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간에 生死를 확인하기 위한 편지 한 장 내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군사문제의 해결과 상호 사회개방을 통한 교류·협력관계가 均衡있게 진전될 때 가능한 것이다. 분단국상황에서 군사문제는 원칙적으로 관계개선의 마지막 段階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편지 한 장 내왕을 거부하면서 주한미군을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지상낙원이라는 金日成·金正日세습체제의 허구적 통치명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1984년 「습營法」을 제정,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시도한 이후에도 강력한 폐쇄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동력동원중심의 이른바 「自力更生式」경제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사회를 개방시키는 일이야말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統一로 가기 위한 첩경이다. 그러므로 북한사회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써 우리 정부는 美·日 등 우방국가의 대북접촉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주변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정책」의 일환으로써 미·일의 북한승인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中·蘇양국의 對韓國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美·日양국이 일방적으로 대북한관계만을 진전시키면 외교적 균형을 상실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기능할 것을 우려했을 뿐이다. 그러나 제6공화국의 획기적 대북한정책의 일환으로써 盧大統領은 1988년에 「7·7선언」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民族共同體」의 한 구성부분이라는 입장에서 ① 군수물자가 아니면 미·일 우방의 대북한 교역을 반대하지 않으며 ② 북한과의 비생산적인 消耗 外交戰을 지양하겠다는 政策方向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또한 「7·7선언」에서 북한이 미국·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용의도 있음을 천명한 바 있는데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平和的 統一을 이룩하겠다는 적극적 의사의 표명이다. 노태우대통령은 이어 1988년 10월 19일 韓國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역사적인 유엔총회연설에서 비무장지대에 「韓半島6者平和會談」등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관계개선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이같은 제6공화국의 對北政策에 보조를 같이 하여 찰스 레드먼 美國務省 대변인은 1988년 10월 31일 KAL機 폭파사건이후 북한에 대하여 취해진 制裁를 완화시키는 4개항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① 비자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북한의 체육인, 학자, 문화인들의 비공식적인 민간차원의 미국방문 장려 ② 미국인들의 북한방문 제한 완화 ③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미국의 대북한교역허용 ④ 미국외교관의 북한외교관 접촉완화등이 그 내용이다.

그 동안 북한은 이른바 對美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하면서도 대미적대의 식을 고취하는 비방선전을 감행해 왔으며, 카터 미행정부 당시 ① 미국인의 북한방문허용 ② 제3국에서 미국외교관의 북한외교관 접촉허용 등으로 미국·북한관계가 일시 개선되는 듯 하였으나 버마아웅산 암살폭발사건 및 KAL機 폭파사건 등으로 획기적인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미국의 대북한 制裁 완화조치를 계기로 1990년 초까지 미국외교관은 北京에서 북한 외교관과 6차례의 접촉이 있었으며 시거 전 미국무성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한편, 북한·미국간의 관계와는 달리 북한·일본관계는 비록 民間次元

이기는 하나 경제교역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1984년 「合營法」제정이 후 조총련계 기업인의 대북한투자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북한은 낙후된 경제발전을 위하여 일본의 적극적인 대북한 투자를 갈망하고 있으나, 북한의 외환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對日 무역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일본정부는 300억「엔」규모의 거액을 무역보상금 형식으로 북한과 무역하는 민간상사에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북한·일본간의 민간교역관계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北韓과 日本關係는 일본 拉北어민의 송환문제, 일본상선의 북한어로 구역에서의 조업문제, 조총련간부의 북한방문 재입국문제 등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들이 있고, 북한측 입장에서 보면 일본기업의 投資 유치문제 등이 있으나 제6공화국의 「7·7선언」등 새로운 대북한정책 천명과 더불어 상당히 개선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대북한 접촉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사회의 개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되 남북한 관계개선의 진전 및 中·蘇양국의 對韓접근속도를 감안하여 緩急을 잘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일본 등 서방국가의 대북한접촉증대는 북한의 개방 및 긴장완화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41.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그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88년도 日本의 무역흑자는 1,000억 \$을 초과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국제경상수지의 흑자를 기록한 나라치고 軍事力增強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볼 때, 일본은 이제 그들의 經濟力에 상응하는 軍事力 건설에 박차를 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88년도 예산에서 GNP의 1.013%, 세출예산의 6.5%를 방위비에 반영하고 있는바, 이른바 「GNP 1%의 벽」을 넘는 방위비를 쓰고 있는 셈이다. 75년도의 GNP대비 0.84%의 방위비가 매년 서서히 늘어나 드디어 GNP대비 1%가 넘는 액수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89년도 예산에는 군사비를 290억 \$ (3조9천억엔)로 책정하였는데 美國에 비해서는 1/8 정도이지만 英國의 250억 \$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일본은 이상과 같은 방위비 증가에 힘입어 그들의 自衛隊 戰力을 괄목할 만큼 향상시켰다. 現在 兵力은 육상자위대 약 16만명, 해상자위대 약 4만4천명, 항공자위대 약 4만5천명 등 도합 24만9천여명에 이른다. 주요 장비로는 戰車 1,150대, 裝甲車 590대 各種砲 5,980門, 各種艦艇 161척 (호위함52척, 잠수함14척 등) 各種航空機 약1,000機 (F15전투기91기 등) 그리고 나이키, 호크, 샘 등 각종 誘導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日本은 86년~90년을 기간으로한 中期防衛力 정비계획을 마련, 自衛隊 戰力 증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美國과도 '54년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을 체결했으며 '78년에는 「美·日 방위협력을 위한 指針」까지 책정하여 긴밀한 軍事協力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 정부간 군사관계자 협의를 자주 갖고 있으며, 合同軍事訓練을 陸上·海上·航空자위대별로 각각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장비 및 기술협력은 물론 일본은 在日美軍의 주둔을 원할히 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日本의 군사력 증강과 美·日군사협조체제는 첫째, 소련의

亞太地域 군사력팽창을 일본을 내세워 抑止하려고 하는 미국의 戰略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고 볼수 있다. 일본측 입장에서 볼때는 미국의 核우산 밑에서 安保무임승차를 하고있는 現狀態를 自衛體制로 바뀌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일본은 蘇聯을 잠재적인 敵國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소련이 北方 4개도서를 군사시설로 요새화하고 있고 일본주위를 소련의 전투기가 年平均 350회, 함정이 年平均 575척이 돌면서 心理的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美·蘇間에 中立의 입장에 일본이 있어주기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이상과 같은 소련의 의도와는 상치된다고 볼수 있다.

둘째, 韓半島문제와 관련, “일본은 앞으로 美日安保條約의 틀내에서 韓·美사이의 安保體制를 이용, 한국안의 美軍基地들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려 할것이다”고 지적한 컬럼비아大 제랄드 커티스 교수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美·日 合同軍事訓練에 駐韓 美空軍소속 A-10비행단이 참가한 사실은 이같은 태도를 뒷받침한다고 볼수도 있다.

아무튼 일본은 현재 經濟大國에 걸맞는 발언권을 4強과의 관계에서 행사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군사력 증강과 함께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문제에 관련하여 4強과의 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만약 美國의 영향력이 축소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즉, 美軍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대공산권과의 군사력균형의 공백을 일본이 맡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2. 중국·소련의 僑胞實態와 이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오늘날 海外에 거주하는 韓人들은 약4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방 세계에 약 170만, 공산권인 中國과 蘇聯에 약 220만 동포가 이국땅에서 한민족의 뿌리를 내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중국에는 180여만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하나,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中國같은 광대한 지역의 多民族國家에서는 아직까지도 인구조사가 부정확한 통계이고, 더욱이 1979년부터 엄격한 산아제한(1자녀 낳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나타내기란 어렵다. 그러나 우리 동포에 한해서는 2년 터울을 두고 2자녀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는 동포들이 근면성실하고 중국에 기여한 바가 컸기 때문이다.

1981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漢族을 비롯한 56개 少數民族의 服裝手工藝品 전시회에서 발표한 우리 동포인구는 소수민족중 13번째인 183만명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동포들중에는 250만명이상을 주장하는 설이 있다.)

中國은 地理的으로도 가장 밀접하여 17세기중엽부터 移住가 시작되다가 日帝의 土地調査事業 등의 수탈때문에 또는 國權回復運動을 위해 급격히 늘어 지금은 중국전역에 살고있는데 인구분포를 보면 약 98%가 동북 3성(만주)인 吉林省, 黑龍江省, 遼寧省에 集團的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중 두만강 건너편에 위치한 길림성에는 110만여명의 동포가 延邊朝鮮族自治州(1市·6縣에 75만명 거주)를 비롯하여 長春(길림성 省都, 4만2천여명 거주), 吉林市, 輯安縣, 通化地域 등에 살고 있으며, 흑룡강성에는 43만여명의 동포가 할빈 등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요령성에는 19만여명의 동포가 瀋陽(구 봉천)을 비롯해 대련, 무순 등에 살고 있다. 이외에도 내몽고 자치구에 1만8천여명, 북경시에 4천여명, 천진을 비롯한

하북성에 1천8백여명, 그리고 上海, 南京등에도 1천여명은 넘지 않으나 각기 同胞村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우리글, 우리말이 중국어와 共用으로 공식문서와 각종 표지판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말 신문·방송과 1,230개의 民族小學校, 181개의 중학교, 3개의 大學이 있다.

이들 만주지역 동포들은 거의가 中國국적을 취득했으나 民族意識이 특히 강해 韓人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民族固有의 특성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祖國의 統一問題에도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中國의 少數民族政策은 日本과 달리 自治와 同化를 병행하여 점진적 동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 중국을 방문했던 在美同胞의 말에 의하면 중국 동포들은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풍요로운 생활방식”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학생데모에 관한 뉴스도 가끔 듣고 있으나,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그 나라의 민주주의적 성장의 진통”의 일부로 보고 있고, 북한은 사상통제가 철저하여 학생데모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韓·中 交流가 증대되고, 僑胞의 母國訪問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한국을 바르게 이해하는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소련영내에는 약 40만명에 달하는 동포가 소련이란 複合民族國家의 특수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1979년 소련당국의 통계로는 약 38만9천명이라고 하며,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약 68%가 中央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약 30%가 극동지역(사할린 포함)에, 그리고 극소수가 모스크바를 비롯한 서부 여러 도시에 산재해 있다.

오늘날 在蘇聯同胞들은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그리고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현상은 소련당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宥和政策 즉, 諸民族에 대한 그들 고유의 言語와 文化를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도 한국어 사용비율이 68.6%였으나 1979년에는 55.4%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점은 주목된다. 교육면에서 보면 대부분 소련 市民權을 取得하고 있는 동포들은 여타민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그들은 국비로 9년간의 각종 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다시 상급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소련당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러시아어와 함께 한국어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해도 그 교육내용은 공산주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社會主義的 人間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약되어 왔다. 이들 중 특히 中央아시아地域同胞는 2~3世로 蘇聯 國籍을 취득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고려인의 後孫으로 과반수가 우리말을 사용하며 傳統文化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할린교민의 4萬名정도는 南韓出身으로 歸還이 요청되고 있고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사람만도 4千名으로 再會만을 고대하고 있다.

소련에 살고있는 同胞들은 民族同化政策으로 소련화 해도 소련계 韓人(Sovetskikh Koreitsev)이지 完全同化될 수 없는 人種的 문제가 있다. 한편 이들은 직업면으로 보면 1959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동포의 약 48%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알마아타市에 10萬) 194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동포들은 중앙아시아지역에 정착하여 주로 농업에 종사했었으나, 최근 도시집중경향은 비농업분야 즉, 각종 기능직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으며, 주요업종은 노동자, 연구원, 예술인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소련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일찌기 帝政러시아 치하인 1860年頃부터 滿洲北方과 沿海洲 변경지방에 살다가 日帝의 中國本土 侵略期에 日·蘇關係가 악화되자 蘇聯의 國境政策으로 1937年 中央아시아로 強制移住당했거나, 日帝下에서 강제로 勞力動員된 사람들(사할린 교포의 경우)과 그 후손들로서 오랜 세월이 걸친 현지생활을 통해 그 체제에 적응하게 되었으나, 民族에 대한 共同意識과 民族文化에 대한 향수로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존속시켜주고 있다.

그들중 일부는 공산당 또는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적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동포들은 일본에 대한 증오감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경향은 한민족의 일본에 대한 잠재의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동포들은 북한을 김일성에 의한 1人獨裁體制이며 스탈린주의적 독재국가라고 비난하고 특히, 日本軍國主義의 통치와 스탈린의 독재통치를 실제로 체험한 동포들은 북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며, 오히려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근래에 중국과 소련의 개방화 추세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동포들에게 한국의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들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民間交流支援을 확대하고 自由往來가 조속히 실현되어야만 되겠다.

43. 미·소양국의 軍事戰略과 이른바 「신데탕트시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美·蘇양국은 치열한 軍備競爭을 해왔다. 특히 1979년 소련이 11만의 정규군을 투입하여 아프가니스탄침공을 감행한 이후 미·소관계는 新冷戰關係로 돌입하였었다. 1975년 헬싱키체제로 「나토」와 「바르샤바」동맹권간의 군사적균형이 이루어진 다음 蘇聯의 군사력은 극동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현저히 팽창하였으며, 「밤철도」의 준공은 군사력 팽창을 뒷받침하였다. 소련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여 美國은 방대한 군사비를 투입하여 MX미사일, SDI(전략방어구상) 등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을 결속시켜 對蘇군사동맹망을 강화시켰다.

이상과 같은 끝없는 군비경쟁과정에서 미·소양국의 경제적부담은 가중되었다. 미국의 연간 국방비는 대체로 3,000억달러선을 오르내렸으며, 소련 또한 1,400억 달러내외의 군사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같은 美·蘇양국의 군사비 부담의 가중을 경감시키려면 끝없는 군비경쟁에 제동을 가하는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에서 미·소양국은 마침내 이른바 「신데탕트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한편, 이른바 ‘절대무기’인 核武器를 중심으로한 군사력경쟁은 實戰에 사용할 수 없는 무의미한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면 敵과 我側의 구별없이 인류가 全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무기중심의 군비경쟁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국제정치의 한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은 월남전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통하여 각각 군사력의 한계를 실감하였다.

마침내 미·소 군사대국은 1987년 12월 7일 사정거리 500~5,000km의 지상배치 中距離核을 3년내에 전면폐기시키는 이른바 「중거리핵전면폐기협정」(INF)을 체결하고 이미 집행단계에 돌입하였다. 이 협정은 인류

軍縮史上 획기적 진전이며, 이를 계기로 핵군축이 본격화되어 미·소간에 협상 진행중인 대륙간탄도탄(ICBM) 각각 50%감축협상 마저 진전된다면 이는 실로 인류 군축사상 「혁명적」 사변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軍事大國인 미·소양국간의 신데탕트시대의 개막은 동시에 수많은 「地域紛爭」(Local Conflicts)의 종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수많은 지역분쟁은 이란-이라크戰의 예에서 보듯이 분쟁의 지역적 특수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분쟁의 이면에는 미·소 군사대국이 직·간접적으로 간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월남전에 직접 개입하였지만 소련은 월맹을 지원하였으며,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직접개입하였지만 미국은 回教叛軍에게 최신무기를 제공하였다. 미·소군사대국은 대부분의 「지역분쟁」에 이와같은 방식으로 직접·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美·蘇間 신데탕트시대의 개막은 사실상 지역분쟁의 종식을 이룩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소간 「신데탕트시대」를 맞으면서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이룩되고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군이 진행되었고, 쿠바군의 앙골라철군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범세계적 긴장완화 분위기는 마침내 이란-이라크전쟁을 휴전시키기에 이르렀다.

미·소 군사대국간 신데탕트 기운은 한반도에도 서서히 기운이 미치기 시작하는듯 하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한반도는 세계군사 전략적 요충지로서 제정러시아 이래 不凍港을 얻기위해 「南進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소련의 세계군사전략적 관점에서나, 소련태평양함대의 태평양 및 인도양진출을 「대한해협」에서 봉쇄시킨다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미·소군사대국은 공히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양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이른바 「唇亡齒寒」이란 독특한 대한반도관을 지켜온 中國의 전략관까지 겹들여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된다면 모처럼 조성된 신데탕트를 沮害할 것임으로 미·소 군사대국 등 한반도 주변세력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위에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전략문제연구소와 소련과학 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등 美·蘇의 연구기관들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美國은 북경에서 北韓의교관과 접촉을 가진 바탕위에서 미국무성의 시거 전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對美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으나 남북한 당사자간에 對話를 통하여 긴장완화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주변강대국이 保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4. 6·4 天安門사태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向方은 어떠한가?

改革, 開放政策의 推進方向에 있어 中國과 蘇聯의 差異點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경제개혁」, 「정치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反해, 中國의 鄧小平은 「경제개혁」은 추진해 왔으나 「政治改革」은 등한시 해왔다. 고르바초프는 경제개혁 보다는 오히려 정치개혁에 주력, 자유선거, 복수정당제(多黨制) 許容 등으로 政治的 民主化를 기해, 결과적으로 經濟改革을 이룩할 토대부터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나 鄧小平은 “10年前보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무엇을 더 원하는가?”며 經濟改革만을 강조하고 政治改革은 뒷전으로 미뤘다. 이에 많은 지식인 학생, 노동자,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 天安門사태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다시 단적으로 지적하면 고르바초프는 경제개혁, 정치의 민주화를 함께 추진했으나 鄧小平은 經濟改革은 해 나갔으나 ‘정치의 민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天安門사태가 터진 것이다.

6·4 천안문사태후 6개월이 지난 '89년 12월중순에 와서 비로소 李鵬總理가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뜻을 비쳤는데(89.12.14) 그 개혁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中國의 대표적인 마르크스·레닌主義 理論家이며 중국 社會科學院 首席研究員인 蘇紹智(6·4 天安門사태발생시 國外탈출. 現在 美國 위스콘신주의 마르케트大學에서 강의)는 말하기를 “西歐學者들은 鄧小平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鄧은 경제개혁은 해 왔지마는 정치사상전선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것은 鄧小平 個人의 모순인 동시에 權力을 장악하고 있는 保守強硬세력들의 모순”이라고 했다.

오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격은 두가지 면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이데올로기면이고 또 하나는 권력장악을 위한 투쟁면이다.

改革派와 保守派간의 국가운영, 국가정책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개혁을 보다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입장과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그다지 급격한 變化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입장의 차이이다. 改革派나 保守派나 改革 그 自體에 反對하는 것은 아니다. 保守派라해도 개혁과중의 보수파이며 그에 대립하는 사람들은 개혁급진파인 것이다.

中國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이데올로기면과 연관된다는 것은 개혁급진파들의 급격한 改革 개방정책은 결국은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의 후퇴 내지 소멸'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권력투쟁과의 관련면은 이번 天安門사태는 바로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등소평 명령하에 李鵬總理, 江澤民 總書記, 楊尚昆國家主席 등 保守強硬派들이 改革派인 趙紫陽, 胡啓立政治局員들을 제거시키고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이다.

中華人民共和國 建國 40周年을 맞은 1989년 10월 1일 등소평은 4大基本原則을 固守할 것을 선언했다. 즉 ① 社會主義國家 實現 ② 共產黨指導 ③ 독재 및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④ 毛澤東主義의 이 4가지 기본원칙의 固守이다.

毛澤東主義의 否定的인 면을 비판·비난해온 鄧小平이 다시 이 이데올로기에의 固守를 선언하고 나오는 것은 앞의 蘇紹智가 지적한대로 鄧小平自身の 모순임과 동시에 정치사상전선에 있어 保守強硬派의 權力장악을 위한 명분과 정통성 고수를 위한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

中國은 지금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88년부터 실시한 經濟調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89년 상반기에 25.5%를 기록, 인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수출도 극히 부진하여 '89년 6월말 現在 58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西方國의 자금동결로 4백억달러에 이르는 外債도 상환 불능의 危機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때문에 中國은 지금 긴축정책이 불가피하다. '89년 11월 6일 개막된 中國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긴축정책을 강화하자는 측과 침체에 빠진 경제의 活性化

를 위해 긴축정책을 완화하자는 派간의 黨內異見으로 對立되고 있는 실정이다.

85세의 鄧小平은 89년 11월 9일 마지막 공직이었던 黨中央委軍事委員會主席職을 사임하고 그 후임에는 江澤民總書記가 겸임하게 되었다.

비록 鄧小平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죽을때까지 실권자로서 막후 영향력은 계속 행사할 것이다. 鄧小平이 살아 있는 限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혁으로 나갈 것이며 사회주의를 벗어난 어떠한 개혁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치의 민주화도 鄧小平이 살아 있는 한 東歐의 政治民主化모형을 결코 中國內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鄧小平은 “소련과 東歐의 변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올바른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89년 10월 1일 建國 40돌 人民日報 黨기관지에서도 「역사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렇게 볼 때 中國의 개혁, 개방정책의 방향은 鄧小平이 살아 있는 限 保守強硬派가 黨權을 장악하면서 社會主義노선의 堅持下에서 漸進的 경제개혁으로 나갈 것이며 政治改革도 東歐와 같은 政治變革(共産黨 1당독재체제의 종식스타일)을 中國內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鄧小平이 建國 40돌의 4大基本原則 固守선언에서도 明白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向方은 대단히 불투명,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① 鄧小平이 내세운 江澤民총서기는 黨·軍支持바탕이 缺如되어 있는 人物이고 ② 등소평 사망후 江澤民對 楊尙昆국가주석간의 권력다툼이 露骨化할 것이며 ③ 江澤民총서기는 국제적 유대관계도 약하며 ④ 등소평은 85세 고령으로 보아 남은 영향력 행사기간이 길지 않을 것을 감안할 때 江澤民총서기는 過渡期 體制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共産圈 變革의 흐름이 ‘政治의 民主化’, ‘經濟改革’의 추세임을

감안할 때 鄧小平 보수강경파의 개혁·개방정책노선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第2의 天安門사태를 또 한번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결국 鄧小平이 사망하면 중국은 政治改革(政治의 民主化)이 일어남과 同時에 保守派내의 권력투쟁,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路線(理念)對立으로 재연되는 권력투쟁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改革派에 유리한 정세로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북한 실태

45. 북한주민의 基本權은 헌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원래 헌법상 기본권문제는 個人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권력이 이를 어떻게 충족하고 伸張시키고 제약하고 있는가를 규정하는 내용과 관련된다. 따라서 自由民主主義體制에서 基本權은 人間의 權利 또는 自由權을 중심으로 명시되고 있지만, 공산주의체제에서의 기본권은 社會主義秩序에 의해서 비로소 창조되고 그 범위와 실현의 정도는 공산당의 利益과 관련해서 명시된다.

공산주의자들의 기본권은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있는 국가 사회제도아래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사회생활은 集團主義에 기초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基本權이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중심으로 평가가 될진대 私有財產이 허락되지 않고, 個人의 權利가 全體를 강조하는 가운데서 희생된다면 공산주의 헌법에서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장식적인 의미에 불과하며,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언적」의미일 뿐이다.

○ 북한헌법에서 기본권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북한은 1972년 12월에 기존의 헌법을 고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사회주의헌법에서 기본권의 특성은 헌법 49조에 잘 나타나 있는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集團主義 原則에 기초한다”고 되어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집단주의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명시된 권리와 의무로 노동계급적 본질과 사회주의적 성격을 명백히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公民의 權利와 義務가 集團主義 原則에 기초한다는 이 헌법적 규제는,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 담보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헌법상 기본권리를 세가지로 나누어 명시하여 ① 정치적 권리 ② 사회적 권리 ③ 人身上의 自由와 權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公民의 政治的 權利」로서는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52조) ② 언론·집회·출판·결사·시위의 자유(53조) ③ 신앙의 자유 및 反종교선전의 자유(54조)가 있고 「公民의 社會經濟的 權利」에는 ① 노동에 관한 권리(56조) ② 휴식에 관한 권리(57조) ③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58조) ④ 教育을 받을 권리(59조) ⑤ 과학·문학·예술활동의 자유(60조)가 포함된다.

상기한 북한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우리의 헌법규정과 유사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 實際에 있어서는 그들의 소위 사회주의적 規範인 「재산공유제, 집단주의 원칙」과 「통제와 조직의 조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人民’의 자율권과 기본권은 있을지 모르나 ‘個人’의 基本權과 自由權·參政權, 幸福追求權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① 헌법상 宗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산주의교육과 계급의식화로 종교를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교황의 북한 방문에 대비해서 교회를 짓고 성도를 모아 예배를 본다고 하지만 전후 세대는 없고 50대이상 사람들만 모였다고 하며, 심지어 「로동신문」에서도 일체보도하지 않고 있다. ② 또 ‘人民’의 주체를 선진하면서 金日成의 주체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해 가는 것으로 ‘충실성교양’, ‘주체사상교양’이 人民보다도 首領에 대한 충성심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서 잘 입증된다.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거부된 것도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권의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이러한 자유를 인정한다면 個人의 利害관계가 직결되는 자유이니 만큼, 그들의 사회주의규범의 원칙들이 그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또 북한헌법의 특징중 하나인 「主席制」에 비추어 보아도 북한의 기본권 규정은 장식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함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主席制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김일성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人支配體制를 명문화한 것이다.

북한의 '주석제'에 대한 해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석제는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수령님을 唯一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을 구현한 것이며,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의 화목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모습 이 그대로 국가정치권력조직으로 표현된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의 주석제는 헌법에서 국가주석에게 막대한 권력을 집중시켜 놓은 것이 마치 사회주의국가체제상 당연한 것으로 美化함으로써 유일한 김일성 체제를 찬양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김일성주석체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에서, 기본권은 저들의 體制에 대해 충성할 수 있는 자유, 종교를 믿지않는 자유 이외에 個人의 기본권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북한헌법에서 표방한 기본권의 규정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규정과 유사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김일성 유일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나아가 個人主義를 바탕으로 한 개방사회에 있어서 個人의 基本權과 集團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北韓의 폐쇄체제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그 差異가 클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당국에게 북한동포의 自由와 人權保障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에 연유한다 할수 있다.

46. 북한 주민들은 言論을 통해서 알 권리를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는가?

북한의 言論, 즉 보도매체는 기본적으로 金日成 父子의 세습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이 유린 박탈된 것과 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이라든가 輿論은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여론이란 용어조차 쓰지 않고 있다. 다만 보도매체란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언론과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은 대단히 크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 생활양식을 일반화시키기도 하고 변화를 촉구하기도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 출판, 보도 등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매체를 黨의 통제하에 두어 정치 선전, 주민 政治敎化의 기능만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즉 북한의 「매스미디어」의 기능은 「집단적 선전선동자, 집단적 조직자, 집단적 감시자」로 일관한다.

金日成이 “신문, 잡지, 서적같은 출판물이야 말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제시하는 혁명 과업 실천을 위해 노동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선전·선동의 도구”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黨性에서 이탈한 매스콤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53조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처럼 규정해 놓았으나, 같은 헌법의 다른 조항들에서는 개인의 기본권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刑法도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 정보의 획득과 전달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다.

북한의 신문과 잡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출판사는 모두 黨과 政權

機關 내지는 黨의 지도 통제를 받는 기관만이 소유·운영하고 있다. 신문은 勞動黨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정권기관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대표적 일간지이며 그 밖에 「노동청년」, 「인민군신문」, 「평양신문」과 같은 정무원 등의 각 부서와 地方黨에서 발간하는 기관지들이 있다. 잡지는 黨의 기관지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노동자」, 「천리마」, 「조선문학」과 같은 정치·사회·문화 단체에서 발간하는 것들이 있으며, 주요 출판물은 김일성 저작선집과 혁명전통과 같은 金日成의 행적을 날조한 것 등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放送도 黨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신문 등 출판물들과 다를바 없다. 방송은 「政務院」 직속의 中央放送委員會와 그 산하에 道, 市, 郡 放送委員會의 일원화된 체제하에 운용되고 있다. 중앙방송위원회는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텔레비존 방송을, 그리고 지방방송위원회는 중앙방송의 중계 및 자체 방송의 편성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모든 보도매체를 관장하는 기관은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선전선동부이다. 신문 방송의 제작, 편성 및 보도 내용은 黨機關 뿐 아니라 정무원 등의 특수기관의 검열을 받는다.

북한의 모든 신문과 라디오 등 각종 보도매체는 수령과 지도자의 현명함과 영광, 당정책의 정당성만을 찬양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존 방송의 주제는 金日成 父子이며 신문의 1면은 그에 관한 기사를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모든 인쇄물은 金日成 父子에 대해 최대의 경칭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은 큰 활자체로 인쇄하고 있다. 다시 말해 金日成 父子와 그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합리화하는 표현은 무제한으로 강요하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것은 바로 「反動」으로 되어 숙청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신문 방송은 事實과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북한사회의 많은 문제점, 사건이나 사고와 같은 내용은 일체 보도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과 개방, 중국의 천안문 사태 등은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을 보도하고 있는

데, 그것은 김일성의 과거 행적과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보도내용이 바로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북한주민들의 주요 정보원은 다이얼이 고정된 가정용 라디오나 마을과 직장에 설치된 확성기인 것이다. 확성기 방송, 유선 방송체계, 라디오의 다이얼 고정은 북한 당국이 공급하는 그릇된 정보이외에는 듣지 못하게 하여 도시와 농촌에 진실이 담긴 정보가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여행을 허가제로 하고 있는 것도 주민통제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유통을 차단키 위한 목적도 있다.

북한주민들은 다이얼이 고정된 라디오로 오직 한가지 목소리, 마을과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선전선동의 목소리만 싫건 좋건 들어야 한다. 이 밖에 일반 주민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북한에서는 입과 입으로 전해지는 소리도 차단 봉쇄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 5호담당제, 인민반에 의해 적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주민은 당의 결정사항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며, 이웃간에도 서로가 내심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가족이 아니면, 당의 방침과 어긋날 때에는 시국문제, 뉴스에 관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토로하지 않는다.

북한의 일부 특권층과 간부들은 별도의 자료에 의해 국내외 뉴스를 전달받고 있으나 이들도 이를 비밀로 간주하여 전파하지 않고 있다. 항공기 조종사도 항공기에 설치된 라디오를 통해 청취한 외국 뉴스에 관해 토의하지 않는다.

현재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조선의 출판보도는 전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내 내걸고 있는 조선혁명에 부응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이는 북한의 「매스 미디어」가 뉴스의 전달이나 오락과 교양의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黨과 政權機關이 주민을 지도, 통제, 동원, 감시하는 수단을 그만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북한에서 일반주민의 알 권리가 주어진다면 1인독재체제의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7. 북한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가?

노태우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국회개원특별연설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으로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의하면서 통일조국의 미래상으로서 自由와 人權, 幸福을 보장하는 통일민주국가를 표방하였으며, 아울러 통일정책을 제의한 이래 처음으로 북한당국에게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애당초 북한정권은 이른바 김일성의 神政體制를 구축하여 40여 년의 1인독재체제를 유지시켜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의 숙청을 단행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주민의 자유와 인권과는 무관한 정권이었으며, 오늘날도 세계인권옹호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수많은 정치범과 반체제인사들이 12개 지역의 이른바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짐승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처참한 상황에서 시달리고 처참하게 죽어 가고 있다. 북한에도 명목상 각급 재판소가 있으나 이들 재판소는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권기관에 예속되어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손아귀에 틀어쥐어 있으며 특히 반김일성행위관련사건(이른바 9번사건)은 정상적 재판과정도 없이 처결되는 것이 일반적 실태이다.

한편, 북한의 일반주민은 「주체사상」의 노예로 전락되어 김일성·김정일의 전제정치에 맹종을 강요당하고 있으므로 현대적 의미의 자유와 인권개념을 북한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애당초 자유와 인권 개념은 서유럽에서 프랑سخ명을 기점으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등장된 개념이므로 민주주의 제도와 무관한 북한의 정치현실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들이다. 물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등 민주주의제도를 외관상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100% 선거참여와 100% 찬성투표가 과연 민주주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에 최경례를 하는 대의원선거장의 이색적 풍경은 북한민주주의의 실체

를 용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북한은 이같이 정치적 자유가 말살된 사회일 뿐만 아니라 현대문명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편화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숨막히는 統制사회이다. 군단위이상으로 여행하려면 증명서가 필요하였으나 최근 평양시민에 한하여 여행자유를 한정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을뿐이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현대문명사회에서 보편화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에는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노동당 및 정권기관의 선전·선동 기관 이외에 일체의 민주적 언론이 말살되었다. 문학·예술등을 비롯한 일체의 출판물도 정책의 선전물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북한에는 민주적인 집회·결사가 있을 수 없다. 며칠이 멀다하고 평양등지에서 대대적인 군중집회가 열리고 있으나 김일성神을 모시는 宗教行事와 같은 것이다. 북한은 「사료청」, 「여성동맹」등 수많은 조직으로 북한주민을 이중·삼중으로 묶어놓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조선로동당」과 김일성·김정일의 꼭두각시 집단에 불과하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구실 밑에 노동력동원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식량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배경하에서 김일성의 제기로 「食·衣·住」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북한은 「食·衣·住」문제해결을 경제건설의 제1차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30만정보간척지개간, 20만정보새땅찾기 운동은 ‘먹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입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말 순천비날론공장을 건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생활의 기초적 여건이 해결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자유나 인권문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인간생존의 기초

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으며 자유와 인권은 한낱 사치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48. 이른바 「주체사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실제로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창시하였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를 계승·발전시켰다”고 대대적인 宣傳戰을 전개하고 있다. 1982년 김일성 70회 생일을 계기로 개최된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나름대로 체계화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로 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결정한다”는 사회·역사적 원리로 구체화 되면서 사람의 사회·역사적 속성으로 ① 자주성 ② 창조성 ③ 의식성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주체사상은 “上部構造(정치, 철학, 역사, 문화 등)는 하부구조(물질적 생산 관계)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물사관을 사람중심의 사상으로 대치시킨듯이 가장하여 김일성의 창시를 과시하면서 ① 사상에 있어서의 主體 ② 정치에 있어서의 自主 ③ 경제에 있어서의 自立 ④ 국방에 있어서의 自衛라는 이른바 「주체사상의 지도지침」을 제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민생활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장하는 무소불능·만병통치의 무기로 등장되었다.

그러면 「주체사상」의 形成背景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본질을 규명해 보자. 북한은 오늘날 「주체사상」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그 창시를 1930년대 김일성의 抗日빨치산투쟁시기까지 소급함으로써 역사날조의 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김일성이 ‘주체’를 처음 거론한 것은 원래 1955년 「선전·선동일꾼대회에서 행한 한 연설」이었다고 주장하였었다. 이때는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론을 제기하면서 스탈린격하운동을 전개하기 직전이며, 동시에 「延安派」, 「소련파」의 김일성제거음모(8월宗派사건) 직전이기도 하다.

김일성은 '주체'를 내세워 이들을 「종파분자」로 매도, 전면 숙청을 단행하였다. 이와같이 주체사상은 반대세력을 숙청하여 김일성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유력한 무기로 출발하였으며, 오늘날은 김일성·김정일 공산세습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을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킨 사상의 천재”로 부각시킴으로써 결국 「주체사상」은 김일성독재체제와 김정일후계체제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주체사상은 북한주민의 勞動力을 착취하기 위한 手段으로도 기능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이른바 사회·역사적 원리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인이므로 주인답게 일하라는 것이다. 강제동원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인민대중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만이 참된 주인이 될수있다”는 「주체사상」의 이른바 「수령론」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중·소공산대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시키고, 한편으로는 이른바 「블러블가담외교」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주목할 사실은 「남조선」을 美帝의 식민지로 매도, 민족해방을 통한 민족통일의 실현이란 구호밑에 對南革命戰略의 핵심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일부 반체제세력이 「주사파」로 호칭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퇴락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이른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밑에서 오늘날 북한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非主體的인 인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명령일하에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주민은 가장 비창조적인 인간이 되었으며, 창조성이 없는 곳에서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 사업장마다 일일이 「경제선동대」가 동원되어 나팔을 불어대어야 겨우 움직이는 실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립

적민족경제건설이란 허울좋은 명분을 내걸고 세계경제발전의 추세를 외면한 채 폐쇄경제체제를 강행하고 있으니 비록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부분적으로 대외개방경제체제를 시도하여도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까닭이 없다.

다만 북한은 주체사상을 내걸고 대남선동면에서 다소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주체사상이 남북한 평화공존관계의 정착을 통한 평화적인 민족통일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의 민족사 전개에 무슨 기여를 할수 있단 말인가? 뿐만아니라 주체사상에 매력을 느꼈던 일부 좌경세력마저 그 허구성과 실상을 알기 시작한 이후로는 주체사상을 외면하고 있으니 북한의 대남전략의 수단으로서도 이제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49. 지난 40여 년 간 북한에서의 김일성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권력세습 정도는?

〈김일성의 長期執權 요인〉

김일성은 제2차 세계대전후 소련의 대극동정책의 일환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으로서 제한적인 이른바 「항일빨치산투쟁」을 하다가 1941년 일본군헌병대의 토벌에 쫓겨 소련으로 도피한후 그곳에서 태평양전쟁에 대비하여 편성된 소련첩보부대에서 활동하다가 소련에 의하여 발탁, 정권을 장악한 이래 40여 년 동안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김일성은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반대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다. 따라서 40여 년의 북한정치사는 한마디로 숙청사로 일관되었다. 북한주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토착민족주의세력의 巨頭인 조만식선생을 反託을 이유로 숙청하고 이 보다 앞서 대표적인 토착공산주의자 현준혁을 평양노상에서 백주에 테러를 감행, 처단하였다. 공산주의운동의 거물인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세력을 한국전쟁의 패전책임을 물어 숙청하였으며,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비판을 계기로 「연안파」, 「소련파」가 중심이 되어 김일성제거음모로써 이른바 「8월총파사건」이 일어나자 김일성은 기다렸다는듯이 이들을 「宗派分子」라는 낙인을 찍어 깨끗이 숙청하였다. 이어서 김일성은 1962년 이른바 「4대군사노선」실시와 더불어 이에 반대하는 군부세력을 自派(빨치산파)임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숙청하였다. 이리하여 김일성은 1970년 제5차 「로동당」대회 이후로는 북한의 정치세력을 자기에게 맹신하는 빨치산파로 완전히 일색화시켰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1972~3년경부터 김정일로의 권력후계작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김정일과 동창인 만경대혁명학원 및 3대혁명소조출신자들로 권력의 핵심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김일성이 오늘날과 같은 「神政體制」를 구축하고, 代를 이어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은 강권정치 때문만은 아니다. 교활한 김일성은 이른바 「항일빨치산투쟁사」와 「주체사상」의 날조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우선 성공한 것이다. 북한의 대표적 역사서인 「조선전사」는 총33권중 16권이하의 현대편을 이른바 김일성항일빨치산투쟁사와 김일성의 家系史로 완전히 분장시킴으로써 김일성 신격화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는 이른바 「주체사상」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창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북한을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터무니없는 정치 선전·선동이 북한주민에게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이 북한주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김일성은 북한을 유례가 없는 폐쇄사회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김일성이 「주체사상」, 「자주노선」등을 표방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북한주민을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소 양대공산대국이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을 통제할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김일성은 오히려 중·소분쟁을 역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중·소양국의 경쟁적 지원을 유도해 낼수 있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권력세습정도 및 展望〉

金日成은 그동안 共產諸國獨裁者의 權力承繼과정에서 발생한 암투, 혼란, 갈등 사례를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史上 유례없는 장기 독재자로 군림해온 자신의 死後 문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에 사로잡혀 이러한 혼란을 피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死後를 보장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한편으로는 金日成主義를 날조하고 이를 代를 이어 實現해야한다고 強辯하면서 자신을 神格化하는데 주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死後 格下를 방지하고 북한 특유의 권력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가장 믿을 수있는 방편으로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지정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확고하게 구축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리하여 1973년 9월 黨中央委 제5기7차全員會議(秘密會議)에서 長男 金正日을 후계자로 내정한후 7年餘의 3大革命小組 활동을 통한 기반구축 과정을 거쳐 1980년 10월에 있었던 당6차대회에서 金正日을 당정치국상무위원, 비서국비서, 군사위원회위원 등 중책을 맡게하여 후계자로 公式化함으로써 공산주의 역사상 최초로 父子世襲體制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80年代初부터 金正日의 권력기반이 더욱 강화되어 사실상의 북한 第2의 實權者가 되었고 김정일의 영향력은 각부문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일이 政治哲學思想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으며, 主要政策會議와 行事를 직접 주관하고 있고, 외교분야에서도 1983년 6월 中國訪問을 계기로 외교무대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여 매년 訪北하는 外交使節들을 영접해 왔으며, 1988년도에도 中國, 소련의 사절단을 직접 영접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일은 자기의 정치적 권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공장기업소, 군부대등을 現地指導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박성철, 연형묵, 오진우등 黨·政·軍의 고위관계자를 대동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방송, 신문등 宣傳媒體들은 金正日후계논리의 합리화 宣傳과 그의 영도력 찬양선전 및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같은 김정일 찬양부각 선전은 '88년 9.9절(북한정권수립 40주년 기념일)이후에 더욱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金正日 후계체제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김일성은 40여년 1人體制를 유지할 수 있었고 김정일후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김일성이 사용했던 수법들이 대내외 정세의 급변으로 오히려 체제유지에 역작용함으로써 부담요소로 돌변해 가고 있다. 일례를 든다면 김일성 獨裁體制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북조선은 사회주의 지상낙원, 남조선은 인간생지옥”이란 선동구호가 만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북한주민이 알게 되면 북한정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한체제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남북한 교류를 반대하고 더욱더 고립주의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북한의 체제유지에 결정적인 위협은 東歐등 공산권전반에서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改革·開放의 물결이다.

한편, 김일성의 고령화로 김정일로의 공식적인 권력이양이 이루어지면 김정일 政治力量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북한체제는 결정적인 도전에 직면케 될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회개방, 정보개방을 확대시켜 가면서, 국민경제생활의 향상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확산시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권력상실만을 겁낸 나머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북한정치와 북한체제의 앞날은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발적 변화에 한계가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도 변화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50.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체제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黨支配를 명시하고 있음이 공통사항이다. 그러나 個別 공산국가들은 통치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

북한 역시 중국·소련과는 달리 소련적령군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체제 기틀을 김일성집단이 인계받아 북한공산주의체제로 변형시켜가고 있으며 '80년이후부터는 金正日에게 權力을 세습함으로써 독특한 체제로 移行하고 있다.

북한의 權力構造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력구조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정치권력구조는 내용으로 볼때 支配와 服從의 구조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력구조는 權力의 핵심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權力裝置로서 구성된다. 權力核心이란 權力組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권력장치란 행정간부·상비군·정당간부등으로 구성되는 支配圈이다.

북한은 공산주의체제라는 범주에서 규정하면 프롤레타리아獨裁體制이며, 權力의 構造的 측면에서 보면 「수령」이라는 절대권력자가 그들의 上位에 있으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總體를 영도하고 있다. 이른바 首領(金日成)의 唯一的 指導體制로 되어 있다. 이를 북한은 “수령·당·대중의 일체”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共產黨이 영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行政機關은 黨의 路線과 政策을 집행하고, 黨과 大衆을 연결시키는 포괄적인 引傳帶이며 黨의 외곽단체로서 균중을 교양하고,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黨의 權威體系가 정상적인 통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프롤레타리아黨獨裁體制의 上位에 「수령」이라는 절대권력자의 존재를 설정하고 그가 독재체제의 총체를 유일적으로 움직

이며 영도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黨의 權威보다는 個人의 權威를 더욱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물론 북한은 黨規約에 “조선로동당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프롤레타리아 獨裁期間은 中·蘇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이나 소련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실시기간을 더 길게 잡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蘇聯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개조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이루어지면 과도기가 끝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中國은 소련보다 길게 과도기를 설정하여 공산주의사회전단계까지 잡았으며 여기서 ‘독재’도 없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은 더욱 길게 잡아, 공산주의 높은단계가 되어도 ‘독재’가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공산체제가 타공산국가보다 과격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바탕으로 김일성 수령을 어떻게 떠받들고 있는가? 그 명분과 논리는 무엇인가?

북한은 權力承繼에서도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승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소련은 제도화된 공산당의 “총서기”, “당서기장”의 직위를 중심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북한은 제도화된 직위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인 ‘수령’자리를 주고 받는것으로 되어있다.

북한에서 수령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즉 “노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의 최고영도자 수령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의 總體를 영도하는 최고녀수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 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首領의 뜻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人體의 녀수에 비유하여 쉽게 설명한다. 즉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녀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녀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녀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集團의 生命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됩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규정하여 북한주민은 완전히 수령의 손아귀에 의존된 것으로 좀 지나치게 묘사하고 있다. 때문에 수령에 대한 관점도 주관적으로 강조되어진다.

즉「혁명적 수령관」이란 용어를 만들어 북한주민 누구에게나「혁명적 수령관」을 갖도록 강요하고 있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뇌수가 인간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 표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식화된 관점을「혁명적 수령관」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은「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의 생명으로 간직하는 것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 품성이라고 한다.

이와같이「수령론」에 의해서 주민의 충성과 헌신의 필연성을 유도하는가 하면 首領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구조는 수령의 지도체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정치강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수령의 통치강화를 뒷받침하는 논리인 것이다.

북한은 정치를 사람을 관리하는 사회적 기능이라하며 과거에는 하부구조인 경제에 정치가 종속되었으나 이제는 정치가 경제·문화모두를 지배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가 되어도 정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억지 논리를 펴 수령체제강화를 위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51.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 실태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우상화 의미〉

공산주의체제에서 통치자에 대한 個人崇拜는 이념적으로 모순이다. 왜냐하면 黨과 階級과 人民이라는 집단적 개념이 판치는 體制이고보면 統治者1人을 英雄視하고 神格化하여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실제 상황에서는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을 「인민의 태양」이니 「중원의 별」이라고 까지 지칭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그 정도가 극단으로 치달고 있다는 데서, 그 진상을 통해서 북한내부의 一端을 파악하고자 한다.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우상화를 조장하게되는 것은 이들의 독재기반을 적어도 북한 땅에서만은 신성불가침으로 만들어 어떠한 반대세력도 경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예방하려는 저의가 있다.

이러한 우상화 획책이 북한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북한사회가 외부세계와 차단된 채 밀폐되고 이렇게 밀폐된 사회에서 생활해야 했던 북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사상개조놀음 때문에 “愚民化”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만일 북한 주민들이 개방된 사회에서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생활했다면 이런식의 金日成 神話 造作策動은 벌써 큰 저항에 부딪쳤을 것이다.

〈북한에서 우상화의 시발과 전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김일성에 대한 반대세력이 제거되고 1人支配體制의 기반이 구축된 1958년부터 었다.

1963년을 전후해서 “항일 빨치산의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책으로 나오고 우화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예컨대 어부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책을 수습회 읽었더니 삼시간에 파도가 조용해졌다는 奇蹟같은 얘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얘기들은 “백두산 정기를 타고나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전설적 영웅”, “술방울로 총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며 가랑잎 한 장 띄워 대하를 건너간다”등이 있다.

1966년부터 김일성 우상화 높음이 본격화되어 ‘절세의 영웅’이니 ‘위대한 영도자’, ‘백전 백승의 영장’이니 하는 식으로 規格化된 표현들이 난무하였고, 1969년 金日成 우상화의 ‘聖典’으로 집대성한 「民族의 태양 金日成將軍」, 「革命活動歷史」등의 책이 나온 뒤부터 「民族의 太陽」이라고 공공연히 선전했으며 「革命家の 家譜」가 출간된 이후 家系美化, 家系偶像化 단계로 점차 변해 갔다.

1970년이 경과하면서 김일성의 神格化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나갔다. 특히 金日成의 60회 생일을 기점으로 하여 나타났다.

이때에 동상들이 우후죽순같이 여기저기 세워져 지금은 무려 36,000개가 되며 제일 높은 동상은 20m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니 놀랄 수 밖에 없다.

또 주체사상을 영생불멸의 사상으로 선전하고, 「유일사상 확립 10대 원칙」(1974년)을 공포하여 우상화 교육에 치중했으며, 김일성 생일을 명절화하는 등 본격적인 우상화 조치가 나타났다.

이 10大原則은 ① 金日成主義에 의한 全社會의 一色化 ② 충성 ③ 絶對性 ④ 信條性 ⑤ 無條件性 ⑥ 統一團結 ⑦ 품모·방법·作風 ⑧ 정치적生命 ⑨ 조직규율 ⑩ 代를 잇는 諸原則을 말하며, 이들은 각기 여러개의 細則을 가지고 있다. 이 중 ③의 “絶對化”와 ④의 “信條化”는 김일성의 동상 및 초상화가 실린 모든 작품을 정중히 모시며 철저히 보위하도록 되어 있으며,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해서도 안되며 반대현상이 나타나면 투쟁할 것을 강요하는 등 神格化에로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家系偶像化가 점차 열기를 더해 간다. 그것은 金正日의 권력세습과 맞물려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시점은 김정일의 우상화의 시작이기도 하다. 특히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을 “혁명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김정숙 우상화가 점차 나타났다. 즉 회령에 사적지를

만들고, 「혁명열사 능」을 확장·미화하여 한가운데 김정숙 흉상을 자리잡아 주는 등 이상화를 촉발하고 있다.

〈김정일의 이상화 실태〉

김정일은 1963년에 「金日成綜合大學」을 졸업하고 黨組織指導部에 참여 하였고, '73년도에는 黨中央委組織 및 宣傳擔當祕書였다. 그리고 同年9월에 당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공식化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0년 이전에는 단순히 「黨中央」으로 통하였으며 '80년을 전후해서 “향도의 별”, “미래의 태양”이니 하는 표현들이 서서히 나타났으며 金日成을 모방하여 史蹟館, 學習研究室을 설치하였으며 김정일 逸話集, 노래, 그리고 「인민의 지도자」란 책을 발간하여 학습을 시키는 등 이상화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1982년도부터 김정일에 관한 偶話的 얘기들이 나타났다. “옛날에는 수령님이 축지법을 쓰셨는데 오늘날에는 별님이 땅을 넓히는 天地擴張術과 時間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쓴다는 희한한 소리를 퍼뜨리며 이상화를 자극하고 있다.

1986년을 전후해서 지금에 이르기 까지 出生地를 백두산에 근거로 조작하고 ‘김정일 꽃’, ‘정일봉’, ‘구호나무’(백두산 주변에 있는 나무에 김일성, 김정일 찬양구호를 새긴나무)를 만드는 등 김정일 이상화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구호나무’ 발굴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 방법이 유사함을 다음과 같은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름자에 「日」字를 넣어
金聖柱→金日成 : 민족의 태양
金正一→金正日 : 미래의 태양
- 「별」과 연결시켜서

金日成 : 백두의 장수별, 金正日 : 향도성(向導星)

· 혁명전적지, 사적지 조작

金日成 : 보천보 전적지, 삼지연 전적지 외 다수

金正日 : 장자산 혁명사적지, 어은 혁명사적지

· 「꽃」과 연결시켜

金日成 花 : 인도네시아에서 입수

金正日 花 : 일본 씨스오카 현에서 입수

· 「백두산」과 연결시켜

· 「출생지」와 연결시켜

金日成 : 장군봉

金日成 : 만경대(평양근교)

金正日 : 정일봉

金正日 : 귀틀집(백두산 밀영)

기타 시찰의 형식에도 김일성에게는 ‘현지지도’, 김정일에게는 ‘실무지도’로 구별한다든가. 詩 · 노래 · 小說 등으로 환영케 하는 것이 유사하다. 이외에도 비슷한 점이 얼마든지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金日成 · 金正日의 統治方法에서 “偶像化”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가를 확인하였다. 이것이 共產主義體制에서 모순과 갈등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비판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르크스 · 엥겔스는 어떠한 개인숭배도 혐오하였으며 권위숭배를 조장하는 일체를 규약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또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할 때도 스탈린이 폭력과 테러에 의해서 그의 생각에 절대 복종시키는 것은 레닌적 방법이 아니라고 규탄하였다.

또 중국의 인민일보(’80. 9. 18)에서도 “인민들이 모두 봉건황제에 충성하듯이 프롤레타리아 首領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점에서 정치적 우상화방법에 의존해서만 통치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의 정치가 얼마나 모순과 억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 더욱이 김일성수령에서 김정일수령으로 이행되는 상황이고보면 북한권력체제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알수 있다.

52. 3대혁명소조란 어떤 조직인가?

3大革命小組란 1973년 3월 14일 黨中央委 政治委員會 확대회의에서 金日成이 “사상·기술·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구호제시와 함께 黨의 經濟政策을 관철시키고, 당면한 경제과업을 달성키 위한 선봉대 역할수행이라는 명분아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기위해 공장, 광산, 농촌 등 각부문에 파견된 指導小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세 종류의 혁명가운데 특히 思想革命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상혁명의 주 대상은 지금까지 북한체제를 형성하고 이는 地方黨 및 行政·經濟 官僚 들의 낡은 사상에 두고있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조운동은 단순히 경제건설의 추진에만 그 목표를 둔것이 아니며 政治的 大變革을 목적인 것이 분명하다.

小組員들은 노동당중앙위원회, 정권기관, 경제기관, 사회단체, 과학기술 부문의 간부 및 청년인텔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조원의 수는 공장,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작은 데는 20-30명, 그리고 큰 직장에는 50명으로 되어있고 전체숫자는 4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3대혁명소조원의 전체 구성비율에서 약 90%가 黨性이 강한 대학생과 청년기술자 및 청년인텔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3대혁명소조 임무가 각급기관의 간부들 속에 만연되어 있는 보수주의, 소극성, 경험주의, 무사안일주의로 인한 經濟沈滯를 극복하자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의 最近 출판물을 보면 사회기강의 해이(법무생활 강조), 保守와 침체, 나태를 경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선봉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金日成이 1974년 1월 10일에 개최한 「전국농업대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종합대학과 농업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서

자라난 청년일꾼들이 농촌에 나가 3大革命을 도와주고 있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우리의 大學에서 자라는 청년인텔리들은 지금 농촌에 내려가 농업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 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北韓의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3大革命 때문에 농촌에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은 이와함께 “당중앙위원회에서 직접 3대혁명소조를 공장·기업소 들과 협동농장들에 내려보내서 일꾼들을 도와주게한 결과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라고 함으로써 3대혁명 소조성원들이 인민경제 각부문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3대혁명소조는 結成 15주년을 맞는 1988년 2월에 평양에서 이를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있었다.

계응태(당비서)는 報告演說을 통해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선동활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노력을 최대한 동원토록하며, 또한 落後된 과학기술향상과 경제사업지도, 관리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생산부진을 타개토록 촉구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北韓宣戰媒體들도 3대혁명소조결성 15주년에 즈음해 3대혁명소조운동의 강화를 선동하는 논조를 펼쳤는데 1988년 2월 8일자 평양방송은 3대혁명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 ‘기술’ ‘문화의 낙후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教養하고 改造하는 방법으로 적극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 北韓住民들은 共產主義人間型化 하는 데 주력토록 할 것과 또한 金日成父子 세습체제확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령과 黨을 中心으로한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일 것”을 역설했다.

그리고 1988년 2월 10일자 「로동신문」도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자」라는 題下의 사실을 통해 3대혁명소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한 가운데 소조원들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과 社會主義

과업 수행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강조했다. '88년 5월 24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200일전투에서 3대혁명소조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고 강조했으며, 5월 26일자에는 「200일전투는 청년들을 더큰 偉勳에로 부른다」라는 사설을 잇달아 싣고, “3대혁명소조원들은 김일성 김정일父子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과 자력갱생, 각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전투에 떨쳐 나서되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3대혁명소조원들이 사상·기술·문화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北韓經濟各部門 현장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指導方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어떠한 근본적인 變革을 목적인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지시, 교시, 명령 또는 소수 人員으로 구성되는 指導등의 方法으로는 黨이 구상하는 그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은 1970년대 이후부터 對外活動의 強化로 국제무대에 적극 진출하게 되었으며 공산권이외의 西方 또는 중립국 들과의 經濟·文化交流가 확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경제의 폐쇄성에서 오는 낙후성, 특히 기술적 낙후성을 깨달았고 이들과의 폭넓은 기술혁명체제를 추진해 나가자면 사상혁명을 더욱 강화하여 金日成思想으로 北韓住民을 무장시키고 기술도입을 위한 전면적인 체제정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을 비롯한 黨責任者들은 노동당이 요구하는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北韓의 老幹部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들 간부들을 改造 또는 제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革新이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金日成父子 세습체제를 유지해나가는데 있어서는 黨·行政機關 및 경제부문에 까지 成分위주로 간부를 기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하고 특히 제2차 7개년 경제계획에 이은 현행 3차 7개년 경제계획에서 예견된 經濟課業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발전과 비약을 하기 위해서는 黨性만

이 강한 노간부는 保守와 소극성, 그리고 경험주의에 사로잡혀 과감한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진취적인 청년인텔리들에게 金正日이 장악하고 있는 中央黨에서 파견됐다는 큰 권한을 부여하여 地方幹部들을 누르고 새로운 것을 대담하게 창조토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와는 달리 이들은 金父子세습체제의 정치적 전위대·근위대로 변신 운용함으로써 金正日後繼體制 구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노간부들은 물론 黨組織 및 여타 조직원들과 끊임없는 반목과 대립을 극도로 축적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53. 오늘의 북한체제는 다른 共產體制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북한은 中·蘇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지도적 지침을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共產國家와 같이 政治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主義 당의 1黨獨裁를 실시하고 있고, 經濟적으로는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와 중앙통제 경제체제를 유지하며, 社會적으로는 集團主義에 입각하여 주민을 조직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공산체제는 中·蘇, 東歐 등의 공산국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북한은 自生的 共產主義運動에 의해 成立되지 못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은 金日成이 정권을 장악한 후, 집권 초기에는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지시대로 대내외 정책을 수행했고, 스탈린의 死後에는 양자의 흉내를 내다가 점차 김일성 혁명전통이라는 신화를 창조하였다.

공산화된 공산국가들은 모두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후반기부터 각기 특유한 유형의 공산주의를 전개해 왔다. 북한은 中·蘇의 틈바구니에서 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두 공산국가의 특성이 혼합된 체도를 운영했다 할 수 있다. 같은 공산주의 理念을 추구해 왔음에도 공산국가마다 體制의 相異性을 드러낸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 ① 정치문화를 포함한 상이한 역사·문화적 전통과 국민의식면
- ② 자체 革命에 의했는가, 혹은 외부로부터 강요에 의한 혁명인가하는 공산당의 정권장악 방식의 차이와 권력구조면
- ③ 經濟的 발전 수준의 차이.
- ④ 지리·환경적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金日成의 독특한 性格이 그 체제 구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공산체제라도 그의 개인성품이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날조한 抗日 혁명투쟁의 「김일성의 神話」, 즉 허위의

혁명전통을 내용으로 한 「김일성 주체사상」이 김일성 우상화 수단으로 작용하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공산체제는 다른 공산체제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점들이 생겨났다. 북한의 정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는 없는 金日成一金正日 세습왕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자유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같은 공산진영에서도 이단시되고 있다. 北韓이 표면상으로는 마르크스·레닌主義 노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순이 많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金日成 1인 偶像化 체제이다.

북한은 전근대적인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와 神政體制를 구축하여 놓고 공산국가에서는 유독 홀로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공산국가는 모두 1당독재를 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동구의 변혁으로 공산당의 지도적위치를 포기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개인숭배에 입각한 독재를 실시하는 곳은 북한 뿐이다. 공산당의 운영원리인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제”를 시행하는 데에서도 다른 共產國家에서는 민주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북한은 권력의 1인 집중에 조금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民主란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100% 투표에 100% 찬성을 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고 한다. 中·蘇에서는 대의원이나 당 지도자 선거시 입후보자가 복수로 추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中·蘇와 동구제국에서는 국가소유와 협동소유의 원칙을 탈피, 個人所有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오히려 협동소유마저 全人民的의 소유라는 國家所有로 전환시키고 있다. 경제의 관리운영에서도 모든 공산국가들에서 개인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히며 市場經濟 원리를 도입하는데 북한은 그 逆으로 나아가고 있다.

많은 공산국가들은 사회의 개방, 대외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사회를 더욱 폐쇄화시키며 대외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거부내지는 수정

하거나 공산체제 내에서 制度의 개혁과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1930년대 스탈린주의의 教條的 공산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누적되는 부자세습체제의 모순과 경제적 곤경으로 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또 中·蘇 등 후견 공산국가로부터 오는 자극과 압력 및 동구의 변혁에서 오는 영향 때문에 비록 개방화 속도는 다른 공산권에 비해 느릴지라도 머지않아 점진적인 체제의 改革과 사회의 開放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체제붕괴의 위기에 부딪칠 것이다.

54. 北韓에서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북한공산집단은 지난 '88년 1월 26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韓國과 美國이 그들을 반대하는 전쟁책동과 思想·文化的 공세로 말미암아 정세가 더욱 긴장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같은 환경속에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革命과 建設을 전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식대로 살자’는 黨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같은 정세 아래서 “우리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수령과 黨, 대중의 혈연적인 統一團結을 공고히 다져야하며, 현재 닦치고 있는 그어떤 풍파 속에서도 主體的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政治, 經濟, 文化 등 모든 分野에서 우리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우리식이란 抗日빨치산식이며, 과거 빨치산 운동시 부하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지어는 목숨바쳐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오로지 金日成과 金正日을 위해 충성을 다 바쳐야하며 바로 그것이 우리식대로 사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北韓 全地域에서는 직장·지역별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온 거리에는 울긋불긋한 글씨로 “우리 식대로 살자”는 구호가 내 붙여졌다.

얼핏 보면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는 주체성있는 生活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 말하는 “우리식……”속에는 金日成父子 권력세습제도에서부터, 식량배급제로 굶주리는 住民生活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統治體制의 모순에서부터 부패 타락한 權力의 形態와 충성이라는 이름아래 무한정으로 強要되는 무보수 노동과 배급제 생활 등을 “우리식……”이라는 말로 合理化 시킨 것이다.

원래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 10월 黨6次大會에서 김일성이 보고연설을 통해 “主體를 튼튼히 세워 혁명위업을 완수해 나가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하고,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곧바로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 수 있으며, 우리 人民의 염원에 맞게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더 잘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근래에와서 北韓共產集團이 “우리식대로……”를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對外的으로는 소련, 중국 및 東歐 공산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급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개혁·개방의 압력을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와 있으며, 對內的으로는 89년 여름 평양집회등에 따른 外部思想의 流入으로 인한 北韓住民들의 思想的 동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정책에 따른 소련의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등은 결국 北韓으로 하여금 계속 體制閉鎖와 “우리식대로 살자”는 그들의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지난 40여년의 長期獨裁와 經濟難에 지칠대로 지친 北韓住民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구호이기 때문에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는 마치 물에 뜬 기름과 같다고 할 수 밖에 없다.

55. 북한의 대외정책 노선과 남북한 수교 현황은?

대외관계에서 한국은 開放政策을 추구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폐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연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책은 이 大勢를 거스르고 있다 하겠다. 한마디로 북한의 대외정책은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부정하고 심지어 이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변경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국제질서 밖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共產主義의 命題에 따라 국제정치와 외교를 階級鬭爭 理論에 의한 世界革命의 과정으로 보는 教條의 입장을 취함에 따라 나타난다. 金日成은 “사회주의나라들은 외교에서도 응당 계급적 원칙을 견지하여 美帝에 압력을 가하며 그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하고 규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르크스-레닌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원칙에 충실한다는 명분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의 모든 대외정책 활동은 「한반도 전체의 共產化」라는 궁극목표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즉, 북한 대외정책의 1차적 목표는 북한공산정권의 存立을 위한 기반확보와 그 유지에 두고 있으며, 그 최종목표는 “혁명의 全國의 승리”라는 표현과 같이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국제혁명역량과의 連帶性 강화에 두고 있는 것이다.

비록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이 대내외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쳐왔지만, 그 기본목표와 원칙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었다. 그런데 1980년 제6차 「로동당」대회에서 그들은 대외정책의 基本理念을 「자주, 친선, 평화」로 표방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국제정세를 “혁명역량과 반혁명역량 및 反帝勢力과 제국주의 지배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것”으로 평가하고, 對外活動의 기본방향을 “反帝 자주역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발전”과 “사회주의역

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침으로는

①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제국과의 단결강화 및 친선협조관계의 발전.

② 비동맹, 제3세계제국과의 국가관계의 발전 및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의 강화.

③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국가와의 우호관계의 형성 및 경제·문화교류의 발전.

④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시아국가와의 발전을 위한 내용과 접촉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이상과 같은 목표와 방침에 따라 미국이 우리 민족통일의 최대 장애요인이라고 선전하며, 미군철수와 韓美군사협력의 弱화를 추구하는 安保外交를, 제3세계를 상대로 한 「金日成主義」와 聯邦制를 선전하는 政治外交를, 中·蘇등 사회주의국가와 군사·경제 교류를 추구하는 經濟外交를 전개해 왔다.

남북한의 外交現況을 간단히 요약하면 북한은 제3세계, 특히 비동맹운동에서 명분상의 우위를 확보했으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외교에서는 현저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제외교와 대공산권의 「北方外交」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왔다.

북한은 우리 한국의 北方外交를 「두개조선 조작책동」으로 몰아붙이며 우리의 대공산권관계 正常化를 극력 저지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적응력이 없는 북한의 대외정책은 우리의 북방진출을 저지할 수 없었다. 1988년 10월 한국·헝가리간의 國家關係수립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면 우리에게 대해 美國의 각본에 따른 분열책동이라 비난하면서 헝가리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원칙을 위반한 배신자이며, 돈 몇푼에 팔려가는 파렴치한 나라”로 낙인을 찍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이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실례이다. 그러나 북한은 긴 안목에서 革命的인 내용보다는 實利的인 내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노선을 전환치 않을 수 없으며, 최근에 와서 개방과 적응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징후도 보여주고 있다. 남북간의 소모적 경쟁·대결외교를 지양하고 민족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協力外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해야만 될 것이다.

1989년 12월 현재, 남북한의 修交現況을 보면, 한국은 130여개국과 외교관계가 있으며 북한은 100여개국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 가운데 남북한의 동시수교국은 72개국에 이른다. 1985년 량군폭발사건으로 인해 북한과 斷交한 나라는 11개국이나 되었으나 한국을 승인하는 나라는 增加하여 1988년 7월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 무역사무소를 개설한 후 헝가리·폴란드와는 국가관계로 발전하였고, 1989년 12월 27일에는 유고슬라비아와 수교하여 전체수교국가는 1백34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에는 체코등과도 수교가 전망된다. 앞으로 한국은 「7·7특별선언」 정신에 입각한 북방외교의 성과가 나타나 더많은 공산권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해가면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할 전망이다.

56. 북한주민은 어느정도 개인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북한주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私有財産의 대상과 범위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72. 12. 27 개정 공포)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同 헌법 제2장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가 재산소유제도에 관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自然賦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國家만이 소유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集團의 소유이다. 토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이상 북한의 헌법조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임금이나 협동농장원이 노동의 代價로 받는 분배품과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消費財에 한해서 개인소유가 인정될 뿐, 건물 설비등 생산수단은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토지의 소유에 관해서는 별도로 「토지법」(1977. 4. 29 공포)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同法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토지의 私有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농장 상호간에도 토지의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유와 다를 바 없으나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차이점은 단지 經營管理와 노동대가의 支拂方式에서만 차이를 갖고 있을 뿐이다.

실제 북한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個人財産의 실태를 보면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현금)이나 분배받은 현물(협동농장원의 경우), 또는 이것으로 구입한 식량, 의복, 부엌세간, 가구, 시계, 전자제품 등 생활필수품과 개인저축금에 불과하며, 금·은 등 귀금속이나 부동산에 속하는 토지 및 주택은 물론 농기계, 자동차, 역축(소나 말) 등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북한 소유제도의 사회주의적 改造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단행하면서부터 시작되어 1958년에 이를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결과 현재 북한은 社會主義諸國중 가장 경직된 소유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198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시정연설에서는 앞으로 제3차7개년계획이 끝난 후에는 도시와 농촌, 도시근로자와 농업노동자간의 계급적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協同의 所有를 점차 全人民의 所有로 전환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소련이나 중국의 개방과 개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소유나 私營企業의 허용 등 변화추세와는 전적으로 역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경직된 소유제도로 인해 경제활동 전반에서 활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分配制度和 함께 生産性 저하의 기본요인이 되고있어서 북한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57. 북한에서의 賃金基準과 계층별 소득수준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家計所得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등이 그 주요 원천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社會主義體制下的 북한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않으며 개인사업도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계소득은 오로지 육체적·정신적 노동에 대한 代價로 주어지는 賃금이 주된 원천이 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代價支拂의 기본형태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소, 국영농목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勞賃과 협동농장원들의 「노력일」에 따르는 報酬로 구분된다. 노임은 통상 노동을 수행한 매월말에 현금으로 지불되는데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에 따라 정액임금과 도급임금으로 나누어진다.

定額賃金制는 노동의 기준량을 제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작업결과를 숫자로 계산하기가 곤란하며, 만약 都給勞動制를 적용하면 제품의 質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노동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이다. 따라서 정액임금제는 노동의 시간과 근로자들이 보유한 기술수준 즉, 기술등급으로 규정되는 노동의 질에 따라 임금액이 결정된다. 이는 한국의 월급제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북한의 정액임금제는 월급제와 시간제 임금으로 세분된다.

都給賃金制는 대체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제도이며, 도급임금제하에서의 노동 결과는 생산물의 수량이나 작업량으로 평가되는데 대체로 약 2,600여종의 작업종류에 대해 勞動基準量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이 수행한 작업실적과 이를 대비하여 임금이 결정된다.

한편, 북한은 노동의욕을 자극시키기 위해 탄광, 광산, 제염등 중노동 부문에서는 작업반우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목표의 초과달성 정도에 따라 일정한 우대임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그외에 특수노동 조건(유해노동)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정액임금이나 도급임

금)에다 加給金이나 상여금을 추가로 지불하기도 한다.

協同農場員에 대한 분배량의 결정은 별도의 농업노동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 결산분배시 응분의 생산물을 분배받게 된다.

農業勞動의 평가에는 「협동농장 기준작업 정량표」가 미리 작성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어떤 농장원의 벼수확작업에 참여하여 하루 300평의 벼를 수확하였고, 작업의 질이 95%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할 때 이 작업원이 당일의 작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노력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저 「협동농장 기준작업 정량표」에 의하면 벼수확작업은 매우 힘든작업에 속하므로 5급노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1.5노력일수로 평가받게 되어있다. 단 벼수확작업의 노동정량은1인이 하루에 200~250평을 수확하고 작업의 질이 100%로 평가되었을 때만 1.5노력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상기 노동자의 작업량은 300평이므로 50평을 초과해서 수행하였으나 작업의 질은 95%이므로 이 농장원이 평가받을 수 있는 노력일수는

$$1.5\text{일(규정공수)} \times \frac{300(\text{실제 작업량})}{250(\text{하루작업규정량})} \times 0.95(\text{작업의 질}) = 1.71\text{일(노력일 수)}$$

가 된다. 따라서 이 농장원은 하루의 벼수확작업으로 1.71 노력일을 평가받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각 작업종류별로 1년간 평가받은 노력공수를 합계하여 그 정도에 따라 연말의 결산분배를 받게된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그 결과 농민들의 작업규율이 지켜지지 않아 농업의 生産性이 둔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정액임금수준을 보면 다음표와 같다.

북한근로자 직종별 임금수준

직종 및 직급		구 분	임금(원)	비 고
사 무 원	부 장 급		300-350	당 정치위원, 정무원 및 당부장, 특급 기업소지배인, 과학원 원사
	지 방 단 위		100-150	
	일 반 사 무 원		70	
기 술 자	책 임 자 급		150-200	1-2급공장·기업소지배인 및 기사장
	5 급 기 술 자		75-80	
노 동 자	중 노 동 자		130	광부, 탄부, 제철, 제련공
	경 노 동 자		90	일반기계 운전공
	기 타		60-80	
교 원	대 학 교 수		200-250	
	일 반		80	
군 인	장 성 급		250-490	
	영 관 급		120-215	
	위 관 급		85-110	
기 타	의 사		120-250	평양산원의 경우
	배 우		200-300	인민배우, 공훈배우급

58. 북한의 물가와 북한화폐의 換率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상품가격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市場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國家計劃價格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가격의 제정방법과 절차도 가격의 「일원화체계」에 기초하여 정권 기관이 통일적으로 제정하는 가장 철저하게 계획화된 가격체계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거래에 이용되는 價格의 種類는 국영기업소 상호간에 주고받는 생산물에 적용하는 도매가격(산업도매가격), 국가의 상업기관들이 협동농장과 농장원들로부터 생산물을 사들일 때 적용하는 농산물의 소매가격, 상업망에서 주민들에게 소비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소매가격과 각종서비스에 따른 운임이나 요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거래되는 물건은 소유의 主體가 달라질 때 즉, 국영기업소나 국가상업기관이 협동농장이나 개인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는 상품으로 되나 국영기업소 상호간에 판매될 때는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북한 價格體系의 특징은 대중소비품의 값은 낮게, 기호품과 사치품 및 공급량이 부족한(제한되어 있는)상품의 값은 대중소비품 값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가격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식량이나 된장, 간장 등 기초식료품과 작업복, 비누 등 대중생활품의 가격은 실제 생산원가보다 낮은 값으로 공급되고 있는 반면, 외출복이나 시계, 구두, 가전제품 등의 가격은 생산비와는 관계없이 엄청나게 높은 값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消費生活 여건상 특징은 가격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공급량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서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생활품의 양은 「공급카드」에 의한 배급기준 범위내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물건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는 없다.

이상의 物價體系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북한에서의 화폐기능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돈이 있다고 하여도 「량권」이 있어야 식당에서 밥 한그릇을 사먹을 수 있고, 국영상점에 물건이 공급되어야 內衣 한벌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장마당」(원래는 농민시장임)에서 암거래 되는 물건의 값은 실제 배급가격보다 수십배 내지 수백배 비싼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인데, 쌀 1kg의 암거래 시세는 25원으로 배급가격 8전과 비교하면 무려 300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에 대한 개념도 공식적으로는 國定價格이 상향조정될 때 총체적인 상향조정의 정도가 인플레이율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상품의 供給量에 반비례하여 외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인플레이가 만연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 북한화폐의 換率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의 환율은 公定換率(기준환율) 즉, 북한이 국정가격체계를 기초로 산출한 환율과 대외무역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상업환율(무역환율)은 각각 다르게 발표되고 있다. 1988년의 경우 공정환율은 1\$(美貨) : 1.02원(北韓貨)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무역환율은 1\$(美貨) : 2.15원(北韓貨)이 적용되고 있다.

북한은 對外去來에 있어서 외국화폐에 대한 원貨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고 북한주민들의 외화소지 및 외화상점 이용을 통제하는 등 외화관리 목적으로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중앙은행권과는 별도로 소위 「外貨兌換券」(무역은행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제국의 화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푸른색깔, 자본주의국가 화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붉은색깔의 외화태환권을 교환해 주고 있다고 한다.

經濟開放化 이후 중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외화태환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외화태환권과 중국 인민폐는 공식적으로는 1:1의 가치를 갖도록 한 것이나 실제로는 인플레이가 반영되어 외화태환권과 인민폐간에 가치가 엄청난 차이로 암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화폐 역시 외화태환권과 중앙은행권사이에는 조만간 새로운

암거래 시세가 형성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1988년 현재 북한원화와 한국원화의 환율을 계산해보면 貿易換率을 적용하면 북한 1원은 우리 돈 340원에 해당되며, 基準換率을 적용하면 북한 1원은 우리 돈 약 735원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생필품 가격

구 분	품 목	단 위	가 격
식 량	쌀	1kg	8전
	밀	"	8전
	콩 · 팥	"	7전
	옥수 · 수	"	6전
육 류	쇠고기	1kg	7원50전
	돼지고기	"	7원50전
	닭고기	"	4원55전
조 미 료	간장	1ℓ	18전
	된소	1kg	20전
	소금	"	15~20전
주류및담배	소주	1병	2원50전
	삼주	"	8~16원
	주주	"	1원
	담배(금강산, 황금별)	1갑	1원20전
의 류	신사복	1착	115~300원
	동내의	"	35원
	Y샤쓰	"	16~40원
	화학생복	"	45원
기타공산품	자동차	1대	160원
	디오(북한제)	"	250원
	흑백TV	"	350~600원
	선풍기(북한제)	"	40~75원
	녹음기(외제)	"	350~1,200원
	냉장고(북한제)	"	250~400원
	세탁기(북한제)	"	150~280원

59. 최근 북한의 産業構造와 연간 경제성장을 및 대표적인 생산시설은?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국민총생산액에서 각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시화 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각 산업부문별 국민소득구성과 같은 구체적인 통계를 발표한 자료는 없으며, 국민소득을 생산적인 접근방법으로 정확히 추계해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간산업별 구조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다만 1987년도 북한 GNP 추계과정에서 분석된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북한의 全體産業生産(GNP)을 100으로 했을 때 광공업과 건설부문은 64.5%, 농림·수산업은 19.3%, 서비스산업은 16.2%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기초로 판단하면 북한은 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나, 3차산업이 극도로 낙후되어 있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한 단계에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도산업사회는 1차산업보다 2차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2차산업보다 3차산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단계로의 발전과정을 걷고 있다.

1988년 북한의 실질 經濟成長率은 3.0%로 전년도의 3.3%에 비하여 0.3%가 낮아졌다.

북한의 공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生産施設을 살펴보면 먼저 발전소는 북창화력발전소(시설용량 160만kw), 수풍발전소(시설용량 70만kw), 평양 화력발전소(시설용량 50만kw)등이며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는 위원발전소(당초 100만kw 목표), 태천발전소(80만kw 목표)등을 들 수 있다.

製鐵工業에 있어서는 김책제철(선철 126만톤, 강철 140만톤), 황해제철(선철·입철 105.5만톤, 강철 124.7만톤), 강선제강 등인데 현재 김책제철 공장은 제2단계 확장공사로 압연시설을 확장중에 있고 제3차7개년계획 기간 중 강선제강에 새로운 200만톤 생산능력의 제강시설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주요제련소는 남포제련, 단천제련, 문평제련, 흥남제련 등이 연, 아연, 동, 금, 은 등을 제련하여 일부제품은 수출전략 상품화하고 있다.

북한의 기계공업 중 대형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은 북중기계, 낙원기계, 대안중기계 등이 있으며, 기술수준은 낮으나 소형발전설비, 화학공장설비, 대형산소분리기, 1만톤 프레스 등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 工作機械를 생산하는 공장은 만경대공작기계, 희천공작기계가 대표적인 생산공장이며, 내수용의 각종 범용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NC공작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은 미약한 단계이다. 기타 수송기계공장으로는 청진조선소, 남포조선소에서 2만톤급 화물선과 3,500톤급 어선을 생산하며, 승리자동차공장에서 트럭을,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 8축전기 기관차를, 금성트랙타공장에서 농업용 트랙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化學工業에서 정유공장으로는 승리화학(웅기 정유)과 봉화화학공장이 각각 연간 200만톤과 150만톤의 정유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흥남비료, 해주인비료, 2.8비날론공장 등이 비료와 합성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제3차7개년계획 중에는 순천비날론공장(비날론 10만톤능력), 사리원카리비료공장 등의 건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멘트공장은 순천시멘트, 승호리시멘트, 2.8마동시멘트, 해주시멘트 천내리시멘트 등이 있으며 1989년에는 서독에서 설비를 도입한 상원시멘트 공장이 가동되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이며耐火벽돌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샤크링카는 단천마그네샤크링카 공장이 대표적인 시설이다.

기타 광산으로는 무산과 은율의 철광산, 검덕의 연·아연광산이 북한 굴지의 광산들이다.

60. 북한의 경제규모 평가결과에 있어 우리 정부기관과 외국기관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국의 경제력이나 총량규모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흔히 國民所得推計가 이용된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용하는 국민소득의 개념과 사회주의국가에서 사용하는 국민소득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資本主義國家들의 국민소득지표에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GNP),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 : NNP), 협의의 국민소득(National Income : NI), 그리고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 등의 제개념이 있으며 이 중 GNP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 社會主義國家들에 있어서는 사회총생산액(Gross Social Product : GSP) 및 국민소득(National Income : NI)의 개념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國民所得은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협의의 국민소득(NI)과는 역시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상품수송과 같은 생산적 용역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부문을 비생산적 활동으로 취급하여 국민소득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資本에 대한 이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변형된 형태로 사회순소득, 또는 생산수단 가치에 포함하는 등 애매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하에서 사용되는 국민소득 概念의 相異로 인하여 북한의 국민소득을 GNP 개념으로 추계한 결과는 국내외의 각 연구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추정되기 마련이다.

또한 북한은 폐쇄된 社會體制와 통제된 情報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경제통계가 충분하지 못하며, 정치 宣傳的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여 일부 발표된 통계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가 많아 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박약하다. 社會主義社會의 이러한 특수성은 소련 예산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조차도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기 이전에는 발표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발표한 통계에 대해 북한 GNP를 추정하는 각 연구기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기본 視角과 기초통계의 선택여하에 따라서 그 추정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화폐단위로 추정된 GNP는 다시 國際比較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통화 즉 美달러화로 환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북한경제의 특징상 상품가격이 국가계획기관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는 計劃價格으로 되어 있으며, 화폐의 기능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국화폐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도 서방과는 다르다. 북한은 현재 상업환율(무역환율)과 공식환율(기본환율) 등 複式換率制度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중 공식환율은 실제 구매력이나 화폐교환 비율과는 관계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예로서 1987년의 경우 북한원화의 對달러 상업환율은 1불:2.14 북한원인데 비해, 공식환율은 1불:1.02북한원으로 그 차이는 2배가 넘는다. 따라서 각 기관이 추계한 북한의 GNP가 북한원화 기준으로할 경우 같은 값으로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율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상호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국내연구기관들의 북한 GNP 推計作業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수가 비교적 용이하고 일관성이 있는 북한의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북한개념의 국민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GNP와의 개념상 차이를 조정하여 북한 원화 표시로 된 GNP를 추계한다. 그 결과를 다시 북한의 상업환율을 적용하여 美불화로 환산된 북한 GNP를 최종적으로 추정해 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물론 추계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분배·지출 등 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기초자료의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분배접근 방법으로서 북한이 이용하는 「시초소득총화법」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데 분석자에 따라서는 다소 변형된 모델을 개발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北韓 GNP평가에 대한 논쟁은 결국 북한사회가 보다 개방화 되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북한 스스로가 공개하기 전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며, 따라서 국내외의 어떤 기관에서 추정한 GNP가 북한경제 현실에 가장 접근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국제사회에 비친 북한경제 실상들은 북한 스스로가 주장하거나 발표한 통계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낮은 국민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1987년에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개관」이란 책자에서는 1986년의 북한 1인당국민소득(북한개념)은 2,400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통계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학자들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중국보다도 오히려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결같은 증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발표치는 宣傳목적의 허위통계로 볼수 밖에 없다.

61. 「合營法」 실시 이후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북한은 1984년 9월 8일 「合營法」을 제정 공포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조달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등소평이 집권한 이후 중국이 추진한 현대화 정책의 성과와 특히 1979년 7월 1일 중국의 제5기 2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하게 된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의 5년간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은 '70년대 후반에 추진되었던 6개년계획 기간 중에 서방제국으로 부터 借款導入과 무역신용을 이용한 자본 도입이 추진된 바 있으며, '80년대에는 「합영법」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일본, 서독, 핀란드 등 서방제국의 기업들과 합작투자 유치를 위한 교섭을 전개한 바 있으나 성과를 올리는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서방자본의 유치에 실패한 원인이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制度的 보장과 같은 환경의 미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합영법」을 제정 공포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합영법」 발표 이후 100여건에 총 5억 2천만불이 해외로부터 북한에 투자되었고, 그 중 70건은 在日 조총련과, 10건은 서방기업과의 합작이며, 나머지 20건은 사회주의제국 및 제3세계와의 합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확인되고 있는 합작 투자 기업은 1989년 9월말 현재 총 53건이다.

하기 도표를 분석해 보면 연도별로는 1985년 6건, 1986년 8건, 1987년 12건, 1988년 8건, 1989년 19건 등이며, 국별로는 일본의 조총련 상공인과의 합작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소련과는 9건, 중국, 몽고 및 재미동포와 각각 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88년 11월 정부원에 합영공업부를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합작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1988년 「7·7 대통령 특별선언」에서 한국은 서방제국의 대북경제협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서 북한이 서방제국에 지고 있는 채무문제가 해결될 경우 서방 기업
의 대북진출은 점차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北韓의 合作실적현황

(84. 9~89. 9)

연 도	대 상 국	내 용
85	조총련(日本)	○ 낙원백화점(지방31개 체인)
"	"	○ 대동강자동차수리공장
"	"	○ 창광산호텔커피숍
"	시에라레온	○ 프라스틱제품생산합작(북한은덕상사)
"	佛	○ 양각도호텔(47층규모)
"	브르키나파소	○ 광업합작회사
86	조총련	○ 운산금광개발
"	"	○ 조·일우호의료회사(김만유병원)
"	"	○ 평양골프장
"	"	○ 조선국제합영총회사
"	"	○ 모란봉합영회사(피복)
"	"	○ 은하수식당
"	"	○ 금광개발합작
"	시에라레온	○ 금광개발합작
"	가 나	○ 전통의약제조합작
87	조총련	○ 대동강피복공장(모란봉합영회사)
"	"	○ 동해관식당
"	"	○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1천만불규모)
"	"	○ 원산애국편직물공장
"	"	○ 남산합영회사
"	"	○ 이와노프·희천국제연합체(조정공작기계 생산)
"	"	○ 고리끼·희천공작기계공장(후라이스반생 산)
"	"	○ 천해양식공동기업소(다시마)
"	"	○ 어업공동기업소(동해해저자원개발)
"	잠비아	○ 농장합작
"	中國	○ 평양냉면관
"	탄자니아	○ 농업합작회사

(1989. 9. 현재)

연 도	대 상 국	내 용
88	조총련	○ 평양실크합영회사(생사·건직물생산)
"	"	○ 청천강합영회사(희천제사공장)
"	"	○ 동대원피복공장(모란봉합영회사)
"	헝가리	○ 식당
"	소 련	○ 의류생산합영 - 능라도피복공장등 60여개공장 참가
"	"	○ 농업생산합영 - 소 고르샤롭스키 소포호즈국영농장
"	蒙 古	○ 코크스탄광공동개발합작
"	中 國	○ 도문강식당(약 80만불규모)
89	조총련	○ 신흥합영회사-전자제품
"	"	○ 명전합영회사-의료기구
"	"	○ 조선합영은행(20억엔규모)
"	"	○ 평양포장재-수출용포장
"	"	○ 함흥화학공장
"	"	○ 덕산건설기계합영회사-중장비수리
"	"	○ 광포합영회사-오리털가공생산
"	"	○ 창광합영회사-식당
"	"	○ 조선만풍합영회사-돛자리등 경공업품생산
"	"	○ 단밤연구소
"	"	○ 식당
"	폴란드	○ 금광석합영회사
"	中央阿	○ 내화벽돌생산공장
"	蒙 古	○ 성계가공공장
"	소 련	○ 모란봉식당
"	"	○ 동의학센터
"	재미교포(美國)	○ 고려상업은행(설립인가)
"	"	○ 금강산국제개발회사(")
"	"	○ 금강산국제관광회사(")

62. 최근 북한의 外債 현황과 무역실태는?

1988년 현재 북한의 총 외채 규모는 1987년 보다 8.7%가 증가한 52억불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권역별로 보면, 對西方 외채가 전체의 52.5%에 해당하는 27.3억불이며, 대공산권 외채는 47.5%인 24.7억불로, 대서방 외채가 대공산권 외채보다 많아 해외자본의 대서방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외채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1970년대 후반의 제1차 연체파동 이후 점차 증가되어 1980년을 정점으로 1984년까지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고, 1985년 이후 또 다시 외채규모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배경을 분석해 보면 1975년 제1차 연체파동 이후 북한은 서방제국으로부터 새로운 차관이나 延拂輸入이 어렵게 되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 운동의 전개와 보유하고 있던 金의 매각등을 통해 延滯額의 원리금 상환에 주력한 결과 1984년에는 23억불 수준까지 감소되었다. 그러나 80년대초 국제석유파동, 1차금속제품의 국제가격하락 등 국제경제여건의 악화와 새로운 군사장비 도입 등으로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어 1985년 이후 다시 증가되었다. 특히 1986년 이후 美 달러화의 평가절하로 북한의 對西方 決済通貨 중 일본 「엔」화 및 서독 「마르크」화가 폭등, 달러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북한 외채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도별 외채현황

(단위 : 억불)

연도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서방권	22.2	17.8	16.4	15.6	11.3	13.4	22.3	28.0	27.3
공산권	12.4	13.4	12.6	11.9	11.7	15.6	18.3	19.8	24.7
합계	34.6	31.2	29.0	27.5	23.0	29.0	40.6	47.8	52.0

북한 외채의 절대규모가 그리 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경제의 元利金 償還能力 부재에 있다고 하겠다.

1988년 현재 북한의 GNP에 대한 外債 비중을 보면 25.2%로 같은해 한국의 19%(총외채 기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외채상환에 필요한 외화는 1차적으로 국제수지(經常收支)흑자로 마련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借款이나 援助 등 새로운 외자의 도입으로 이미 도입되었던 외채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計劃經濟體制의 폐해와 경제운영 및 管理能力의 부족으로 도입된 외화가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수출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북한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에서 노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 국제금융기관이 조사한 국제신용도에 의하면 북한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에 랭크되고 있어서 악성債務國으로 낙인 찍혀 있으며, 1988년 중에도 스웨덴은 북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평양주재 자국 대사관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연도 구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수출	13.6	15.6	12.1	15.3	13.2	13.4	13.5	15.1	16.7	19.9
수입	14.3	18.6	16.2	17.0	15.1	13.9	17.2	20.6	23.9	31.6
무역수지	-0.7	-3.0	-4.1	-1.7	-1.9	-0.5	-3.7	-5.5	-7.3	-11.7

1988년 현재 북한의 貿易規模는 수출입 합계가 51.5억불 수준이며 무역총액 중 68%가 대공산권 무역이고 나머지 32%가 비공산권 무역이다. 제3차7개년계획과 더불어 북한의 무역은 급격히 對蘇 의존적으로 변화하

고 있는데 1987년 현재 소련과의 무역은 북한 전체무역액의 49.6%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수출상품은 광산물과 농수산물 등 1차산업제품을 비롯하여 공산품의 경우에도 가공도가 높은 제품보다는 선철, 강철, 비철금속(연, 아연) 등 1차금속제품과 시멘트, 마그네샤크링카 등 가공도가 낮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한경제의 산업생산력과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다.

63. 현재 추진중인 「제3차 7개년계획」의 내용과 전망은?

1987년 4월 21일에 개최된 북한「최고인민회의」제8기 2차회의에서 북한은 1987년부터 추진될 「제3차 7개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동 계획에 앞서 추진된 「제2차 7개년계획」은 당초 1984년을 목표년도로 하였으나 1985년 중앙통계국 발표를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 것과는 달리 사실상 목표에 미달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기간 종료후 2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1987년부터 현행 「제3차 7개년계획」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제2차 7개년계획」실패의 근본적인 요인은 물론 동 계획수행에 필요한 資本과 技術導入의 차질에서 비롯된 것인 바, 이는 '70년대 후반의 對西方 延滯波動으로 당초 시도했던 대서방 자본·기술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소련이나 중국도 자체의 경제개발 및 현대화계획 추진으로 對北 支援이 불가능하였던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첫째, 기존공장·기업소의 技術改造를 추진하여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1980년 10월 북한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바 있는 소위 「사회주의경제건설 10大展望目標」를 달성한다는 것이며, 둘째,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여 계획기간내에 주민들의 「食·衣·住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과업 달성을 위해서 기간중 국민소득은 연평균 7.8%, 공업총생산은 연평균 10%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성장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를 포함한 주요 산업별 물량계획 지표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제3차 7개년계획」의 발표내용상의 特徵을 분석해 보면, 첫째, 과거의

제3차7개년계획 주요생산 및 건설목표

구 분	6차당대회에서 제시했던 10대진망목표	3차7개년계획목표	비 고
발전량	1,000억kwh	1,000억kwh	당초목표불변
발전능력추가조성	-	수력400만kw	당초목표불변
석탄생산능력	1억2,000만톤	1억2,000만톤	당초목표불변
강철생산능력	1,500만톤	1,000만톤	당초목표하향조정
유색금속생산능력	150만톤	170만톤	당초목표상향조정
시멘트생산능력	2,000만톤	2,200만톤	-
화학비료생산능력	700만톤	720만톤	-
화학섬유생산능력	-	22.5만톤	-
합성수지생산능력	-	50만톤	-
직물생산능력	15억 m	15억 m	당초목표불변
알곡생산	1,500만톤	1,500만톤	당초목표불변
수산물생산	500만톤	1,100만톤	당초목표상향조정
간식지개간	30만정보	30만정보	당초목표불변
양식장면적	-	10만정보	-
농업기계화	-	100정보당트랙타	-
주택건설	-	10~12대	-
		매년15~20만세대	-
인구1인당1일육류공급		179 g	
물고기		400 g	
쌀		1되	
식용유		30 g	
과일		300 g	
사탕		100 g	

계획에서 경제성장목표를 최소한 연평균 10%이상으로 설정한 것과는 달리 7.9%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둘째, 技術落後를 의식하여 과학기술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기간중 국민소득의 3~4%를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貿易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평균 18%의 무역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는 기본과업에서 아직도 주민들의 「食·衣·住」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6년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주요산업별 생산능력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제3차 7개년계획」의 주요부문별 生産 및 建設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시설능력을 2.3배 내지 4.5배로 확장해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북한이 6·25이후 1986년까지 33년간 경제건설에 투입한 資本총액보다 많은 금액을 7년동안에 동원할 수 있어야 목표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분석에 의하면 계획기간중 연평균 2.6~4.0%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와 같은 비중의 군사비지출이 지속될 경우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GNP의 21~30% 수준까지 가능하나 역시 자본부족이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의 최대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계획2차년도인 1988년 북한의 실질 經濟成長率은 전년도의 3.3%보다 다소 둔화된 3.0%에 불과하여 출발부터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북한은 1988년 2월부터 9월까지 소위 「200일 전투」란 經濟動員運動을 전개한데이어 9월이후에도 「새로운 200일 전투」를 강행, 1989년까지 지속하였다.

64. 「협동농장 決算分配방법」이란 어떤 것인가?

협동농장에서의 결산분배란 “농업의 협동적 경리(경영)에서 개인소비 몫의 분배과정을 동반하는 연간 사업의 결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공장이나 기업소의 경우는 決算과 分配를 따로 분리시켜 하고 있으나, 협동농장경리(경영)에서는 농업생산의 특수성에 따라 분배를 결산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풀이하고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分配몫을 결정하는 방법은 협동농장의 현물 및 현금총수입 중에서 국가납부와 생산적 지출(생산비)을 먼저 공제한다 음, 협동농장 자체의 공동축적기금과 공동 소비 基金을 추가로 공제한 후 남은 부분을 협동농장원들이 각자 일년간의 작업에 참여한 「노력일」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결산분배는 농장원들의 총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소유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동농장의 토지 및 생산수단은 국유와는 달리 協同的所有로 구분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노력일」이란 농장원이 자연적 시간개념에 의해 작업에 참가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노력일」계산기준, 즉, 「협동농장 기준작업 정량표」에 의해 평가된 노동일수를 의미한다. 「노력일」의 산정 방법은 「북한에서의 임금기준과 계층별 소득수준」에서 이미 예시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본 문항에서는 결산분배 절차와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협동농장의 연말 결산분배 시기는 통상 추수와 탈곡이 끝나게 되는 11월 이후에 실시한다.

決算 內容은 농산물의 국가고시가격(국정수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협동농장 연간 총생산액, 연간 지출된 생산비의 목별명세, 협동농장원들이 연간 가득한 「노력일」총수 및 분배량 명세가 포함된다. 이때 작성된 결산서는 「郡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의 결산심의회에서 하달된 비용산정

원칙 및 목별 비용규모 결정에 의한 것이며 다만 형식적으로는 농장원 총회를 통해 결산하게 된다.

결산서의 내용에서 분배 몫이 결정되기 이전에 공제되는 항목과 비중을 보면, 생산비는 총생산액의 28.7~42%, 종자대 2~3%, 사료대 0.7~1%, 비료대 2~4%, 농기계작업료 7%, 관개사용료(수리비)7%, 농기구 구입비 10% 등으로 되어있다. 공동축적기금이란 협동농장 자체로 추진하는 시설확장기금을 말하며 총생산액의 10%이다. 사회문화기금 10%, 원호기금 3% 등도 공동소비기금으로 생산비와 함께 공제된다. 따라서 연간총생산물(혹은 생산액)중 공제몫의 비중은 55~60%가 되고 나머지 40~45%를 가지고 각 농장원에게 분배하게 된다.

농장원에 대한 분배량의 결정 방법도 세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① 기본적인 분배, ② 작업반우대제 실시하에서의 분배, ③ 분조도급제 적용시의 분배 등이다.

기본적인 分配方法은 국가계획목표 속에서 각 협동농장이나 수행해야 할 생산목표를 90%이상 달성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개인 분배몫을 결정한다.

$$\text{개인분배량} = \frac{\text{협동농장 총생산량} - \text{총공제량}}{\text{전체농장원의 노력일 총수}} \times \text{농장원 개인의 연간 노력일수}$$

만일 作業班優待制가 실시될 경우 국가계획목표를 90%이상 달성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개인분배 몫을 결정한다.

$$\begin{aligned} \text{개인분배량} = & \frac{\text{기본분배 몫으로 돌려진 분배 총량}}{\text{전체농장원의 노력일 총수}} \\ & + \frac{\text{작업반우대 몫으로 돌려진 분배총량}}{\text{해당작업반 총 노력일 수}} \times \text{개인의 연간 노력일 수} \end{aligned}$$

分組都給制를 실시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개인 분배몫을 결정한다.

$$\text{개인분배량} = \frac{\text{기본 분배 몫으로 돌려진 분배총량}}{\text{재 평가된 농장원 총노력일 수}}$$

$$+ \frac{\text{작업반우대 몫으로 돌려진 분배총량}}{\text{재평가된 작업반 노력일 총}}$$

$$\times \text{분조원 개인노력일 수} \times \frac{\text{분조계획노력일}}{\text{분조전체 노력일 실적}}$$

이 식에서 재평가된 勞力日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재평가된 노력일 수} = \frac{\text{노력을 실제 투입하기로 계획된 일수}}{\text{노력을 실제로 투입한 실적일 수}} \times \text{노력일 총수}$$

이상의 개인분배몫 결정시에 있어서 만약 생산계획목표에 90%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기본분배분에서 5~15%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협동농장 작업관리에 작업반우대제나 분조도급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협동적 생산에 따른 생산의욕상실 및 이에따른 생산성저하를 탈피하기 위해 물질적 유인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5. 穀種別 食糧作物 생산현황과 수급사정은?

1987년 현재 북한의 총 경지면적은 214만 정보에 달하며, 이 중 논이면적은 64.4만 정보, 밭은 149.6만 정보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밭 면적 중 과수원과 공예작물 경작지, 경사지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100만 정보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발표된 농업통계에서 작목별 파종면적이나 작목별 생산실적과 같은 구체적인 통계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곡종별 식량작물 생산현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북한이 발간한 「조선개관」이란 宣傳자료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서 재배되는 주작물은 벼와 옥수수이며, 정보당 생산량은 논벼 7.6톤, 옥수수 6.5톤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984년의 알곡(조곡) 총생산량은 1,000만톤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동 자료의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3차7개년계획(1987~1993)의 기본과업이 주민들의 「식·의·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986년 이후 북한은 식량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소련, 중국, 태국, 몽고 등으로 부터 쌀, 밀, 콩 등을 긴급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1988년 추수기 이전의 4개월간은 전국적으로 잠곡외에 쌀배급이 전면중단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88년 10월에는 북한산 쌀 1kg에 중국산 옥수수 2.4kg을 물물교환 한다는 협정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88년 현재 북한의 곡물生産量은 1987년 보다는 5.2% 증산된 것으로 평가되어 평년작 수준을 회복, 521만톤(정곡기준)을 생산하였고, 이 중 쌀 생산량은 209.9만톤, 옥수수 250.3만톤, 기타, 감자 고구마 등이 60.8만톤 정도 생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성과 배급기준량을 중심으로 북한의 基本糧穀 소모량(정곡기준)을 계산해 보면 연간

435만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여기에 종자용, 사료용, 식품 및 공업원료용 곡물과 감모량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수요량보다 훨씬 부족한 실정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外貨의 부족으로 매년 소량의 쌀을 기아수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식생활은 잡곡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

金日成은 식량증산이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이미 한계에 달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농경지의 확장이 첩경이라는 판단하에 1980년 노동당 6차대회에서는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 20만정보의 유희지개간 등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서해안일대의 간석지개간에 주력하고 있다.

66.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황과 관련기술 수준은?

북한은 '70년대에 소련의 지원으로 평안북도 영변지역에 소규모(4천 kw급)의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여 가동중에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1980년부터 같은 지역에 새로운 研究用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1985년경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새로 건설할 연구용 원자로의 정확한 규모나 그것이 북한의 독자적인 기술과 자재로 건설된 것인지 소련의 지원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核安全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주변의 공업용수공급여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규모는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1985년 12월 당시 정무원총리 강성산이 소련을 방문하여 朝·蘇간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同 협정에서 소련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중에 44만 kw급 원자력발전설비 4기를 북한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건설실적은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북한은 소규모의 연구용원자로 이외에 대규모 발전용 원자로를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나 핵물리 분야의 연구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음이 사실이다. 즉 북한은 소련의 「두브나」 핵물리연구소에 많은 수의 학자와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으며 이들이 영변의 연구용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남북간의 軍事的 대결과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여건속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核武器를 개발할 能力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핵무기 非擴散협정(N.P.T)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핵폭탄을 획득하거나 제조하지 않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으나 국제원자력위원회

(IAEA)와는 핵안전협정을 아직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기존 연구용 원자로의 핵폐기물은 전량 소련이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서방언론에 의하면 북한은 영변에 핵 연료 재처리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이시설은 북한의 자체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북한의 핵개발 관련 동향은 문 37을 참조)

67. 소련과 중국의 對北韓 경제원조 실태는?

소련과 중국의 對北 經濟援助는 6·25전쟁 이후 경제복구 및 초기건설 단계에서는 무상원조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장기저리차관등 유상원조 형태로 바뀌어 왔고, 최근에는 相互經濟協力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나 '60년대 이후에도 '50년대 후반에 도입하였던 원리금의 상환을 일부 면제해 주는 등 무상원조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소의 대북 軍事援助에 있어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70년 대 후반 제2차7개년계획 이후 소련의 대북경제협력 현황을 보면 소련은 북한이 6개년계획 수행과정에서 지게된 對外債務의 변제를 지원하기 위해 약 5억루블의 차관을 연리 2%의 조건으로 제공한 바가 있으며, 2차7개년계획 기간중에도 8개의 주요공장 신설과 9개 공장의 시설확장이 소련의 지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무상원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플랜트 수출과 기술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차관 및 「콤포넨세이션」형태의 合作을 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콤포넨세이션」형태의 合作은 소련이 플랜트 원자재 또는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북한은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정량을 소련에 공급함으로써 북한이 도입한 시설이나 물자 및 기술의 대금을 償還하는 형태인데, 물론 과거에 소련이 지원한 대북차관의 원리금도 동시에 상환하는 조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차7개년계획 기간중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되거나 시설이 확장된 대동강축전지공장, 평양소형전동기공장, 평양에너멜선공장, 김책제철의 냉간압연공장 등은 이러한 조건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물론 이 때 소련으로 공급하는 생산물은 수출통계에 포함된다.

한편 이러한 경제협력 이외에도 소련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는

그 가격이 일반적인 국제원유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일종의 경제원조로 볼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차7개년계획 기간 중에도 소련은 총176만kw의 원자력발전소(44만 kw급 4기)를 포함한 19개 건설대상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한바 있는데 이는 1985년 12월 소련과 체결된 「朝·蘇간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지원 협정」에 의거하고 있다. 동 협정에 포함된 주요 건설대상 사업을 보면 상기한 원자력발전소와, 동평양에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 마그네샤크 링카공장, 두개의 종합방직공장, 두개의 방송국, 김책제철소 제강능력 확장, 안주지구 탄광의 생산능력 확장,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베아링공장의 시설확장, 대륙붕탐사 지원 등이다.

소련과의 經濟協力관계가 제2차7개년계획에서 부터 긴밀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최근 中國의 對北 支援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자체가 70년대 후반부터 현대화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지원의 여력이 없는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석유에 대해서는 국제가격보다 훨씬싼 값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소련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 석유수출량을 보다 증대시켜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시계추와 같은 外交관계를 지속해 온 것은 軍事關係와 함께 中·蘇의 대북경제협력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중·소의 대북 원유수출은 양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中·蘇의 對北 경제협력 면에서 볼 때 향후 북한의 對蘇 밀착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68. 북한의 인구정책과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를 통해 인구정책이나 신뢰성 있는 인구통계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간헐적으로 발표한 자료들은 전체 주민의 평균수명과 영아사망율, 산모사망율 등은 이미 선진국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사전에 의하더라도 북한인구는 “우월한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인구가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등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1946년 총 인구는 925만명이었고 1959년에는 1천만명을 넘어섰으며, 최근에 발간된 「조선개관」에서는 1986년의 총 인구수를 1906만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986년의 북한인구수는 국내연구기관에서 추정한 2,034만명 보다는 128만명이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역시 북한의 통계당국이 밝힌 공식 통계가 아니므로 보다 장기적인 확인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구증가추세를 분석해 보면 1950년대 중반까지는 당시 사회여건상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율로 거의 균형을 유지해 오다가 1956년부터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1960년대까지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956년에는 3.4%, 1960년에는 3.8%, 1965년에는 3.4%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65년부터 인구증가율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1972년부터는 인구 抑制政策이 실시됨에 따라 2.5% 수준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북한의 인구정책을 분석할 경우 6·25이후 1960년대까지는 엄격히 보아 인구정책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후의 「베이비붐」과 경제복구 및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多産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결과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1년 「社勞靑」6차대회에서 金日成은 여성노동력의 동원과

인구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한 두가지 목적으로 결혼연령을 남자는 32세, 여자는 27세로 늦출것을 지시함에 따라 1972년 부터는 본격적인 인구제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이 인구억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60년대 1차7개년계획의 실패와 식량증산의 한계로 인해 인구부양에 대한 압박이 증가되는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80년대의 북한인구 증가율은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986년의 2.2%수준에서 1988년에는 1.6%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개관」에서 발표된 1986년의 북한인구를 공식적인 통계로 가정할 경우 그간 국내 연구기관의 북한 인구추정에서 나타난 인구증가율은 실제보다 다소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월남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인구억제정책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原因은 여성들의 노동력동원으로 인해 可妊女性들이 스스로 多産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중노동에 참여해야 하며 가사일과 육아를 동시에 맡아야 함으로 다산을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나갈 경우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69. 이른바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란 무엇인가?

1977년 9월 5일 北韓勞動黨 제5기 14차 全員會議에서 발표한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란 金日成이 종래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분야에서의 관리 및 운영지침을 발표한 「교육강령」으로서 “社會主義教育學原理, 교육기관에 대한 黨의 指導등 전교육부문에 있어서의 향후 政策的 方向을 제시하는 교육사상, 이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불멸의 교육총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金日成이 과거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 교시와 명령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5個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사회주의교육의 原理」, 제2장 「사회주의교육의 內容」, 제3장 「사회주의교육의 方法」, 제4장 「사회주의교육의 教育制度」, 제5장 「교육기관의 임무와 役割, 教育事業에 대한 지도와 방조」로 되어있다.

이 「테제」에 나타나 있는 教育政策上의 基本方向을 간추려보면 教育理念과 目標은 北韓住民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하여 共產主義的 새 人間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견지하여야 할 原則으로서 ① 黨性, 노동계급성의 구현 ② 主體의 수립 ③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④ 社會主義國家의 교육사업에 대한 組織, 진행,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직후 여타의 모든分野에서 소련식을 모방했듯이 教育分野에서도 「소비에트교육학」을 직도입하여 교육에 적용해 왔는데 1960년대에 와서 「소비에트 교육학」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復古的인 「마르크스·레닌」의 교육이념으로 되돌아 간 바 있으며, 1970년대초부터는 소위 北韓版 「社會主義教育學」이라는 것을 만들어 써 오다가 이를 이론적 기초로 하여 마침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제정, 공포하여 북한 교육의 획일화를 이룩, 同「테제」公布日을 교육절로 제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1988년 9월 4일에는 당시 총리 이근모를 비롯한 教育部內 대표들이 모여 中央紀念報告大會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자리에서 부총리 정준기는 “은社會의 主體思想化가 전면에 나선 새로운 現實은 人間改造 사업을 다그쳐 社會主義, 共產主義건설 위업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갈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전체교육부분 종사자들에게 金父子에 절대 충성하는 後備教育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수령과 黨에 끝없이 充實하고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선 主體型의 共產主義革命家로 양성하기 위해 혁명전통교양, 당정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 애국교양”등 政治思想教育을 더욱 강화하라고 독려했다.

한마디로 말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란 金日成父子세습체제에 맹종하는 人間型과 共產主義體制의 우월성만을 맹신하고, 好戰的이고 기계적인 人間型을 만드는데 그 主眼을 두고있는 人間鑄造지침서에 지나지 않는다.

70. 북한의 대학생 선발방법과 교원양성제도 및 고등교육현황과 김일성종합대학의 실태는?

〈大學生선발 방법〉

대학생 선발을 위한 추천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등중학교 졸업시 학교장의 추천이고, 다른 하나는 軍 또는 職場에서 추천하는 방법이다.

대개의 경우 대학생선발 2개월전에 각급고등중학교, 직장등에 대학별 推薦人員數를 할당해주고 추천받은 대상자 중에서 자유경쟁시험으로 선발토록 되어있다. 대학진학추천시 통상 學力보다 出身成分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인력관리상의 모순이 많다는 비난이 일자 1980년도부터 「教育委員會」가 주관하는 대학입학자격고사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매년 3월(入學 5個月前)에 해당년도 졸업예정자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입학자격고사에 합격하고도 軍 또는 工場·企業所·의무복무기간중의 軍 또는 직장의 「대학진학추천위원회」가 출신성분, 당성, 정치조직생활의 성적등을 종합평가한 후 다시 市·郡과 道·直轄市 大學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해당 대학의 입학시험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선발기준은 ① 黨性を 고려한 출신성분 1/3 ② 政治組織生活評點 1/3 ③ 시험성적 1/3의 비율로 평가되는데, 실질적으로는 黨의 추천이 결정적이며 학과의 임의선택은 불가능하고 오직 黨의 人力養成計劃에 의하여 학과가 배정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발기준은 어디까지나 북한에서 말하는 核心階層이나 基本階層에 해당되는 것이며 적대계층에는 대학입학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教員養成制度〉

북한에서는 인민학교에서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자를 교원이라고 통칭하는데 소위 11年制 義務教育實施에 따라 이에 요구되는 교원을 충당하기 위해 各道마다 2個의 사범대학과 2個의 教員大學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범대학중 第1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교 고등반교원을, 第2사범대학에서는 中等班教員을 양성하며, 第1, 2教員大學에서는 유아원교양원과 人民學校教員을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범계 대학은 교육위원회의 보통교육부에서 장악하고 있다.

한편 大學教員은 교수, 부교수, 상급교원, 교원 및 助教員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우리의 碩士과정에 해당하는 3년제과정의 研究院, 博士과정에 해당하는 2년제 博士院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연구원과 박사원을 다마쳤다고 해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論文이 政務院 직속의 「學位·學職授與委員會」의 심사에 통과해야만 된다.

그리고 上級教員까지는 大學評議會의 의결을 거쳐 교육위원회의 고등교육부장의 내신 인준을 받으면 승진되나, 부교수와 교수는 各各 學士學位나 博士學位 소지자로서 해당 전공분야에서 1年以上 근무한 후 정무원 직속의 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신 및 정치적 成分이 가장 중요시된다.

북한에서 교원의 역할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共產主義者로 키우는 職業的 革命家”로 보고있기 때문에 教員의 선발과정이나 승급에서 出身成分과 黨性이 대단히 중요시 되고있다.

〈高等教育現況과 金日成綜合大學〉

북한의 高等教育制度에서 특이한 것은 金日成綜合大學을 제외한 모든 大學이 單科大學으로서 일종의 전문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하여튼 북한측 주장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는 235個의 大學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金日成大學을 제외한 이들 단과대학은 우리 종합대학의 전공학과에 해당된다.

이와같은 현상은 북한의 고등교육의 目的이 全人의 人間養成을 지향하는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의 교육과는 달리 金日成父子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맹종하는 人間,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현장기술자, 또는 직능인의 양성에만 大學教育의 目標을 두고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金日成종합대학은 정규의 교육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정무원의 직속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김일성종합대학이 북한의 大學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同大學의 관리운영, 교수내용과 方法, 學生活動 등은 다른 大學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현재 정무원내 副部長급 이상 간부의 약 1/3이 김일성종합대학출신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에는 12개學部 50여개 學科에 10여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으로는 「조선로동당 투쟁사」,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혁명력사」, 「김일성의 勞作과 黨政策」, 「마르크스 레닌의 철학, 정치경제학」등의 政治思想教育 위주의 과목과 외국어 등 일반과목 및 전공과목, 군사학으로 편성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여러 類型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가령 연구지도의 상황에서는 師弟관계이지만 정치사회활동에 있어서는 同格 내지는 逆의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점이다.

71. 북한의 문화정책방향은 어떠하며, 소위 ‘思想革命’, ‘文化革命’이란 무엇인가?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3장(문화)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며(제35조) 文化革命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제36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復古主義의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키고(제37조)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제38조)”고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 人間으로 키우며,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는 북한 문화정책의 實際는, 주민들에게 노동당의 선전 선동의 파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쟁심과 계급의식을 부식 또는 고취하여 體制 歸屬性을 확보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을 <群衆文化事業>이라고 부르고 있다. 김일성은 노동당 제5차대회 총화보고 연설 또는 문학예술인들 앞에서 “우리의 문학예술과 모든 문화사업은 인민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인민들에게 투쟁의 무기로 服務하여야 한다. 군중을 教養改造하는 데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안되며 선전선동만으로도 안된다.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들인 소설·시·연극·영화·음악

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다 동원하여야만 균중을 교양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균중문화사업」이란 바로 集團主義의 공산주의인간개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북한의 文化政策의 範疇는 단지 학술·예술·체육·언론·교육 등 어떤 특정의 文化的 領域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심지어는 경제분야의 생산활동까지도 문화정책분야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 밖에 가족에 관한 정책, 청소년 사회화정책, 언어정책 나아가서는 法意識의 문제에서 정치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 북한의 문화정책은 ①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주민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②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全面的으로 확립한다는 일반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핵심적으로는 절대적인 목표, 즉 金日成 神格化와 그 權力의 세습화에 의한 獨裁強化를 지향하는데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정책은 그만큼 統合的이고 권력의 정치목적과 密着되어 集團主義의 조직동원을 企圖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思想革命〉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사상혁명이란 사람들의 認識을 공산주의적 가치관으로 改造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사상혁명을 통해 과거 사회제도의 思想殘滓와 생활습성 등을 청산케하고 공산주의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상, 정신적 여러 특징과 가치의식, 품모 등을 확립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김일성은 1970년 11월 노동당 5차대회에서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영역에까지 자본주의를 終局的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階級鬭爭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노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사상혁명을 강력한 사상투쟁과 공산주의 교양으로 달성코자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思想革命을 통하여 인간의 價値意識을 뜯어 고치기 위해 북한주민들에게 끊임없는 사상사업(즉 정치교육)을 반복하고 있다. 즉 오랜 역사적 전통과 민족 고유의 생활환경에 의해 형성된 주민들의 價値觀을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의식을 扶植시키기 위하여 教化하고 있다.

또한 자라나는 世代들에게도 이와같은 注入式 方法으로 공산주의적 가치관을 教化함으로써 청소년들의 思考를 획일화하여 그들의 판단력과 분석력을 집단주의적 조직생활에 적응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사상혁명을 1970년 노동당 5차대회부터는 기술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3大革命」의 하나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니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改造하는 사상혁명은 가장 우선해야 하며 사회주의제도가 성취된 후에도 人類未踏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은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繼續革命과 獨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文化革命〉

북한에서 말하는 文化革命은 이른바 노동계급의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의 하나로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生産文化와 生活文化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근로자들에게 기술문화지식을 보급시켜 사회주의문화를 창조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의 意識構造를 완전히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 “사상혁명과 같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고 그 社會에 相應한 인간의 품성이 형성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야 할 혁명과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상검토와 정치적 숙청을 한 바 있는데, 이 검토사업을 문화혁명이라고 지칭한 일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북한의 政治와 文化의 밀착관계를 나타내는 斷面이기도 하다.

72. 북한주민의 신앙·종교생활 실태와 종교단체 활동현황은 어떠한가?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54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反宗教宣傳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주민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느냐고 반문하게 된다. 본래 信仰은 인간정신생활의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유는 인간 각자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당국이 그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거나 부여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에도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종교선전의 자유」는 북한 當局의 反宗教政策을 명문화 한 것으로 北韓住民의 종교생활이 말살되고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지난 1985년 9월 한국측의 고향방문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우리 기자들이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종교·교회·절”등을 아느냐고 묻자 그들은 그 말 자체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서 다시한번 종교말살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기자들은 북한에도 그들 나름의 종교가 있다고 증언했다. 그것은 북한주민들에게 8·15이후부터 오늘까지 그들을 지배하여 온 김일성을 숭배케 하는 「金日成崇拜教」라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서 「金日成 神格化」운동이 종교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전략과 개방화 추세에 따라 國際的 連帶性 강화의 필요성 때문에 종교말살 정책을 다소 수정하여 종교를 선전상 逆利用하는 방향으로 僞裝된 宗教活動을 점차 적극화하는 경향이 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등 기존 종교단체가 재등장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조선천주교인협회」('88. 6.30결성)를 추가하여 名目上 4개의 조직이 있으나 상층부에 중앙기구가 있을 뿐 하부조직이 없다. 더구나 敎役者나 信徒數.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기독교도가 5천명 또는 1만여명이라는 말도 있으나, 그 이외에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명목상의 종교단체들이 처음 재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대 南北對話시기인데, 이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활용정책을 모색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몇가지의 주요활동 사례를 예시하면 1972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평양 본회담에 자칭 기독교인 김성률(조선민주당부위원장)과 강장수(조선천도교 청우당부위원장)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것을 비롯해서 1979년 2월 조선기독교도연맹 등 종교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의 1·23성명(전민족대회 소집을 위한 남북회담 개최요구)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의 종교단체가 국제적 공인을 얻기위해 國際宗教團體에 가입을 시도하기도 했고, 각종 국제 행사에 참가하여 선전하는 등 적극적 활동양상을 보여왔다.

1974년 8월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에 加入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측이 교회와 신자수, 성직자의 현황 등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 이유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76년 7월 일본 東京에서 개최된 「아시아 기독교평화회의 제4차회의」에서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1982년 6월에는 몽고에서 개최된 「아시아 불교도평화회의 제6차회의」에 참가하기도 했다.

WCC가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해외동포 종교인들의 招請을 적극화함과 동시에 1985년 11월에는 WCC국제부장 다이난·코시 목사(인도인)일행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등 종교선전에 주력하였다. 1986년 4월에는 미국 NCC 소속 김인식, 이승만, 손명결 등 3명의 교포 목사와 로버트·스마일리 목사 등 7명을 초청하기도 하였고, 1986년 9월에는 북한기독교도연맹

대표단(고기준목사 등 4명)이 WCC국제위원회 주관 세미나에 참석하여, WCC주선으로 한국측 대표단(5명)과 스위스 글리온에서 최초로南北 기독교인의 대화를 가졌고 1988년 11월에도 제2차회합을 실현하여 공동성명 등을 채택하였다.

1987년 6월에는 평양에서 개최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특별차료회의」에 로마교황청 대표(베르텔로대주교와 한국인 장익신부)를 업져버 자격으로 초청한 바 있으며, 1988년 4월에는 로마교황청 부활절 미사에 북한대표단 7명이 초청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1983년부터는 성경과 찬송가집을 대량으로 발간하여 선전용 도서관이나 서점에 비치하는 한편 해외교포들의 모임에 대량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에도 1988년 5월23일(佛紀2532年) 석가탄신일을 맞아 묘향산 普賢寺 등 각지 사찰에서 記念法會를 북한정권 수립이후 최초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84년 3월에 美國에 거주하는 高鍾玉(마태오)신부의 가족방문을 허락했던 북한은 바티칸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왔는데 1988년 6월 30일 평양에서 「天主敎人協會」를 결성했다고 선전했다. 평양방송은 “지난시기 공화국 북반부에 천주교인들의 단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여 천주교인들을 대변하는데서나 교회의 발전을 이룩하며 각국의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 연대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일정한 제한성이 있었다”는 등으로 협회결성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협회의 결성을 계기로 향후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자유와 교인간의 연계와 단합을 도모하며 世界의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의 종교활동은 일반 신앙인의 자율적인 것이거나 지하에 잠복했던 종교인들의 부흥 재건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국제적 비난과 韓國의 종교계를 의식하고, 국제적 개방화 추세에 대응한 폐쇄체제의 조직화이며, 국제적 연대를 위한 북한당국의 제도권 내에서의 새로운

적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북한이 통일전략의 기본문서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국통일 이론과 남조선혁명”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立證된다.

“현시기 남조선에서 종교인들과의 統一戰線은 반파쇼민주화의 정치적 목표를 그 기초로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이 정치적 목표 밑에 광범한 하층신도들을 통일전선으로 묶어세우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그들을 각성시켜야하며 敵我를 가려낼 줄 알고 상층종교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종교를 이용하려는 내외 원수들의 간계를 짓부수면서 다른 근로인민과 함께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도록 하여야 한다”(p.114)

1989년에 천주교의 「세계성체 대회」나 불교의 「한강연등제」, 기독교의 「평양복음화 대회」에서 보여준 북한측의 태도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즉 북한측은 대규모의 종교적 집회나 접촉은 원치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인들은 통일논의, 대북교류, 대북선교 등의 論議나 활동 속에서도 북한의 宗教政策이 의도하는 바를 바로 아는데 노력하여야 되겠다.

그러나 평양에도 1988년 11월에 改新敎의 교회와 天主教의 성당이 최초로 건립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對北宣敎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할 뿐이다.

73. 북한의 보건의료정책과 그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사회주의헌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무상치료제도의 鞏固한 발전, 豫防醫學의 방침 관철, 의사담당구역제 실시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보호와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선전하고 있다.

<무상치료제>

1952년 1월20일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로작발표」 이후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에서 「보건사업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無醫村의 근절과 무상치료제 실시를 계획한 바 있다.

무상치료제 실시의 實態를 살펴보면 일반주민들은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명목상의 월급에서 매달 ‘사회보장비’라는 금액을 1%씩 공제하는 등 여러가지 구실로 기본임금의 10%이상이 공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宣傳과 다른 것은 노동자 및 사무원의 扶養家族으로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약값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치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도시의 병원으로 移送되었을 때는 치료비를 지불해야만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간이진료소 또는 일반진료소에서도 담당구역이외의 주민들을 치료했을 때에는 치료비를 받고 있다.

더구나 黨·政權機關 등의 간부와 가족들은 치료창구가 달라서 고급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비해, 월남자가족 등 이른바 敵對階層은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고가의 약품은 쓸 수 없으며, 市·區域·郡병원 이상의 보다 좋은 병원에는 입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방의학적 방침>

예방의학이란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하자는 것으로서, 북한

이 여기에 주력한 것은 1956년 경부터이다.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게 된 背景은 그 당시 劣惡한 사회보건환경에서 연유되었다. 휴전후 3년간 계속된 흉작으로 주민들은 영양실조가 되어 각종 疾病이 만연되었다. 그러나 빈약한 의료시설과 약품을 가지고서는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이리하여 북한 당국은 保健問題에 관한 일련의 對策을 취하였는바 보건위생의 기본방침이 예방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울러 위생검열을 철저히 하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건관리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流失을 미연에 예방하려는 데 1차적 목적을 두었으며, 당시 의사와 간호원 등 의료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하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해진 것이었고 또한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다.

현재 북한에서는 질병예방사업이 “사회주의 의학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적극 선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보건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全國的, 全社會的인 事業”으로 추진된다고 주장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展開하고 있다.

〈의사담당구역제〉

1964년부터 각 도시에서는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의 의사담당구역제와 탄광, 광산에서는 직장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 되었는데, 이 제도는 豫防醫學的 方針과 관련된 것으로 각 의사가 맡은 책임구역에 나가서 위생, 보건, 접종, 건강진단 등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이 제도는 노동당 제4차대회(1961년)이후 실험하여 왔는바 대개 1명의 의사가 4~5개 작업반규모(200~300명)로 구역을 맡아 진료하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순회진료제도이다. 담당의사가 금요일까지 소속병원에서 근무하고 토요일 오후에 한하여 담당구역에 나가 치료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1명의 의사가 200~300명의 주민을 한나절에 진료해야 되니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는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질병의 예방적인면에서 그 나름대로 利點이 있으나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의사들이 책임을 면하기위해 虛僞報告를 한다든가 하여 질병발생을 은폐하려는 것 등으로 나타나며, 주민들이 각자의 의사에 따라 의료기회(의료기관·의사·약품 등)를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東醫學〉

북한은 동의(한방)치료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동의치료를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은 휴전후부터이며 그 치료기관도 중앙에서 里까지 체계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병원마다 약초를 책임재배토록 하여 洋藥 대신 漢藥에 의한 치료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북한이 동의학 발전에 힘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부족한 의료시설 및 의사를 대신하여 재래식 방법인 민간요법으로 건강관리에 효과를 거두자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러한 土俗的인 민간요법 9천여건을 수집 정리하여 1965년 보건성 명의로 출판한 바도 있다.

〈의료기관〉

직할시와 도단위에는 시·도 중앙병원인 대학병원 1개와 그외에 결핵병원 등 전문병원이 있다.

평양에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의과대학병원, 평양시 제1, 제2병원, 구강병예방원 등은 비교적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제일교포의 헌금으로 건립했다는 김만유병원과 외국의 의료기계를 도입하여 시설한 평양산원은 북한이 對外的으로 선전하는 대형 의료기관이다.

市·郡단위는 산업지역인 경우 3급 공장 기업소에는 산업병원(4급이하에는 산업진료소) 1개씩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반 시·구역·군단위에는 시립병원·구역병원·군인민병원 등이 1개씩 설치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는 2~3개 동마다 종합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里單位에

는 진료소를 두고 있다. 그것을 ㅁ 인민병원으로 개편하였다고 1974년 11월에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1~2개 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규모면에서도 의사 1~2명이 배치되어 외상치료 등 초보적인 치료와 투약을 하는 정도이다.

74. 평양의 시가지 건설이 잘되어 있고, 살기좋은 곳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인가?

북한당국에 의해 '72년 '혁명의 수도'로 선포된 평양은 총면적 약 2천8백평방km로 서울(6백5평방km)의 4배가 넘지만 도시화된 지역은 5%내외에 불과하며 인구는 해방직후의 약5배인 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평양시는 '사회주의 모범도시'로 한다는 이유로 북한사회의 발전상과 김일성 장기집권을 위한 이상화 시설물 건설과 외모상 전원도시로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별대상거주구역'으로 선정해 놓고 타지역주민에 비해 특혜를 주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최근에 관광사업이 비생산적이라는 종전태도에서 벗어나 발전상을 선전하고, 주민의 사상교양도 강화하기 위해 상징조작물을 대량건설하고 있으나 평양등 일부지역 이외에는 이러한 시설 또한 보잘것이 없는 실정이다.

평양의 시가지 건설은 '89년 7월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를 겨냥해서 '축전도시 평양'의 '대건설'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평양의 도시건설은 이번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6·25전쟁후의 전후복구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고 '70년대초 남북적십자회담시기부터 남한을 의식하여 도시개발에 착수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나 특히 현재의 특색있는 도시건설의 기점이 된 시기는 '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색있는'이라는 지적은 그것이 북한권력의 세습체제구축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의 직접적인 기획 및 지도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진행과정이 어떠한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로동당」 제6차대회(1980년) 선물로서의 '기념비적 대건조물': 그해 10월에 개최된 노동당 6차대회를 위해서 돌격전으로 건설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평양산원과 창광원이다. 평양산원은 당초 산업재해병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산업재해병원으로는 외국인에게 보여줄 것이 못되니

좋은 인상을 주는 산원으로 하라'는 김정일의 일갈로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김정일 70회 생일에 '충성의 선물'로서 기념비적 대건조물(1982년) : 노동당대회가 끝나자 당내 제2인자의 지위를 확보한 김정일이 '우리 당'의 명의로 '82년 4월의 김정일 70회 생일을 목표로 더욱 맹렬한 '충성의 선물'운동을 전개, 그중에서 평양에 건조한 '기념비적대건조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주체사상탑,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병상관(보통강변의 스케이트장), 청류관, 평양제1백화점, 문수거리, 모란봉경기장 확장 등.

(3) '수도(평양)낙원화를 위한 건조물('83~'85)' : 충성의 다리, 만경대 유원지 건설·확장, 창광거리 제2단계공사, 평양제1고등중학교, 개선청년 공원, 낙원교와 낙원거리정비, 만경대의사당, 해방탑, 대성산혁명열사능 확장, 평양구강예방병원, 우의탑, 고려호텔, 낙원백화점, 양각도 국제호텔 착공 등('85년은 '해방40주년', '당창건40주년'으로 그 기념행사를 위해 노력동원 돌격전을 전개)

(4) '축전도시화'를 위한 '수도대건설'('86~'89) : 양각교를 비롯한 많은 교량, 광복거리를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 건설(입체교차로와 지하도 포함), 안골체육촌, 실내경기장, 양각도축구장, 능라도 5·1경기장, 중앙동물원 대확장, 중앙식물원 확장, 청년호텔, 류경호텔, 동평양대극장, 국제영화관, 평양국제공항, 위성통신기지, 국제기자회관 등 이른바 '축전대상 중요건설물'이 260개소이며 그중에서 '기념비적 대건조물'이 100여 개라고 하니 놀랄만한 대역사라고 하겠다.

이것을 처음에는 '88년 9월의 '공화국 창건 40주년'행사까지 완성할 목표로 돌격전을 전개했으나 상당부분 달성하지 못하고 '90년까지 끌고있는 형편이다. 그것도 외관은 완성된 듯하나 내장까지는 손도 대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건설동원에 의해서 경제전체가 희생되어 물자의 결핍과 정부

예산이 非生産的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체면’과 외관을 중시하며 ‘세계제일’의 ‘기념비적 대건조물’을 狂的으로 선호하는 ‘김일성과 김정일형의 취미’는 만족될는지 모르나 이러한 권력세습체제 확립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 강행하는 건설이 주민들의 살기좋은 곳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도시환경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체제의 차이」와 연관되며, 도시의 외관과 주민의 실생활 내용, 즉 얼마만큼의 自由스럽고 풍요로운 생활인가를 생각할때 비록 평양에 고층아파트가 다소 있고 공해가 적다고 하여 ‘살기좋은 곳’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다.

75. '89년도 평양축전 개최가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과 이해득실은 무엇인가?

평양축전(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북한정권이 서울올림픽의 성과를 크게 의식하여 약 45억달러(87억달러로 추산하는 외신도 있음)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북한정권수립 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로서 이 행사를 통해 對內的으로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체제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일시적으로 기여하고 김정일의 역량을 과시하였으며 폐쇄체제인 북한의 주민들에게 체제의 우월성을 착각하도록하여 김일성·김정일부자에 대한 충성심 제고에는 기여하였으나, 과도한 재정소모와 비생산적 노력동원 강행으로 경제계획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자유·개방思潮의 침습과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대한 욕구증대의 계기가 된 것이다.

對外的으로는 평양시가지의 건설상과 친선 문화행사 부각으로 폐쇄·테러수출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反제국주의 행사를 주도하여 비동맹내에서 북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미수교국 참가단 유치에 의해서 관계개선여건을 어느정도 조성하였으며 해외 친북한교포의 결속을 도모하고 친북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보여지나, 재일조총련 교포들을 적극 동원하여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진행상의 혼선과 중국 천안문유혈사태에 항의하는 일부 참가단의 시위 및 북한의 人權문제 제기 등으로 축제 분위기가 크게 흐려지고, 서방권은 물론 일부 공산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이슈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76. 북한의 軍事組織體系와 군사전략은 어떠한가?

북한의 군사체계는 「로동당」조직을 통한 政治지도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軍事지휘체계로 二元化되어 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주석」은 「전반적 무력의 총사령관」,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동시에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게 되어 있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 首位로서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사업을 지도”하며,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석인 김일성은 북한무력의 명실상부한 최고 통수권자이다.

북한의 「로동당」내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단위의 당위원회에 「군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내에는 「주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사업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인민무력부」이며 부장1명, 부부장5명을 두고 있다.

「인민무력부」의 소속하에 조직되는 「인민군총정치국」은 군대내 각 단위의 「정치부」등 정치기관을 통하여 군대내 당정치사업을 조직·지도하고 있다. 「인민무력부」 산하에 실질적인 군령권을 행사하는 「총참모부」가 있고, 총참모장 1인, 부참모장 6인을 두고 있다. 북한의 인민군은 지상군, 해군, 공군을 「총참모장」이 총괄지휘하는 단일통합군 체제이다.

인민군의 편제는 「총참모장」 예하에 전후방의 15개 군단과 해군사, 공군사, 포병사, 기계화사, 평양방위사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비병력은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이 있다. 교도대는 3급이상의 공장 및 기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중 군제대자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규군 편제에 준하여 조직하였으며(17세~40세) 노농적위대는 41세~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다. 붉은 청년근위대는 고등중학 고등반 5~6학년 남녀 학생들

(14~15세)로 조직되며 학교단위별로 중대~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다음, 북한의 軍事戰略은 통상 「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총력전략」 그리고 「배합전략」의 네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선제기습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전략적 기습선제공격으로부터 비정규적인 武裝特攻部隊에 의한 전술적 기습선제공격 등 다양한 개념이다.

「속전속결전략」의 핵심은 機動力인데, 북한은 군의 현대화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항공기, 미사일, 전차 등 정규군의 기동능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있다. 한때 김일성은 “100일전쟁 10일전투 및 3일점령”등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하기도 했다. 한국의 심장지대인 京仁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리적 근접성은 이 전략 채용을 합리화하는 변함없는 요인이 될것이다.

북한의 총력전략은 군사와 정치전의 결합, 군사와 경제의 결합, 군사와 외교전의 결합, 군사와 심리전의 결합 등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김일성은 소위 현대전+유격전, 정규전+비정규전 개념의 배합전략을 정립하여 이를 한반도실정에 맞는 이른바 “주체적 전략”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는 集中과 分散의 배합, 正規戰과 비정규전의 배합, 소부대활동과 대부대활동의 배합, 즉시적 반격전과 연속타격전의 배합 등 다양한 우발사태에 신속성있게 전술, 기동, 전력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북한이 그들의 군사전략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사적 중점과업은 첫째, 주력부대의 전진배치 즉, 종전에 주로 平·元線 북방지역에 배치된 공격주공부대를 그선 이남지역으로 전진배치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둘째, 북한 지상군의 전선돌파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속도전」과 「선제기습」의 달성 능력을 제고시켰다. 셋째, 세계에서 유례없는 9만여 명의 훈련된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레이더에도 쉽게 탐지되지 않는 280대의 AN-2 경수송기 확보와 美휴즈사제작 500MD형 헬기 87

대의 밀도입 및 그간 다량건조한 소형 잠수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 특수부대 요원들의 침투수단 및 방법을 다양화 시켰다. 넷째, 무기체계 및 부대구조를 변화시켜 놓았으며 그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입체적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이른바 「5~7일 작전」을 목표로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77. 북한은 이미 인민군 10만명을 감축했다고 주장하고 군사비도 줄여 편성했다고 하는데 군사력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이 그들 인민군 10만명을 감축했다는 주장은 1987년 12월 4일에 발표된 이른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 이 보도는 “인민군 각 군종, 兵種들에 1987년 12월말까지 10만명의 장병들을 제대시켜 사회주의 건설 초소들에의 진출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히고, “미국과 남한당국은 병력축소로 생긴 무력불균형의 공간을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하며” 그들 정부가 제기한 군축협상에 호응할것을 촉구 했다.

이와같은 병력감축주장은 1987년 7월 23일 소위 「한반도에서의 단계별 군축실현을 위한 다국적 군축협상제의」를 그들 정부원 성명으로 제기할 때 1987년말까지 그들 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합리화 조치라고 볼수 있다.

한편, 1988년 4월 5일~7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8기3차회의에서의 결정한 「'87년도 결산과 88년도 예산심의안」내용에 의하면 “인민군 10만명 감축에 따라 국방비 구성비가 87년도에는 13.2%였던 것이 '88년도에는 12.2%로 되어 1% 줄었으며 금액면에서 볼때는 2.1% 줄은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군의 建設場 투입을 병력감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기관의 공통된 시각이다. 북한이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인민군을 각종건설장, 예컨대 「북부철길공사」 「태천발전소」, 「평양·개성간 도로공사」 등에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역병의 편제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유사시엔 바로 현역병으로 복귀시킬 수 있기때문에 병력감축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보고서인 「군사력 균형」에서나 일본방위

청이 펴낸 「방위백서」에서도 북한이 주장하는 병력감축 주장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토통일원의 평가로는 '88년도 세출총액 147.3억\$ 중 30%인 44.2억\$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액수는 북한 88년도 GNP 206.7억\$의 21.45%수준이다.

'89년도에도 같은 비율 수준의 군사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현존 군사력 실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現役 총병력은 총인구의 4%가 넘는 8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상군 약 76만명, 해군 약 4만명, 공군 약 7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豫備兵力은 勞農赤衛隊 약 360만명, 教導隊 약 119만명, 붉은청년근위대 약 81만명, 인민경비대 5.6만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북한 지상군은 전차 약 3,500대, 장갑차 약 1,960대, 야포 및 방사포 약 7,800문, 프로그 27기, K-61 수륙양용차량 약 500대, S형 부교 약 2,300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대함공격 및 수중작전능력 발전에 중점을 두고 전력증강을 계속하여 현재 잠수함 21척, 유도탄정 36척, 어뢰정 약 180척, 고속상륙정 약 130척 등 총 630여 척의 艦艇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전투기 약 820대와, AN-2기 약 280대, 헬기 약 250대 등을 포함한 지원기 약 770대 등 항공기 총보유수는 약 1,590여 대에 이른다.

최근에는 신예전투기인 미그23기 46대와 미그29기 14대를 도입했고, 美휴즈사 500계열 헬機 87대도 밀도입해 놓고 있다. 그리고 미사일은 SCUD 長距離 지대지 및 SA₃와 SA₅ 지대공도 갖추고 있다. 한편 무차별 人馬殺傷力을 가진 180~250만톤 규모로 추정되는 화학무기도 비축하고 있다.

또한 전략부대를 재편성하여 9~12개 師團으로 구성된 4개 기계화군단

과 1개 포병여단을 휴전선 80km 이내에 배치하는 등 81년도에는 45% 수준이던 前方配置 병력규모를 66% 수준으로 전환해 놓고 있으며, 평양-원산선 이남의 30개 항공기지외에 휴전선 가까이 2개의 비행장을 신설, 우리의 首都圈 기습공격 시간을 8분대로 단축해 놓고 있다.

78. 북한의 최근 對中·蘇 군사협력동향은 어떠한가?

북한과 소련간에는 최근 “새로운 형태의 협력” 다짐과 그 구체화로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84년 5월 김일성이 23년만에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이 군사협력강화의 轉機가 되었다. 그해 11월에는 소련 외무차관 카피차가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과 군사협상을 진행하여 ① 청진, 나진 등 해군기지의 사용권 ② 긴급착륙권(Emergency Landing)이라는 북한내륙의 공군기지 사용권 ③ 북한영공에 대한 통과권 등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이후 북한의 해공군과 소련極東戰域軍 및 태평양함대간의 협력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그 주요활동은 ① 소련의 중거리 정찰기 Tu-16 Badger의 북한 공군기지 이착륙권 부여와 휴전선 일대의 정찰비행 및 항공사진 촬영 ② Tu-95 Bear 장거리폭격기의 印支半島에 이르는 새로운 항로가 북한상공을 횡단하여 황해노선으로 개설되었으며 ③ 그동안 중국의 눈치때문에 북한의 동해항에만 국한되었던 蘇艦寄港이 서해의 남포항에도 허용되고 있는 것 등이다. ④ 그리고 '87년부터는 동해상에서 소·북한간의 해상 연합기동훈련도 실시되어 왔다. 이듬해 ('88년 5월 14일)에도 소련태평양함대 함정의 원산항 기항과 사령관 코바토프의 김일성 면담 및 북한 군부지도자간의 협력증진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한바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점은 북한이 과학기술수준의 미흡으로 자체생산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고도의 정밀무기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여 군사력을 보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그 23기(46대)에 의한 유격사단의 편성, 사정거리 약 300km에 달하는 Scud-B SSM 및 SA-3Goa SAM 등의 도입이며, 근년('88.5)의 미국방성 보고서에 따르면 '87년도에는 보다 신예방공무기인 SA-5 Gammon SAM과 ZSU-23-4 自走대공포가 추가 도입되어 북한의 방공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그간 소련은 近接支援戰鬥機 20여 대, T-72 전차 등을 제공해왔고 1988년에는 14대의 미그29기를 제공하는 등 신무기 공급을 증대시켜 북한의 군사력을 지원하고 있다.

'86년 3월, 이기백 전 국방부장관은 北倉기지에 배치된 북한의 미그23전투기는 우리의 수도권 도달시간이 17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Scud-B는 平·元線에서 수도권 공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전선지역으로 이동배치한다면 대전이남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북한의 대남공격범위능력 확대를 지적한 바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85년 12월 당시 북한 정무원총리 강성산과 소련 수상 리즈코프가 조인한 「경제협력 및 과학기술협정」에 따라 북한에 원자력발전설비 44만km급4기를 소련이 건설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정무원내에 원자력공업부를 창설하였으며, 소련함대의 북한 입항과 소련 항공기의 북한영공 통과와 관련 그 협정이나 항공기에 핵이 장치되어 있다면 소련에 의한 북한의 “核化”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북한의 중국과의 군사협력관계는 군고위간부들의 상호방문외에는 특기할 만한 군사협력교류사항이 최근들어서는 別無하다고 볼수 있다. 군 고위급 교류실적으로는 '88년에 廣州軍區 정치위원장 장중선일행의 訪北, 양상곤 국가주석일행(군 참모총장등)의 9·9절 행사 참가, 북한인민무력부장 오진우와 공군사령관 조명록의 訪中이 있었다.

북한이 중국에 편향하여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갔던 '80년대 전반기에 있어서는 군사장비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바 있다. 그 도입실적을 예시하면 미그21기 40대('82년) OSA급 유도탄정 4척('80-'81년), AN-2수송기 82대('80-'83) YAK-18훈련기 47대('82-'83년) 레이더 6기('82-'83), SILK WORM 지대함 미사일 10기('80년) 등이다.

V

이 념 문 제

79.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革命’의 개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革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치적 權力이 대중운동에 의한 정치세력에 의한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혁명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政權交替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 등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혁명의 개념은 그와 같지 않다.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말 사전」이나 「정치용어 사전」에서는 ‘혁명’이란 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즉, “혁명이란 첫째,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制度를 새로운 제도로 바뀌는 根本的인 변화이며, 둘째, 일정한 생활·생산분야 및 문화의식 등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根本的인 변화란 것은 형식상의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착취 계급이 착취계급을 타도하고 권력을 탈취하는 政治的 變革과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부르주아계급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 옮겨지는 經濟的 變혁”을 말한다. 즉 唯物史觀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로 바뀌는 것만을 革命이라고 한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공산주의역사관인 유물사관부터 이해하여야 한다.

유물사관에서는 “사회와 정치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원동력을 어떤 理想이나 精神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生産과 교환방법의 변동 즉 경제생활의 변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물사관에 의하면 生産에는 두개의 커다란 要素가 있는데, 生産力과 生産關係가 그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물자의 생산에 요구되는 생산도구와 생산의 경험과 노동에 대한 숙달에 의하여 생산도구를 운영하면서 물자를 생산하는 사람 즉, 勞動力을 종합해서

生産力이라 부르고, 생산을 둘러싸고 맺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生産關係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의 生産樣式 안에서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생산력이 변하고 발전할 때는 이에 대응해서 생산관계도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생산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산력에 대응한 필연적인 생산관계를 맺게된다는 것이다. 생산활동에서 맺어진 이러한 生産關係의 총합이 사회의 經濟的 構造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 經濟的 구조야말로 下部構造 즉 사회의 土臺이며, 법률·정치등 상부구조는 이 위에 대응해서 성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방법이 變할 때는 이에 따라 생산관계가 변하고, 생산관계가 변함에 따라 그 사회의 정치·법률·도덕·종교·예술 등이 전반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부구조는 하부구조 즉, 토대에 대응하여 決定되는데, 다시 그 상부구조를 분석한다면, 상부구조는 그 당시의 支配階級の 利益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낡은 생산관계가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장애가 되면 될수록 투쟁이 점점 격화되고 드디어는 社會革命이 폭발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낡은 경제구조는 깨어지고 觀念形態 즉, 상부구조도 무너진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唯物史觀을 내세우는 것은 階級鬭爭理論을 전개하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의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계급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계급투쟁이론의 결론이다.

공산주의이론에 의하면 “革命은 계급투쟁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혁명이 없이는 새로운 사회는 탄생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가 공산주의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피압박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革命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돌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社會制度를 폭력으로써 타도하는 것 즉, 流血革命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暴力革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非組織의인 대중의 산발적인 봉기나 무계획적이고 일시적인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계급으로 뭉쳐진 노동자들의 全體的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혁명이란 것은 정치세력으로 묶여진 프롤레타리아트가 피흘리는 폭력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뒤엎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정권자체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실시하여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貫徹”(社會主義憲法 第10條)하는 階級國家이며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主體思想을 指導的指針으로 삼고”(同憲法 第4條)있는 공산당지배국가이며 革命政權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이론도 ‘남조선 혁명’으로 되어있다.

김일성 연설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남조선 혁명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平和的 移行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순수한 대중운동만으로는 革命을 승리로 이끌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오직 革命的 暴力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조선 혁명”이라는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혁명역량, 남한의 혁명역량 및 국제적 혁명역량 등 이른바 3大革命力量을 對南赤化革命의 기조로 삼고있다.

이러한 혁명역량을 기조로 하여 북한은 民主革命力量基地 戰略·對南人民革命戰略등 對南赤化戰略을 구상했으며, 이를 위하여 暴力革命戰術과 非폭력혁명전술을 적절한 배합으로 전개하고 있다.

80.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들이 자본주의경제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마르크스시대의 초기산업자본주의와 달라서 오히려 自由企業體制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자본주의경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長點이 있다.

첫째, 가장 큰 장점으로 국민 각 個人이 자기의 創意性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창의성이 발휘되는 조건은 각국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自由롭다는데 있다. 물론 이 자유가 다른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용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롭게 각자가 행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인류역사상 이와 같은 경제적 자유가 가장 많이 허용되고 보장된 제도가 自由企業의 제도, 즉 資本主義制度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본주의제도 밑에서 과거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生産力이 발휘되었고, 技術의 발전이 가장 눈부시게 일어났다.

둘째, 景氣變動의 원인이 되는 生産力과 消費의 불균형을 調整하는 장치가 발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는 資源의 안배와 사용이 價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물자의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까닭에 표면상으로는 무정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資源의 안배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政府의 命令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공산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물자의 공급과 수요에 차질을 초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경기변동을 가져오는 수가 많다.

셋째, 「自動安全裝置」라는 것이 마련되어 이들의 작용으로 심한 好景氣나 不景氣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데 있다.

累進稅率을 가진 조세제도, 실업보험제도와 기타의 사회보장제도가 이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국민의 可處分所得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이 제도의 장점은 자동안전장치의 작용만으로 경기의 안정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政府가 財政과 金融상의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不景氣의 경우에는 감세조치로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公共事業을 일으켜서 경기를 호전시키는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이와 반대를 好景氣에 있어서는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증세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의 과열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이 재정정책과 아울러 경기조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금융정책이 있다. 이것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통화량과 金利를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인간을 존중하는 民主主義의 정신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단을 法과 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社會改革과 복지증진정책으로써 해결하는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共產主義의 理論에서는 자본주의 밑에서의 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궁핍과 타락을 예견했으나, 노동자 자신의 각성과 노동조합활동, 복지정책, 특정산업의 公有化 등의 조치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자본주의체제에 불평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결부되어 발전할 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해 왔다.

이 자본주의경제체제에 比하여 社會主義經濟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운영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이상, 자본주의경제에서처럼 개인기업의 자유경쟁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에서도 모든 競爭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경쟁이라면 오히려 권장된다. 이 경쟁을 자유경쟁과 구별하여 社會主義競爭이라고 부른다.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인 성격은 자유경쟁체제와는 정반대의 完全獨占體制이다.

國家權力이 강하게 작용하여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 노동·가격 등에 관한 최고지배권이 國家(사실상은 共產黨)의 손안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에 의한 완전독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산국가의 소비에트적 사회주의경제체제를 強權的 社會主義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의례히 중앙집권적이고 강권적 計劃經濟로 된다. 勞動者는 작업량, 즉 「노르마」가 부과되어 직장이동에도 큰 구속을 받게 되며, 消費者로서는 계획된 공급면의 조건을 변경시킬 권한도 없고 또 企業家는 본질적으로 생산계획의 집행관리에 불과하다. 또한 강권적 사회주의경제체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될 점은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生産增大가 문제로 된다.

직업선택과 임금의 형태 수량이 모두 政府의 統制하에 있기 때문에, 생산의욕에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勞動生産物이 차등이 있을 정도로 所得에 탄력성이 없으며, 따라서 노동량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 근면과 나태, 숙련과 미숙련, 유능과 무능이 모두 소득상에 현저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能率을 올릴 수 없다. 生産을 目標量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감시와 독촉이 항상 필요하게 되기때문에 이러한 強制는 결국 공포에 의한 強制勞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 모든 정성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결과 生産量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 도달하지 못하든가 品質의 저하를 초래하든가 그 어느 것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對策이 고려된 것인데 소련에서 실시한 「스타하노프 운동」, 북한에서 실시한 「친리마 운동」이라든가, 경영과 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과 이윤을 부분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하는 「獨立採算制」라든가 어느 정도의 개인기업을 허용하는 「企業長期基金制」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사회가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소비한다는 공동소비의 理想”을 가지는 이상, 생산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능률과 소득과의 비례가 자유경제체제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추세라고 하겠다.

그런데, 간혹 사회주의경제체제는 대단히 能率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즉, 사회주의경제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것이 기어히 달성되는 경제이고, 失業과 景氣變動이 없는 경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의 지식인들 마저도 사회주의사회는 비록 非人道的이기는 하나 能率面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사회를 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價格機構에 의한 自動調節裝置에 근거하여 需要供給의 균형을 유지시키며 이 속에서 인간의 自由意志를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國家的 中央統制機構에 의해 需要供給을 調節함으로써 국가기능의 過大化와 浪費를 초래하면서 인간을 통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差異點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중앙통제기구에 의해 需要供給을 조절하는 命令型經濟를 가지고서는 지속적으로 能率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東歐共產諸國의 급격한 社會變化 등 오늘의 사회주의국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1. 자유개방사회의 속성이기도 한 빈부격차와 이념의 다양성 문제를 복합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自由開放社會에 있어서 빈부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다. 또한 극소수의 극빈층도 있다.

法 앞의 平等과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과 경제윤리 그리고 사회정의가 보장되며 정부에 의한 福祉政策이 수반되고 있는 한, 貧富의 차이 그 자체가 사회적 갈등이나 體制의 위협요인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공정성, 윤리성과 社會正義가 시들며 복지정책이 구호에 머물게 될 경우, 이는 국민들로 부터 정부와 가진자에 대하여 비판, 불신과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며, 급기야는 혁명과 폭력에 의존하여 기존질서를 파괴하려는 경향마저 노골화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빈부격차의 심화현상은 공산주의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統一戰線戰術의 주요 표적으로서 노출됨으로써 큰 취약점으로 부각될 것은 自明한 일이다.

우리의 경우, 과연 빈부의 격차가 문제되고 있지는 않는가?

특히 60년대와 70년대에 가속화된 근대화 물결속에서, 국가경제의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 심화라는 역기능적 현상이 발생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우리경제는 70년대에 확대되기 시작한 격차를 좁히는 것이 90년대 先進 한국을 실현하고 더 나가서는 통일조국의 고도복지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소득계층간의 격차와 학력의 격차,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등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격차를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범위 안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富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公正性을 기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곧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경제적正義의 바탕이 된다.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부동산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의 원천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써 토지공개념의 입법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것은 구체적 실천사례로서 적시할 만하다.

또한 특권과 특혜의 최소화, 자율경쟁의 보장(이 경우 약자의 경쟁력 보장), 조세부담의 형평을 비롯하여, 노사간의 협동관계 정립, 노동의 인간화(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노조의 자제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병행되어야 함), 농촌공업화·문화생활화와 지역격차 해소조치 등의 정책을 구체화 해나가고 있음은 바람직한 조처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경제활동은 자율적인 경쟁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그 경쟁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공정하고도 자유경쟁적인 시장원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부는 경쟁으로 부터 탈락·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해나가고 있다. 즉 정부는 영세민의 중산층화를 목표로한 복지정책의 과감한 추진과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룩할 통일민주공화국을 자유와 인권과 복지와 행복이 넘실거리는 고도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을 통일조국의 모범국가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命題를 정부는 명심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인정하되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지 않고 조화와 균형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 가진자의 절제와 정부의 선의의 조정역할이 잘 이루어 짐으로써 사람답게 사는 사회, 그리고 정신적으로 빈부격차의식을 느끼지 않는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이와 같은 복지사회를 내실있게 이룩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갈등문제는 점차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다음, 理念의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말과 구호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면, 이념의 다양성의 문제는 체제위협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내실화가 이루어진다면, 「진보」를 앞세운 좌경이데올로기의 도전은 결코 우리사회를 허무는 위협요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문제와 관련, 최근의 東歐의 민주화 개혁의 진행과정은 우리에게 몇가지 중요한 교훈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첫째, 진보주의를 공산당이 독점한다고 주장해 온 불세비즘의 철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참다운 진보」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다원주의와 충돌하거나 그런 가치들을 폐기하려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런 가치들을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부문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좌경운동권 일각에서는 유일한 진보는 오직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교조적으로 주입받아온 사상적 동향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표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마치 진보의 적인 양 매도하고, 그것은 부르주아반동들의 기만수단이라 단정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민중을 위한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치물로서 좌경혁명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릇된 인식과 정세관을 바로 잡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정치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개발한 이데올로기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야말로 만능적이거나 완전무결한 이념은 아니지만 최상의 것임이 확연해졌고, 동구국가들마저도 그 가치의 보편적 정당성을 공산당일당독재의 폐기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참다운 진보는 공산주의의 독재적 진보가 아니라 민주적 진보여야 하며 민주적 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충해

야 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다. 동구변혁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대체이데올로기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좌경운동권론자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원리를 사회주의의 理想과 양립시키려는 민주사회주의론을 「개량주의」·「반동」으로 배척하는 무지와 편견, 흑백논리적, 편향적 사고로 부터 해방되어야 할 때이다.

통일이념의 정립에 있어서도 위에서 살펴 본 동구의 민주화개혁과 자유화의 본격추진이 주는 교훈은 크다고 사료된다. 자유민주주의도 버리고 공산주의도 버림으로써 제3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노력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내실화를 기하는 바탕위에서 민주사회주의의 가치덕목을 수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지언정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수용할 이유와 필요는 없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요컨대 개인과 민족의 자유신장의 역사가 세계정치사의 큰 흐름이라고 볼 때 참다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그동안 평가절하되어 온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평가절상하여 빛내는 과제야말로 민족사적·통일사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82. 최근 공산권의 변화상은 전통적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變質을 의미하는 것인가?

1987년에 들어와서부터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강조해오고 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장하면서도 마르크스·레닌主義와 공산당 一黨獨裁로 상징되는 소비에트체제를 조금도 變更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東歐一部國家에서 일고있는 大變革이 변수가 있기는 해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共產黨獨裁를 維持하면서 全體主義的 支配體制를 安定시키기 위한 공산체제 옹호의 이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한 쇠퇴해 가는 전체주의국가로서의 소련의 위신을 드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共產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한 信仰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變化問題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변하는 측면과 변하지 않는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공산주의가 共產主義인 한에 있어서는 最終目標은 변함없이 「공산주의사회 建設」에 있다. 蘇聯의 헌법은 그 前文에서 “소비에트국가의 최고의 목표는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있다”고 밝혔고, 中國의 헌법도 그 전문에서 “中國人民의 근본임무는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1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人民民主獨裁의 사회주의국가이다. 누구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한다”고 못박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란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

다.

中國은 경제개혁을 하고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全人民大會」나 「공산당대회」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4개 기본원칙 가운데서 그 어느 한가지도 없애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4개 기본원칙이란 것은 ① 社會主義의 길 ② 프롤레타리아 獨裁 ③ 중국공산당 指導 ④ 마르크스·레닌主義, 毛澤東 思想을 말한다.

본래적으로는 사회주의사회, 공산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가 몰락한 후에, 또는 몰락시킨 후에 오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출발부터 資本主義社會와의 共存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打倒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開放이나 改革은 共產主義社會 建設이라고 하는 最終目標은 不變한 상태에서 최종목표로 가는 方法上的 변화로 보아야 한다. 즉, 공산주의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한 戰術的인 측면 뿐이다. 공산주의가 본질적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그대로 공산주의로 남아 있다.

현재 공산국가들이 당하고 있는 숙명적인 落後性이라는 體制的 危機는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도 영구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자들의 革命運動이 경제발전을 극대화시키는 혁신적인 장치를 발명하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산주의의 이 낙후성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 등은 이 낙후성이라는 숙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참담한 현실과 절망적인 노력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폐쇄사회로 상징되던 공산국가가 國家利益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일단 외관상으로 개방과 개혁의 몸짓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의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산주의가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唯物史觀을 포기하고 世界赤化 내지 對南赤化統一의 목표마저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가?

오늘날까지 공산주의가 최종목표인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포기한 일은 없다. 그리고 世界赤化를 포기한 일도 없다. 국제공산주의가 세계적화를 포기했거나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고, 北韓이 對南赤化統一을 포기한 것이나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공산주의가 共產主義인 한 마르크스·레닌主義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展望을 해보면,

첫째, 공산주의가 언젠가는 自滅하거나 피흘리는 투쟁으로 소모되어, 더 이상 다른나라들이 위협을 받지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인 전망이다. 그런 때가 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런 전망을 내리기에 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

둘째, 공산주의가 전개하는 국제적인 분쟁이 확대되어, 전세계를 격동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가치있는 가능성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全滅狀態를 의미한다.

셋째, 공산체제가 경제적 또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개혁 즉, 변화될지 모른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질병이 공산주의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 치료방법이 공산주의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1989년 가을이후 일어나고 있는 東歐各國의 共產黨指導 一黨獨裁體制의 포기가 이를 반증해준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도 미지수에 속한다. 다만, 공산주의는 결코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의 代案이 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수있다.

83. 「좌익」, 「급진좌경」, 「용공」, 「좌경」등은 개념상 어떻게 구별되는가?

먼저 「左翼」이란 용어의 始原을 보면 프랑스革命後 1792년에 소집된 國民議會에서 議席을 배정함에 있어서 議長席을 중심으로하여 右側에는 온건한 立憲君主制를 추구하는 프이앙派가 앉고, 左側에는 공화정으로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자꼬방派가 앉았으며, 중앙에는 中立派가 앉게 되었다. 여기서 좌측에 앉은 급진적인 자꼬방派를 左翼이라고 지칭하였다.

이와같이 좌익이란 용어는 처음엔 단순한 자리 배치에 따라 붙여진 말이었으나, 역사의 변천과 더불어 自由主義的, 急進主義的, 無政府主義的, 社會主義的, 共產主義的 傾向의 人物 또는 團體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뜻으로 「좌익」은 現存社會秩序를 부정하는 운동 또는 그런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 내지 勢力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현존사회질서를 부정한다”는 말은 현재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공격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變革시키려 한다는 뜻이다. 이 좌익에 대립되는 입장을 일컬어 흔히 「우익」이라고 한다. 기존질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질서를 보존하고자 하는 입장을 말한다. 「좌익」이라는 명칭은 일정한 확고한 정치적 路線을 표시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해방」이라든가 「사회주의」 방향에로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左翼」, 「急進左傾」, 「容共」, 「左傾」을 혼용하고 있다. 이를 굳이 區分하자면 「좌익」, 「급진좌경」, 「용공」의 개념은 같은 範疇로서 마르크스主義 또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 해당되는 인물 또는 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司法的 次元의 基準은 별개로 특히 容共에 대하여는 엄격한 해석이 따르고 있다. 그리고 左傾이라 할 경우에는 다소 그 개념을 달리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 대다

수국민이 신봉하는 自由民主主義를 中間概念으로 설정할 때 그 기준에서 極左(마르크스·레닌主義)까지를 左傾 또는 進歩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기준에서 極右(파시즘, 나치즘, 軍國主義)까지를 右傾 또는 保守라고 廣義의 해석을 내릴 素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自由民主主義者가 기피하는 대상은 極左인 좌익과 極右인 우익이기 때문에 廣義의 개념인 좌경이나 우경이란 용어와는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民主社會主義的 인물 또는 단체는 분명히 左傾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議會民主主義라고 하는 制度圈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左翼과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左傾, 進歩 또는 右傾, 保守라는 용어는 同一體制內에서도 사용되는 말로서 實權者의 생각을 앞지를 때, 共產體制에서는 이를 좌경으로 매도하고, 그 반대일때는 이를 右傾으로 매도하며, 기타체제에서는 동일한 경우 進歩 또는 保守로 매도하기도 한다.

또한 「反動」이란 용어는 舊體制의 유지 또는 부활을 지향하는 정치행동으로서 歷史의 進歩, 發展을 역행하고, 진행되고 있는 變革에 반대한다는 뜻으로서 保守보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며, 反革命과 같은 폭력적 행동성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쓰여지지만 흔히 「保守反動」 또는 「反動勢力에 의한 반혁명」과 같이 수식어를 붙여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한다.

특히, 반동은 左翼 혹은 共產主義者에 의해 적대시되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에 반대하는 者는 물론 비협조자를 위협하거나 처벌하는 수단으로써 반동으로 낙인찍는 경우가 많다.

84. 민중혁명론자들이 말하는 민중의 뜻과 民衆史觀의 본질은 무엇인가?

〈민중의 개념〉

민중혁명론자들이 말하는 民衆史觀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階級史觀, 즉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관점에서 있다. 다만 계급을 구분함에 있어 초기 마르크스主義者들은 자본가가 아니면 노동자라고 하는 양분법을 썼는데 요즈음의 민중혁명론자들은 마르크스主義의 創造的適用이라는 의미에서의 레닌主義에 충실하고 있다. 그들은 民衆을 논하기에 앞서 階級을 논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이다. “生産手段의 소유여부, 노동조직내에서의 역할, 收入의 源泉과 그 크기등에 있어서 각각 처지를 달리하는 집단”을 「계급」이라고 규정하고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다음과 같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첫째, 고급관료(機能的 資本家)를 포함한 買辦資本家階級,
- 둘째, 교수, 변호사, 의사, 목사, 사회단체간부, 고급기술노동자 및 고급장교등으로 된 신중산계급,
- 셋째, 흔히 민족자본가로 불리우는 중소상공업자계급,
- 넷째, 자립경영이 가능한 부농계급
- 다섯째, 소작인, 고용농등의 빈농계급,
- 여섯째,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계급,
- 일곱째, 이농민, 실업자, 영세상인등으로 된 도시 빈민계급등이다.

이상과 같은 계급구분에 따라 그들은 민중을 “植民地·半植民地·新植民地 나라들에 있어서의 반제·반매판 투쟁과정에서 형성된 계급연합의 역사적·사회적 실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一般規定에 이어서 개념적으로는 매판자본가계급을 제외한 6개계급을 일단 「민중」으로 부르는 하나, “실천적으로는 노동자, 빈농 및 도시빈민만이 혁명적 민중의 구성계급이 된다”고 결론짓

고 있다. 즉 민중을 「들러리 민중」과 「基層民衆」으로 再區分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같은 기층민중가운데서도 革命的 영도계급은 어디까지나 노동자계급이어야 하며, 빈농과 도시빈민은 그 영도를 받는 전략적 동맹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밖의 「들러리 민중」은 정권을 쟁취할 때까지는 제휴할 전술적 동맹대상이어서 당면한 예비혁명으로서의 민중민주주의 혁명이 성취되고 본격적인 社會主義革命期에 들어서게 되면, 제거 내지는 改造해야 할 대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民衆史觀의 本質〉

민중사관은 민중신학, 민중문학, 민중통일론, 민중교육학, 민중사회학 등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며 각기 주장하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나 민중사관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特性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중사관은 既存의 歷史觀을 “지배계급을 위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부정한다. 민중사관은 역사의 主人이란 民衆이어야 한다는 계급사관에 기초하여 기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민중사관은 역사발전의 動力을 生産活動의 변화에 두고 있다. 민중사관에 따르면 “역사의 필연적 범칙성은 「人間解放의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生産活動의 발전과 그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민중사관이 저와같이 역사발전의 動因을 설명한다는 것은 칼·마르크스의 唯物論을 그대로 借入한거나 다름이 없다. 물질적 生産樣式은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과정의 일반적 성격까지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꼭 같은 취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사관은 고려조에서 조선조로의 王權交替 조차도 계급사관에 집어넣어 분석하고자 한다. “고려와 조선조의 왕권교체는 단순한 집권층의 변화가 아니고 社會變革의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변혁은 「중심세력」인 士大夫들의 계급적 한계 때문에 철저한 개혁이 되지 못하고 中世社會를 재편성하는데 그쳤다고 역설한다. 뿐만아니라 민중사관은 이승만대통령에 의한 자유당 정권을 미국의 원조경제 아래 이루어진 관료 독점자본과의 유착정권이라고 비판한다. 그밖에도 민중사관은 5·16이후의 정권에 대해 外資와 국내 獨占財閥을 육성하는 노예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5·16이 가르친 방향은 “분열과 예측과 독점의 길 뿐이었다”는 것이다.

민중사관이 1950~60년대의 한국 경제를 오직 외국자본, 독점재벌, 예측, 신식민지 상태로 간주해 버린다는 것은 이론적 태도를 「종속이론」에도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 “後進國의 경제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빌어다 쓰면 그 선진국에 경제적으로는 물론이려니와 정치적으로도 예측케 되고 자본가들은 독점자본으로 배를 불리게 되는데 반하여, 임금노동자와 농민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종속이론을 차용한 논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사관은 학생과 지식인들의 민중투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민중사관에 따르면 학생운동은 민중의 투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할 사람이 바로 학생과 「민중적 지식인」이며 학생운동의 갈 길도 거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민중사관은 “모든 민중적인 知識人이란 지식인 특유의 기회주의적 屬性을 극복하고 민중속에 뛰어들어야 하며, 민중을 「조작」하고, 민중과 더불어 생존권보장을 위해 싸우는 것 만이 남았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이같은 주장은 네오-마르크시즘의 대표적 이론가들중의 하나인 허버트 마르쿠제의 테제를 모방한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마르쿠제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생활향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게 됨으로써 공산주의 혁명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지식인과 학생은 勞動階級을 깨우쳐 그들을 革命의 대열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사관의 正體는 민중이란 애매한 이름아래 마르크스의 계급갈등이

론과 유물사관, 요한 갈통의 신제국주의론, 南美의 종속이론, 그리고 네오-마르크시즘 등을 열기설기 엮어놓은 것으로서 기존사관의 부정에 집착해 있다. 민중사관은 오직 기존사관의 부정으로 그치지 않고,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革命理論에 따라 기존사회 질서의 顛覆을 유도한다는 민중사관의 毒素가 감춰져 있는데 문제가 있다.

민중사관은 民衆을 民族의 實體로 간주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분해해 버리는 모순에 빠져 있다. 민중사관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과 계급갈등논리에 바탕하고 있으므로 民族을 제치고 핍박받는 民衆을 歷史의 主體로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민중사관을 따르다 보면 민족은 행방불명이 되고 만다.

민중사관은 민중을 역사의 主體로 삼고 있는 만큼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 歷史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하고 나선다. 그 결과 민중사관에 의한 韓國史의 해석은 대부분 좌절과 실패의 역사로서 어둡게 그려지고 있다. 민중사관은 한국사를 오직 계급투쟁의 도식속에서 서술함으로써 민족내부의 分裂과 갈등을 조장한다. 민중사관은 한국사가 “민중의 손으로” 돌아올 때 까지 민중을 선동하려 한다.

민중사관은 유물사관, 계급사관, 종속이론 등에 따라 이미 굳어진 틀에 묶여 한국사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 한국사에는 밝은 면도 많은데 민중사관은 어두운 쪽을 들춰내기에 몰두한 나머지 밝은 史料도 어둡게 해석한다.

민중사관의 과장되고 왜곡된 한국사 서술은 急進 또는 反體制 性向의 運動圈에 의해 그들의 급진적 행동을 正當化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민중사관은 아직 분별의식이 미숙된 젊은이들에게 반체제 또는 급진사상을 고무, 선동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민중사관은 오류나 문제점만 내포하고 있는것은 아니며 거기에는 기존사관이 참고로 해야 할 대목들도 없지 않다. 민중사관은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종래의 식민사관, 저항민족사관, 實證史

觀, 우월민족사관 등에서 다뤄지지 않던 한국사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려 든다. 한국사에서 잊혀진 疏外地帶에 역사의 등불을 밝히려 한다. 그밖에도 실패와 좌절의 역사에도 눈을 돌리게 한다.

그렇지만 민중사관은 객관적인 歷史性을 상실한채 주관적인 階級史觀에 기초하고 있다. 객관성을 상실한 모든 學理가 얼마 못가서 死藏되고 마는 바와같이 끝내 이것이 일반의 관심사로부터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유물사관, 계급사관, 식민사관 등이 역사의 뒤편에서 生命力을 잃어가고 있는것과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85.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르며,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뿌리박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는 흔히 混沌하거나 混用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백한 구분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현재 社會主義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는 「社會民主主義」와 「民主社會主義」가 있는데 이것들은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서의 사회주의와는 물론이지만 그들 양자간에도 엄격한 구분이 있다.

社會民主主義란 1918년 레닌이나 로자 룩셈부르크에 의해서 창도된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에 반대하며 합법적 의회주의를 추구하려는 마르크스主義 또는 기타 社會主義와의 混合類派이다. 그런데 民主社會主義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것으로서 마르크스主義와는 인연이 없는 倫理的 社會主義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合法的 점진적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共產主義的 社會主義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들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래 獨逸의 社會民主黨은 社會民主主義, 그리고 英國의 勞動黨은 民主社會主義를 각각 그 지도원리로 삼는 대표적 정당이었으나, 第2次世界大戰後 특히 1951년의 「프랑크푸르트宣言」을 계기로 兩者가 모두 民主社會主義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사실상 양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共產黨도 원래는 社會民主黨 또는 社會民主勞動黨에서 시발된 것이며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가 共產黨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18년 이후의 일이다.

이들이 이와같이 「공산주의」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다시 쓰게된 것은 「第2인터내셔널」에 속해있던 대부분의 社會民主黨들이 獨逸社會民主黨의 改良·修正主義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革命성을 강조하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기할 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견지에서 社會主義를 共產主義의 낮은 段階, 즉 努力한 만큼 消費하는 단계로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공산주의가 지칭하는 社會主義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낮은 단계로 표현함으로써 一般的 社會主義(社會民主主義와 民主社會主義)와 구분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兩者間의 주요한 차이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主義 實現方法面(私有制를 共有制로 바꾸는)에 있어서 一般的 社會主義는 대체로 평화적·의회주의적인 民主主義路線에 따르고 있음에 반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社會主義에서는 暴力革命과 프롤레타리아獨裁를 필수적이며 원칙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經濟的 生産方式面에 있어서 一般的 社會主義는 生産手段에 대한 共有와 勞動量에 따르는 보수를 원칙으로 삼는데 그치나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는 生産수단뿐만 아니라 중요한 消費手段에 대한 共有, 그리고 勞動量에 따르는 소비의 단계에 그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段階에로의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셋째, 國家와 政治觀에 있어서 일반적 사회주의는 국가와 정치기구를 불가결의 것으로 보는데 반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는 궁극적으로 국가나 정치기구가 없는 사회가 되어야하며 또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信條로 삼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레닌主義와 社會民主主義는 사회주의가 資本主義의 自體矛盾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과학적사회주의觀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마르크스主義의인 혈통인 것이다.

그러나 民主社會主義는 이와는 달리 倫理的 見地에서 사회주의를 民主主義 실현의 수단으로서 추구하며 또한 그것이 곧 「最上の 民主主義」라는 신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社會主義의 實踐을 필연적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倫理的 見地에서의 當爲的 課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적 社會主義는 그 存立을 憲法이 금지하고 있지만 一般的 社會主義政黨의 활동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종래에는 社會黨 또는 社會民主黨의 명칭하에 社會主義政黨이 존재하였고 또한 그 國際組織으로서의 社會主義 인터내셔널(SI)에도 정식 가입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政黨法 第39條에 규정된 國會議席이나 國會議員選舉 有效投票總數의 100分の 2이상의 得票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1988년 4월 29일자로 解黨된 상태이다.

그리고 社會主義 정당이 뿌리박지 못하는 이유는 6·25動亂의 경험으로 인하여 一般的 사회주의까지도 共產主義와 유사하게 인식하여 이에 대한 증오와 불신감이 크기 때문이며, 또 한가지는 그동안의 한국의 政治文化가 保守와 進歩의 극단주의적 黑白論理로 회색적인 것에 대한 選好가 약했기 때문에 一般的 社會主義政黨이 政治的으로 勢力化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 보수정당들이 국민들, 특히 개혁성향이 높은 일부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에는 社會主義政黨이 대두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86.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발달한 사회주의 사회」는 개념상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북한공산당인 「조선로동당」은 黨規約 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라고 표현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5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社會主義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사회주의 헌법」에서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6조,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18조, “…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제2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31조, “…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제49조, “…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56조,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 받는다.”

이러한 「사회주의 헌법」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을 요약해 보면

- ① 북한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실시한다 ② 마르크스·레닌主義와 프롤

레타리아 國際主義 원칙에 입각한다 ③ 生産手段은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④ 노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 分配原則을 적용한다 ⑤ 북한의 경제는 계획경제이다 ⑥ 북한의 文化는 민족적 形式에 사회주의적 內容을 담아 발전시킨다 ⑦ 북한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등을 파악할 수가 있다.

본래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共同所有 그리고 평등한 소비에 기초한 계급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目標로 한 理想과 運動이 공산주의이고, 그와 같은 運動의 成果로서 성립하는 社會體制를 공산주의사회라고 부른다.

공산주의의 사상과 운동은 1871년의 「파리 코뮌」에서 體制로서는 처음으로 실현되었지만, 며칠만에 끝나고 말았다.

그후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의 성공에 의하여 공산주의적 世界革命이 단서가 열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산주의를 目標로 하는 社會體制가 적지않게 성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가 몰락한 다음에 그 결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회를 넓은 의미로서의 공산주의사회라 하고, 그 낮은 단계를 사회주의사회, 높은 단계를 공산주의사회”라고 지칭하는 방법이 일반화되게 되었다.

좁은 의미로서의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社會成員에 남아 돌아가는 물자를 보장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生産力이 실현되고, 生産手段은 전부가 全人民의 所有로 되어 계급도 사회적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의 완전한 사회적 평등이 달성되어, 노동이 제1차적 생활욕구가 되어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라는 原則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공산주의사회는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가? 또 물질적인 관심의 원칙에 의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改造하지 않고서도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세계 최초의 共產革命을 이룩한 소련은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70년을 지내왔으나, 공산주의사회로부터는 크게 동떨어지고 있다. 다른공산국가의 경우 특히 북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현존하는 공산국가들은 최종목표는 항상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두면서 그 중간목표로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회주의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유·평등·박애를 구호로하는 市民革命으로 성립된 자본주의사회의 實態가 이념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에서 널리 자본주의체제비판의 원리, 체제개조의 이념, 체제선택의 가치기준으로서 사회주의가 탄생한 것으로 볼 때, 그 구체적인 定義가 일치된 것이 없다. 오늘날의 사회주의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의 흐름이 있다.

그 하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潮流인데, 그들은 사회주의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공산주의사회의 實現에 두고, 그 제1단계로서 사회주의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장래의 공산주의사회를 자본주의 붕괴후에 바로 이어서 계속되는 「보다 낮은 단계」와 「보다 높은 단계」의 두단계로 분류한 것에서 시작되며,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서구라파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非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사회주의 내지 社會民主主義의 潮流로서, 이들은 반드시 공산주의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했다.”고 하는 소위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보다 낮은 단계로서의 사회주의를 뜻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사회도 공산주의사회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볼 때, 그 過渡期가 너무 길어서 사회주의사회를 몇개로 나눈 것이 있다.

소련의 신헌법 前文에 보면 「발달한 사회주의사회」라는 말이 등장하는

데, 이 발달한 사회주의사회라는 용어는 1977년 3월의 제24차 소련공산당 대회 때, 브레즈네프 보고에서 사용된 이래, 소련과 동구라파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의 특정한 發展段階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넓은 의미로서의 공산주의 사회는

첫째,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프롤레타리아 집권기)

둘째, 발달한 사회주의의 건설기(프롤레타리아 집권에서 전인민국가에로의 移行期)

셋째, 발달한 사회주의(全人民國家期)

넷째, 공산주의(국가의 死滅期)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고, 이 구분을 적용하여 자기나라의 발전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소련에서 나름대로 평가한 것에 따르면 소련은 발전한 사회주의 단계이고, 北韓은 발달한 사회주의의 建設期고, 中國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다고 하나,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 참고 : 「1986년 12월30일 김일성 시정연설」중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온 사회가 노동계급화 되어,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이 완전한 사회 정치적 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입니다. 물론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다고 하여 곧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면 계급적 차이는 없어지지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에서의 일정한 차이는 계속 남아 있으며 사회 생산력도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를 공고발전시켜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하는 하나의 역사적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거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거쳐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로정입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인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87. 최근 좌경운동권의 투쟁목표는 무엇이며 좌경세력의各界 침투 실태는 어떠한가?

그들의 당면투쟁목표는 소위 「민중민주주의 정권」이라는 명분하의 공산정권수립에 있으며 궁극목표는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있다.

각계 침투 실태를 보면 大學街를 본거지로 하여 교육계, 노동계, 종교계, 문예계, 출판계 등을 들 수 있는데 다른나라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대학가야말로 반체제 세력의 발상지이며 또한 그 수출기지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6·25동란의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대학가에서만 좌경세력이 은신하여 그 명맥을 이어왔으며 마르크스주의 성향을 지닌 서클들이 비밀리에 존재해 왔는데, 이들이 오늘날처럼 전파되고 확대된 좌경세력들의 孢子體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온 셈이다.

특히, 4.19의거를 계기로 크게 성장한 좌경세력들을 노려 北韓당국이 대남공작요원을 대량침투시켜,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인민혁명당사건」(1964), 「통일혁명당사건」(1968) 및 「민청학련사건」(1974)등이다. 그리고 그 여파가 「남민전사건」(1979)으로 이어지면서 대학가의 좌경화현상이 계속되었고, 특히 197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부차이 문제와 결부되어 전국 대학가의 좌경화 바람이 일게된 것이다.

대학가에 일정하게 뿌리를 내린 좌경분자들은 처음에는 네오마르크스주의와 뉴-레프트운동, 종속이론과 해방신학 및 서구공산주의 계통의 서적을 이용하여 많은 대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의식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어서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당국의 주체사상 학습으로까지 의식화 교육과정을 전환시켜 「레닌파」와 「주사파」라는 세력들을 길러내는데까지 이른 것이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것은 1985년에 일어났던 「3민투사건」, 1986년에는 전국대에서의 「애학투련

결성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 동의대사건」등 하나 하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 조직의 기관지로는 「민족민주선언」(민민투계)과 「애국학도」(자민투계)등 각 대학별로 수없이 내고 있으며 많은 대학신문과 교지들도 그들이 좌우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그같은 공공연한 地上조직의 배후에는 「민민투중앙위원회」(민민투계) 「H.W.C.T」(학생운동지도본부, 민민투계), 「구국학생연맹」(자민투계), 「에학투 중앙위원회」(자민투계), 「총학생회 활성화추진회」(자민투, 전대협계) 「반미청년회」(자민투계, 전대협계) 등의 지하통제조직이 실권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들 좌경조직들을 음성적으로 教唆, 支援하는 일부 교수들도 점차 고개를 들게 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서 지난 1986년 9월에 드러난 서울대 교수간첩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학가야말로 좌경핵심분자들을 육성, 공급하는 근원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명분상으로는 이른바 「진보적 청년학생」이 노·농대중을 지원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실은 그들이 「혁명의 전위」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教育界에 있어서의 좌경화 확산활동은 「민중교육운동」 또는 「민주교육투쟁」등을 내세우는 일부교사 및 일부 교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중교육운동」(참교육으로도 표현하고 있음)은 주로 불우층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현실비판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활동이며, 「민주교육투쟁」은 교사들 스스로의 반체제적 운동을 뜻한다.

이러한 교육운동을 주도하는 교사들은 대체로 좌경운동권 학생출신으로서 먼저 주변으로부터의 신뢰를 획득하고 나서 활동에 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 교육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현 교육제도를 가진자들이 그들의 지배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그것을 고치는데는 먼저 사회구조 자체부터 변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반체제적 교육관점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교육운동가인 일리치 및 프레이리등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프레이리에 의하면 「우익은 그 지배를 계속하기 위한 문화행동방식을 고안해 낸다」는 것이며 일리치도 기존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본에서 전파되고 있는 좌익계 교육사상·운동서적들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좌경화된 교사들은 스스로를 정신노동자로 자처하면서 육체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그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같은 사상에 입각하여 학교밖에서는 夜學을 개설, 불우청소년들에게 반체제의식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안에서도 교과내용과 연결시키는 방법 또는 특별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의식화하고 있다.

이같이 「민중교육운동」, 「민주교육투쟁」 등은 이른바 「민중혁명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며 社會主義 사회실현을 위한 인재육성을 그 임무로 삼는 것이다. 요컨대 현 체제를 타파하여 민중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비로소 理想社會가 실현된다는 의식으로 전개하는 운동이다. 특히 「민주교육투쟁」은 그같은 사상에 입각하여 좌경교사 스스로가 협의회(노조같은 조직체)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투쟁해 나가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들 단체를 기반으로 하여 내고 있는 각종 간행물 및 그들의 실행사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勞働界에 대한 침투공작은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좌경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좌경분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노동계에 침투하여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려는 이유는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으뜸가는 주력군으로 키워내려는 생각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밑에 이들은 학력을 속이고 하층 일반 잡급노동자로 위장

취업하는 방법으로 노동계에 침투하여 왔으며, 적발된 수는 '83년에 12명, '84년에 25명, '85년에 307명, '86년에 400명, 그리고 '87년에 이르러는 무려 933명에 이를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위장취업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상사와 주위로부터 신임을 얻은 다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처음부터 좌경노조의 결성을 시도하고 이미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용노조」로 몰아세워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민주노조」라는 새 노조를 발족시켜 그속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노동야학」을 만들고 처음에는 어학이나 수학같은 학습을 거쳐서 차츰 로마시대의 노예 이야기인 「스파르타쿠스의 난」,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천민이야기인 「망이·망소이의 난」등을 가르침으로써 인류사회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유물사관적 시각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사회, 특히 남한사회를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보도록 이끌면서 자본가계급과 투쟁하여 승리하기 위한 투쟁 및 조직형태 그리고 투쟁표어 등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노동계의 좌경화 기운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또한 탈춤이나 연극 및 슬라이드 상영등의 방법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심을 불러 일으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반체제적으로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우선 기업주를 상대로 하는 경제투쟁을 유발하는 한편 기회있는대로 체제 전반을 타도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결합시키고 그것을 광범위한 연대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즉 기업단위의 투쟁을 지역단위로 확대하고, 그것을 다시 전국적규모의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끝내는 본격적인 폭력봉기로 발전시킬것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폭동과 혁명을 선동하는 각종

간행물(「노동계급」, 「노동자의 길」등)을 전파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일부 종교단체도 개입하고 있다.

요컨대 노동계야말로 좌경분자들이 침투, 점령하기 위한 최대의 목표분야가 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기업에 이미 이들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노동자계급을 「혁명의 주력군」 운운하면서 추켜세우고 있으나, 실은 그들의 집단력을 이용하려는데 착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핵심적 좌경의식분자들인 것이다.

宗教界에 있어서의 좌경화 활동은 「해방신학」과 그것이 변형된 「민중신학」 그리고 「민중불교」등에 기초한 설교, 또는 포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종교세력들은 불우한 대중에 접근하여 그들의 해방을 논함으로써 보다 많은 신도를 확보하여 교세를 확장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차츰 비대해지고 있는 좌경세력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며 불우대중에 접근함으로써 「박애」 또는 「자비」의 종교적 명분도 세울수 있다고 타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0년대에 이르러 라틴 아메리카에서 번진 해방신학이 종속이론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고 그것이 때마침 유행하고 있던 민중론과 결합되어 「민중신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신학과 맥락을 같이하는 「민중불교」가 아울러 성장함으로써 「민중종교운동」으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민중종교운동」에 참여하는 신부, 목사 및 승려들이 처음부터 좌경세력들과 직접 어울리게 된 것은 아니고 시대적 조류를 의식하여 좌경분자들에게 은신처나 학습장을 빌려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국의 사찰이 성당, 교회, 절등에 미치게 되면서 단순한 지원에서 비호로, 비호에서 동조로 진일보해 나가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좌경분자들을 능가하는 모험적인 인기전술로 나서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른바 「민중종교활동」에 나서고 있는 일부 신부, 목사 및 승려들이 좌경세력들의 입장을 크게 강화시켜주는 현상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행동과정에서 법적 단속에 직면하게 되면 「종교탄압」 운운하며 이른바 「聖域論」을 펴는 등 국가의 처지보다 주로 자신들의 교세확장에 마음을 쏟고 있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종교세력들이 현재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지고 있으며, 자체의 각종 기관지,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내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간행물들은 직접 또는 좌경세력들이 혁명을 선동하는 문서를 내는데 유용한 자료구실을 하기도 한다.

요컨대 종교계의 일각이 좌경핵심분자들의 은신처 또는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좌경세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으나 일단 현재의 「민주」명목 혁명이 성취되고 좌익분자들이 실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인민대중의 아편」으로 일괄 제거당할 처지에 있는 것이 이들 「민중종교운동」 세력이라고 할 것이다.

文化·藝術부문에 있어서의 좌경활동은 이른바 「민중문학」, 「민중미술」, 「민중연극」 그리고 심지어는 「민중만화」 등을 표방하는 요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예부문에 있어서는 좌경화운동도 이른바 「민중혁명운동」의 부분운동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민중문학운동」은 사실상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을 뜻하는 것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물들은 노동자, 농민 등으로 급조된 좌경분자들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즉 「민중문학」이란 민중적 투쟁을 선동하는 소설이나 시를 써서 보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사실주의)에 의한 문학활동으로써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긍정적 감흥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민중미술운동」도 역시 미술을 수단으로 하며 현실비판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민중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대체로 새로운 세대이며, 동인제 형식으로 모여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부각시키는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중연극운동」도 역시 같은 맥락의 것으로서 대학시절부터 좌경적 연극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은 군소극단을 만들고 주로 대학생, 노동자, 빈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나 회관 등을 빌어 가설무대를 꾸며서 공연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같은 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세력들은 그들의 호칭법으로는 「진보적 인텔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정권을 탈취할 때까지는 이들을 대단히 유용한 보조역량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일단 정권을 탈취하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행사에 대해서도 시비하며 말썽을 부리는 대상으로 취급하여 「인텔리 근성」 운운하면서 탄압을 가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계획된 절차인 것이다.

出版界의 좌경화는 지금까지 언급된 세분야와 총체적으로 관련되고 있으며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한 상태이다. 이같은 출판계의 좌경화현상은 좌경운동과 관련하여 제적되었거나 졸업하고서도 마땅한 취직처를 얻지 못한 좌경분자들의 생계유지 또는 혁명사업에 뜻을 두고 이분야에 뛰어들어 인물들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다.

이들은 간단한 시설로 기동성있게 옮겨 다니면서 초기에는 주로 외국에서 발행된 좌익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북한당국의 原典들을 대량생산하는 상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출판사는 현재 대단히 많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녹두」, 「백산서당」, 「거름」 및 「조국」 등의 이름을 내건 출판사들이다.

한편 이러한 출판사들과 협력하여 좌경서적들을 판매, 보급하는 전문적

인 서점 및 판매원들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출판사와 서점들은 좌경서적을 전파시키는 한편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금의 일부를 좌경세력의 활동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좌경서적들이 잘 팔린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 수익위주로 좌경서적을 발행하는 상업주의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분야에 좌경세력들이 침투하고 있으며, 특히 동맹, 제휴 대상의 폭을 넓게 잡고 있는 주사파(자민투)의 침투가 레닌파(민민투)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좌경세력들이 침투하는 분야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혁명에 도움이 되는데 그 우선 순위를 두게 되어 있으며 농민, 도시빈민에 대한 접근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農村에서의 좌경화 활동은 주로 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종교단체속에 침투한 좌경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방학기간을 이용한 좌경학생 주도의 농촌활동도 그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農活기간이 대체로 10일 내외이고,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며 分散的이어서 사실상 자체 수련회(MT)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농민에 대한 의식화 활동은 종교단체(가농, 기농 등)의 활동, 그리고 좌경학생들의 「편지보내기」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시빈민들에 대한 좌경화활동도 전개되고 있는데 이같은 활동은 선교단체와 이들 빈민들 속에 어울려 살고 있는 좌경학생(제적생 포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무허가주택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빈민들이 반항, 투쟁하도록 선동하며 때로는 좌경학생들을 불러들여 소요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政黨이나 사회단체등에 침투하여 그 노선을 좌경화하려는 좌경분자들의 활동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당국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좌경색을 띠고 활동중에 있는 단체가 총 126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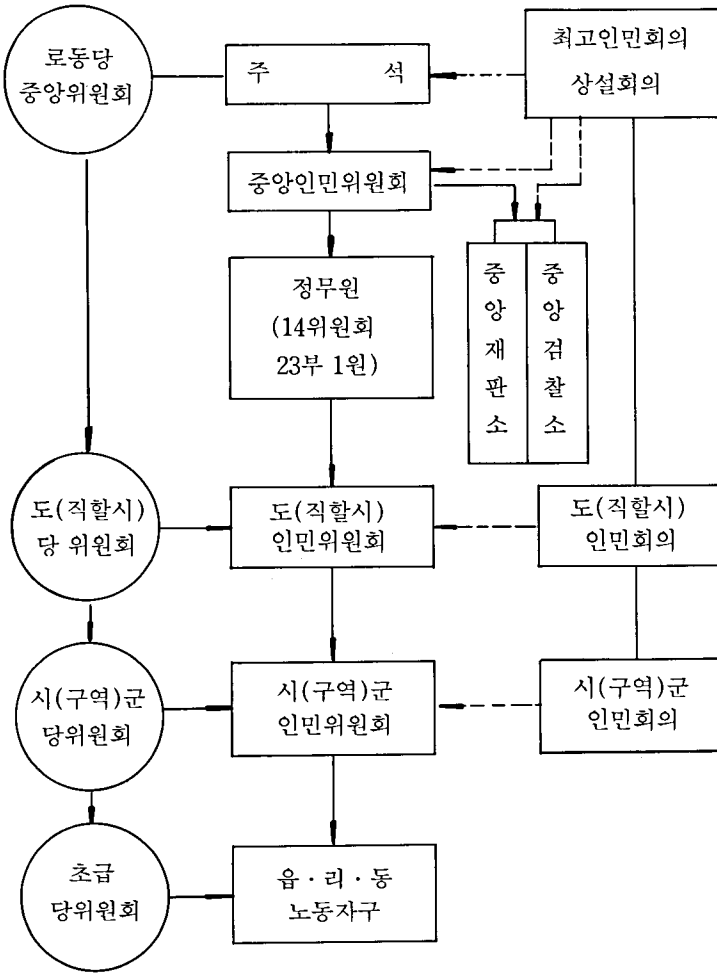
이밖에도 일부 언론계와 정계, 심지어는 의료 및 약업계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학시절의 좌경운동 경험자들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정부기관, 특히 입법부같은 곳에는 현재 상당수의 좌경운동 경험자들이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전대협과 학생운동」, 동아일보, 1989년 7월 26일, 13면 기사참조)

그리고 특히 좌경대학생들을 소요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하게 조기 入營 처리하는 등의 현상은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적군전취와해사업」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북한당국을 규탄하는 부모들은 이른바 「반공이데올로기」에 오염된 「낡은세대」로 단정해 버리는 자녀들조차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두고 볼 때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좌경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업은 거국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국가대사중의 대사라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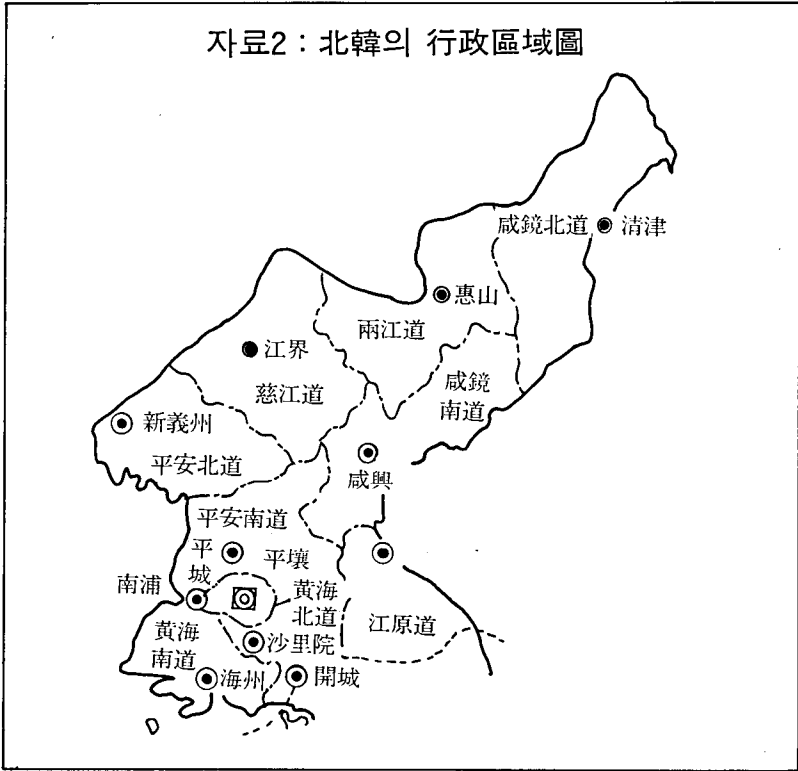
〈참고자료〉

자료 1 : 北韓의 統治體系圖



* 북한통치계의 특징은 모든 정권기관이나 정치조직은 당의지도와 영도 밑에 있으며 총비서(김일성)가 모든 정치권력을 장악, 행사하는 「로동당」 일당 통치체계임.

자료2 :北韓의 行政區域圖



區 分	數	備 考
道	9	平南, 平北, 慈江, 兩江, 黃南, 黃北, 咸南, 咸北, 江原
特 別 市	1	平壤
直 轄 市	2	開城, 南浦
市	21	
區 域	37	
郡	148	
邑	148	
里 · 洞	4,242	
勞 動 者 區	223	

※ 자강도는 1949년 1월13일 평북과 함남의 일부지역을 합쳐, 양강도는 1954년 10월 30일 함남과 함북, 자강도의 일부지역을 합쳐 신설되었음. 면 행정단위는 1955년 12월 이후 폐지되었다.

자료3 : 南北韓 主要 經濟指標

('88年末 基準)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韓國 / 北韓(倍)
人 口(年央)	萬名	4,197	2,103	2.0
G N P	億弗	1,692.0	206.0	8.2
1 人 當 GNP	弗	4,040	980	4.1
換 率(年中)	1弗對備	730.57	12.15	—
經 濟 成 長 率	%	12.2	3.0	—
財 政 規 模	億弗	252.3	147.3	1.7
軍 事 費	"	75.9	44.2	1.7
輸 出	"	607.0	19.9	30.5
輸 入	"	518.1	31.6	16.4
外 債	"	312.0	52.0	6.0
發 電 設 備 容 量	萬km	1,994.4	690.2	2.9
石 炭	萬噸	2,429	4,070	0.6
鋼 鐵	"	2,166	504.3	4.3
非 鐵 金 屬	"	58.5	49.4	1.1
精 油	"	3,562	350	10.2
시 멘 트	"	3,046	977	3.1
化 學 肥 料	"	370	351	1.0
織 物	萬 m	55.0	6.6	8.3
穀 物	萬噸	732.2	521.0	1.4
水 產 物	"	320.0	214.6	1.5
鐵 道 延 長	km	6,456	4,927	1.3
道 路 延 長	千km	56	23	2.4

※ 北韓의 工業部門은 生産能力 基準

統一問答

(통일총서/7)

1989年 2月 3日 初版發行

1990年 1月 30日 修正版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樊忠洞2街 山5-19

電話 234-4102, 236-4143

印刷處 延文社文化株式會社

(국통연 89-12-135)

統一叢書發刊目錄

1. 統一期 三國의 政治·社會相 (1987)
2. 民衆民主主義革命, 그 實相과 問題點 (1987~1990)
3. 好機 속에 숨은 危機 (1987)
4. 共產主義, 그 理論과 現實 (1987)
5. 北韓의 宗教實態 (1988)
6. 北韓의 主體思想 (1989~1990)
7. 統一問答 (1989~1990)
8. 北韓의 宗教政策 (1989~1990)
9. 北韓의 文學藝術 (1989~1990)
10. 北韓의 軍事力과 軍事戰略 (1989~1990)
11. 分斷國 統一問題 (1990)
12. 共產主義, 그 理論과 實際 (1990)
13. 北韓의 教育實態 (1990)
14. 北韓의 政黨·社會團體 現況 (1990)
15. 南北對話를 통해 본 北韓의 協商戰術 (1990)
16. 北韓의 觀光現況 (1990)

